



Vol. 05 (2013)

CONTENTS



이어도 칼럼

동아시아 해양 갈등과 이어도 문제	04
--------------------	----

[기획 특집] 중국의 해양공세

중국의 대륙 · 해양 국가화와 해양영유권 분쟁 배경 및 전망	10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20

[이어도 논단]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영토분쟁의 분석적 이해와 과학적 대응	32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계설정방식과 이어도 관할 방향	42

동향과 이슈

중국의 해양관련 동향	54
일본의 해양관련 동향	61

이어도 리포트

2013 이어도연구회 국제학술대회	70
인터뷰 “과학적 논거가 곧 해양경쟁력”	101

이어도 역사/문화 에세이

한반도와 해양세력(II)	108
---------------	-----

이어도 소식

130

이어도 포럼

이어도 탐사기	152
이어도를 지키는 일	159

동아시아 해양 갈등과 이어도 문제

**김 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동아시아에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포함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황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오헤츠크해 등 5개의 바다가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하면 동아시아 해역은 일종의 '반폐쇄해' (semi-enclosed sea)에 해당하며, 많은 연안국들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몇 개의 좁은 출구에 의하여 대양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UNCLOS에 따라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12해리의 영해를 비롯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선포하고 있으나, 마주보는 연안국들 간의 거리가 대부분 400해리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은 물론 최대범위가 200해리로 정해져 있는 EEZ의 경우에도 합의에 의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EEZ나 대륙붕은 국가주권이 인정되는 영해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양생물자원 및 광물자원을 비롯하여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안전 및 안보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관할권 및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기 위한 연안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침례하게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에는 일본의 北方島嶼, 釣魚臺/尖角列島, 獨島, 그리고 西沙群島 및 南沙群島를 포함한 남중국해 도서 등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이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도서들이 많이 분포되고 있어서 연안국들 간의 해양경계획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지역 내 갈등 내지 긴장을 고조 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북방 4개 도서, 조어대/첨각열도,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 사이에서 분쟁 또는 갈등관계를 빚고 있으며, 중국은 조어대/첨각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무력대치도 불사하는 한편 서사군도와 남사근도 등 남중국해의 도서 및 해양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주로 일본과 중국이 도서의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의 확장과 관련하여 상호간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사이에서 ‘힘’(power)을 바탕으로 무리한 행동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어도’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부속섬인 마라도로부터 서남방으로 149km(81해리), 중국의 童島로부터는 북동쪽으로 247km(133해리) 떨어진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중암초’(submerged reef)로서 해양법 상 ‘섬’(island)은 물론 간조 시에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干出地’(low-tide elevation)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해양법상 이어도는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해, EEZ 또는 대륙붕 등 해양 관할수역을 설정하거나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을 위한 기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은 경제적, 해양과학적,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도 크게 주목해 왔던 수역이다.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은 한·중 간에 EEZ나 대륙붕의 경계가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관할수역에 포함되어지는 ‘해저지형’(submerged feature)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 간에 이를 자신의 관할수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경주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UNCLOS의 시행을 위한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을 자신의 EEZ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양국 간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 시에도 그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중 양국 간에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해야만 하는 ‘관련사정’(relevant circumstances)이나 ‘특별사정’(special circumstances)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중간선’(median line)이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에 부합하는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데 근거하여 중국보다 우리나라 쪽에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은 당연히 우리의 관할수역에 속한다고 본다. 반면에 중국은 한·중 양국 사이에 위치한 대륙붕의 형성 과정, 해안선의 길이 및 해안지역 인구 등을 일종의 ‘관련 사정’으로 내세우며 ‘형평한 해결’ (equitable solution)을 위하여 반드시 이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EEZ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EEZ 자체가 특히 ‘거리개념’ (concept of distance)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획정 시 고려해야만 하는 ‘특별사정’이나 ‘관련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거리선’인 중간선이 가장 합리적인 경계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난 해 3월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대향국 간 거리가 400해리 범위 이내일 경우는 해저의 지형적, 지질학적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등거리선(중간선)’ 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2006년 9월 14일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하여 ‘蘇岩礁’ (이어도의 중국 명)를 한국과 중국의 EEZ가 서로 중첩된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암초라고 규정하고 양국 간에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이어도가 ‘수중암초’ 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영유권분쟁’ (dispute over territorial sovereignty)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어도와 관련한 ‘문제’ (problem)의 해결을 위하여 상호간 대화를 주문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어도 문제’ (Ieodo Problem)는 국제해양법상 ‘영유권 문제’ 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를 ‘단순한 해양관할권 문제’로만 보아서도 안 된다.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에 대한 중국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통하여 ‘해양력’ (sea power)을 강화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정립함으로써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 시 이를 우리의 관할수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 운용에 대한 관할권이 정당하게 우리나라에 귀속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설정하면서 이 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킴으로써 한 · 중 간은 물론 미국과 일본과의 사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미군에 의하여 설정된 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 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제외되어 있는 틈을 노려서 중국이 이어도 상공은 물론 우리의 영공 가까이, 나아가서는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범위까지 우리나라의 항공기 비행에 대하여 규제하겠다고 나선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에 설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전수역' (safety zone) 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만일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조치를 강행하는 경우 한 · 중 양국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안전성 및 우리의 관할권 행사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해양 갈등의 해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역내 국가들이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역내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해양거버넌스' (regional maritime governance)를 구축하고,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해양갈등 및 분쟁이 예방되고 해결 될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기획 특집

중국의 해양 공세

중국의 대륙 · 해양 국가화와 해양영유권 분쟁 배경 및 전망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중국의 대륙·해양 국가화와 해양영유권 분쟁 배경 및 전망*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2013년 11월 23일 중국 국방부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새로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중·일 간 해양영유권을 놓고 분쟁중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미군 기지, 그리고 한국의 이어도가 포함되어있다. 더욱이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한국의 서해(중국명 황해)와 남중국해에까지 확장 설정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고 예견되지 못한 상황인 듯이 보인다. 그만큼 이해당사국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단행한 ‘방공식별구역 설정’이라고 하는 행태와 ‘표면에 나타난 현상’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번 사태를 ‘현상’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 ‘현상’ 이면에 보다 중요하고도 전략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함의를 설명하기에 앞서, 최근 중국이 해양문제와 관련해 보여준 행태와 현상에 대해 역추적해 보기로 한다.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는 정치분야에서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안이 통과되었다. 국

* 본 글은 필자 개인의 학술적 의견이며, 필자가 속한 기관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둔다.

가안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중국이 대내외관계에 관한 보다 많은 도전과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2013년 3월 개최된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해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신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양회에서는 신정부 당정운영 방향과 조직개편 등이 발표된다. 여기에서 중국의 해양강국화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은 해양관련 부서인 '국가해양국'의 권한, 기능, 역할, 조직 등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해양과 관련된 사안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정부기구가 출범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2년 11월 중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국정사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인 '영도소조'에 '중앙해양권익공작영도소조'를 창설했다.¹⁾ 이 시점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가 개최된 시점이었다.

18차 당대회는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신지도부가 실질적으로 선출되는 회의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정치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정치보고'에서는 공산당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후진타오는 '정치보고'에서 '해양강국'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²⁾ '영도소조'의 창설과 이를 집행할 정부기관의 확대개편을 마무리함에 따라 중국은 향후 해양강국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치밀하게,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1) 東方日報, 「中央海權辦成立維護海疆」, 2013년 3월 3일.

http://orientaldaily.on.cc/cnt/china_world/20130303/00178_018.html

2)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지도부가 바뀜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즉, 최고지도자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바뀌었다고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대폭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의 특성상 공산당 정책기조라고 하는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한다. 따라서 후진타오의 '정치보고'는 공산당의 입장이고 시진핑은 이러한 공산당 정책기조를 이어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강국화'는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정책방향이자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06년 12월 27일 후진타오는 제10차 해군당대표대회에서 “중국은 해양대국”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해군의 역할과 강화를 역설했다.³⁾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해양에서의 자국의 권익확보 또는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공군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중국은 지역접근 거부(A2/AD · Anti-Access/Area-Denial) 전략 강화를 통해 해양에서의 물리적 행사능력을 증강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과 해양영유권을 놓고 벌이는 분쟁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점차 증가되고 있고, 중국의 대응강도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대응 방식이 정교화하고 있다. 이른바 “구단선(九斷線)”을 그어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통해 주변국과의 갈등을 보다 정교하기 관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2년 7월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이다. 동회의에서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의견을 보여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는데 이는 아세안 45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다.⁴⁾ 그 배경에 바로 중국이 있었고,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캄보디아가 있었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해 적극적 외교력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대응을 분리/무력화시키는 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해양에서의 자국영향력을 확대강화하는데 있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과 행태의 변화는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국력상승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는 설명 외에 중요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중국이 현재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전환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3) 新華社, 「胡錦濤強調鍛造適應歷史使命要求的强大人民海軍」, 2006년 12월 27일,

<http://politics.people.com.cn/BIG5/1024/5221990.html>

4) 배궁찬, 「미·중 경쟁과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국립외교원, 2013), 2013-17, 2013, 5.31, p. 15.

중국의 국가정체성 전환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적극적 해양진출을 통한 해양강국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 그리고 일본과 대화와 타협보다는 긴장과 갈등이 나선형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중국이 국가정체성을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continental power)였던 중국이 개혁개방과 시장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주력으로 편입되고 지역강대국을 넘어 세계적 강대국으로 급성장하면서 대륙·해양 국가(continental-cum-maritime power)로 정체성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정체성 전환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어샤이머(Mearsheimer)와 같은 공격적 현실주의자(offensive realist)들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래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를 도모하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서 세계적 강대국인 미국(hegemon)과 갈등을 빚고, 급기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⁵⁾ 이에 대한 반론은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자(liberalist)와 현실주의(realists)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그 중 설득력있는 반론 중 하나는 중국의 국가정체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국가로서 세력확장의 범위는 대륙에 멈출 것이고 해양에 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에서 해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권력행사와 이해의 영역이 중첩되지 않는 관계로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⁶⁾

하지만 중국은 현재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대륙·해양국가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러한 국가정체성 전환은 중국의 정치리더십의 의도하건, 아니면 의도하지 않건 간에 현대 중국이 필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기도 하다. 중국은 향후 대륙에 대한 공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는 해양세력인 미국, 일본 등과의 갈등과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5) Mearsheimer, John J.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4th Annual Michael Hintze Lecture in International Security, August 2010;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2001).

6) Rober S. Ross, "Beijing as a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76.2,

그렇다면 중국이 해양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중국이 현재 놓여 있는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개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다민족 국가, 시장화와 글로벌 경제 편입,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부상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은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대륙·해양 강대국으로 전환하는데 서로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정치적으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입법, 행정, 사법, 군부 및 중국 경제의 중심축인 국공유기업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공산당이 사활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생존(CPC survival)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이고 다른 하나가 한족 외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국가통합이 공고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는 심각한 수준의 빈부격차와 공산당 일당독재와 권력독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부정부패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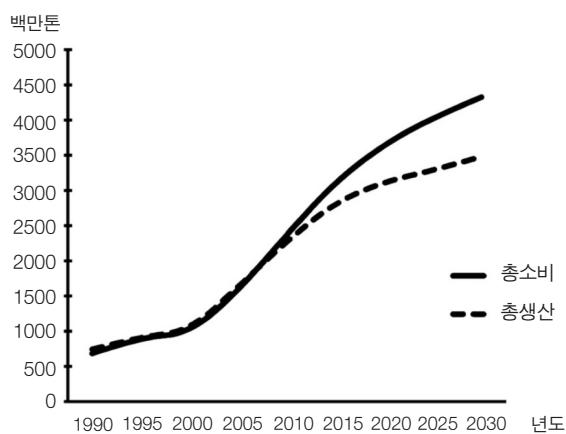
또한 국가통합의 과제는 공식적 분류 기준만으로도 한족 외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라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중국 영토의 약 67%에 달하는데, 이 지역들은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적 특수성으로부터 중국공산당 리더십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한 국내정치사회 안정과 국력의 증강에 주력해야만 한다. 중국이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여러 조건 중에서도 현대 산업의 특성상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조건이다. 따라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안정적 수급은 필수적 조건이 되며, 에너지 자원 안보는 매우 중요하게 된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경제성장과 그 유지에 필요한 각종 조건들 중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의 중요성을 더욱 더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은 1993년을 기점으로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석유 외의 다른 에너지 및 천연

〈그림 1〉 중국의 총에너지 소비/생산량 변화

중국의 대륙·해양
국가화와 해양영유권
분쟁 배경 및 전망



출처: BP Energy Outlook 2030,
<http://www.bp.com/sectiongenericarticle800.do?categoryId=9037134&contentId=7068677>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전세계 에너지 및 천연 자원의 최대 또는 주요한 수입국가가 되었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전까지 중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필요성은 그만큼 낮았다. 하지만 시장화와 경제성장이 진척되는 것에 비례해 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자원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된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중반 이후 체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다. 1996년경부터는 2050년까지 내다보면서 에너지 확보전략을 수립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2000년대 들어 가속도가 붙게 되고, 이에 맞추어 산업활동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대폭적으로 증가한 산업활동은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 자원의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다. 그 만큼 국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안정적 수급과 수송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에너지와 천연자원은 '전략적 자원'으로서 '안보' 문제가 된다.

중국은 2005년 원자바오 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영도소조’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국내정책만이 아닌 외교안보 분야의 지도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자원 대책만이 아니라 해외 에너지 자원외교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⁷⁾

또한 에너지자원 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자원수송의 안전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오는 중요한 통로인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얀마 서부 뱅골 만에서 시작해 중국 남부 쿤밍을 거쳐 충칭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건설 중에 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14%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비율은 5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하여 수송라인의 안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위해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에 해외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은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중국 서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카스피 해 석유 및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해주는 통로이다. 중앙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받기 위해 중국은 ‘서기동수(西氣東輸)’ 프로젝트 추진해 오고 있다.⁸⁾ 중국은 더 나아가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까지 자원개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가되는 에너지 자원 수요 및 확보 필요성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증가시켰다. 동중국해에서는 추정량으로 “석유 1000 억배럴, 천연가스 10조” 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⁹⁾ 남중국해의 경우, 중국에서 탐사한 결과만 하더라도 “원유 매장량이 170억톤, 천연가스는 498조

7) 이지용, 「중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1), 2011-22, 2011, 8, 30, p. 5.

8) 이지용, 「중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pp. 9-11.

9) 세계일보, “약탈적 자원사냥,” 2010년 10월 12일자,

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 전략적 안보개념이 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해가 형성되는 것이다.

중국이 해양국가로 나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중국경제 때문이다. 중국은 청나라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외무역이 별도로 필요 없었다. 중국의 광대한 국토와 인구는 일국적 차원의 자급 경제가 형성되기에 충분했다. 외국과의 무역이 특별히 필요가 없는 중국은 주변국과의 ‘조공(朝貢)’ 관계를 맺고,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주변국들이 중국과 주종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위협이 되지 않으면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해 준 것도 사실이다. 근대 서유럽 열강들이 해외 식민지 개척에 사활을 걸고 뛰어든 것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성이 뚜렷이 구별되는 한 측면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대 글로벌 산업경제 체계에 깊숙이 편입된 중국은 대외무역과 투자가 필수이다. 대외무역과 투자를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해야하는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해외에 실질적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송에 있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해양수송로에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이해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을 중강시키고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즉,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유지, 시장화와 산업화, 에너지자원 및 해외시장 확보, 글로벌 경제편입, 해외자원과 시장에 대한 이해 증가, 이와 같은 일련의 이해의 안전확보, 그리고 다시 공산당 생존 확보라고 하는 순환적 연계고리와 거시적으로 대륙국가에서 대륙·해양 국가로의 정체성 전환이라고 하는 순차적 시퀀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성립되게 된다.

그런데 해양강국화는 단순히 해양영유권 확보 또는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외 자원, 시장, 그리고 상품, 서비스, 자원을 순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금융에 대한 이해를 증폭시키면서, 그 세력의 영향력이 지역을 넘어 전세계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국가정체성을 ‘대륙’ 국가

10) 아시아투데이, “中 “남중국해 원유 매장량 170억톤”, 2012년 11월 10일자.

(세력)에서 대륙·해양 국가(세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부상하는 중국의 향후 대외정책과 행태,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국제정치의 결과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 동·남중국해에서 보여주고 있는 횡보는 바로 이와 같이 거시적으로 전개되는 맥락에서 발행하고 있는 단속적(斷續的) 사건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거시적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인 해양영유권 분쟁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중국이 주변국과의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 대화와 타협시도, 그리고 다시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해양에서의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국의 영향력과 권익을 확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즉, 중국의 국력과 외교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해양에서의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킬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주변국들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더욱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해양권익과 관련해서 볼 때, 중국과 협의가 진행 중인 배타적 경계수역(EEZ) 회정문제에 있어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어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해양영유권 문제에서 일본과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까지 전선을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시간의 문제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적 수준에서 국제안보환경 변화방향을 볼 때, 중국의 해양으로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 일본, 동남아 해양부에 속한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들에게 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미국은 서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이 침해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상실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해양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주권영역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해양강대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면서 대응을 위한 연대를 모색 할 수 있다. 이는 동·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여타 이해당사국들 간의 전략적 경쟁, 외교적 갈등과 마찰을 심화시키면서 대결국면으로 치닫을 수 있

는 가능성의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경우,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일본 등을 주축으로 한 이해당사국들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안의 관리, 공동 개발과 이용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색, 또는 사안에 대한 잠정적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수면아래에 잠복시키는 등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국가들 간에 평화적인 접점을 찾는 기술이다. 그러한 기술은 충분한 역사적 경험과 고도의 사안관리능력을 요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의 역사적 국가정체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륙국가' 였다. 중국은 해양을 관리하고 운영한 경험이 일천하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송 성 대

이어도 연구회
상임연구위원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전격 선포하면서 동북아시아 상공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여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는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은 다른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설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무엇인가? 방공식별구역이란 군사·안보상 적의를 가진 외국 항공기를 식별하여 무력대응할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한 공중 구역, 즉 배타적 공역(空域)을 뜻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직접적인 상부 공간만 해당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훨씬 넓게 설정되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을 최초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대통령령을 통해 1950년 12월 미 본토 연안으로부터 약 600해리까지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고 비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누구도 구역 내로 비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인 KADIZ(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는 6·25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3월 23일 미 태평양 공군에 의해 처음 설정,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이슬란드, 스웨덴,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 인도, 미얀마, 오만 등 전세계 20여개국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방공식별구역은 그 범위가 임의적이고 또한 무단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대응 강도는 나라마다 상황마다에 다양하게 다르다. 국제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나라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다.

우리나라인 경우 국방부(합참)는 KADIZ 내로 진입하는 적성 항공기 및 주변국의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과 침투 저지를 위한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계를 24시간 유지 관리하고 있다.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이전에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가된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할 경우에 항공지도상의 규정된 지점에서 의무적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 항공기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해서 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투기를 출격시켜 해당 항공기를 감시 퇴거하도록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혹이나 무단 진입한 항공기의 격추가 있을 경우는 곧 전쟁을 각오한 행위가 된다.

방공식별구역의 한계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 충돌 사례가 있다. 1961년 2월 9일 프랑스가 자국의 식민지인 알제리 상공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서 소련 최고 간부회의 의장 브레즈네프가 탑승한 항공기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항공기가 추락하지 않았지만 소련 외무부는 “누가 프랑스에 외국 항공기를 식별·요격할 권리를 주었는가”라며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프랑스는 소련 정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리 구역선포가 해당 나라가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형태적으로나 범위에서나 너무 비정상적으로 무리하게 선포하였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방공식별구역의 선포인데 이번의 중국 정부

의 경우는 거기에 더하여 심각할 정도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방공식별구역의 선포시의 관례는 그 범위가 다른 나라의 그것과 중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중국이 선포한 그 범위는 인접국(일본)의 범위를 과도하게 침범하여 들어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로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어도를 자신들의 식별 구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도만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선언한 4광구와 5광구 7광구까지 불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어도를 자신들의 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일본 역시 이 부분에서는 강대국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데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뒤에 논의하겠지만 이어도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1951년 6·25 전쟁 중에 태평양미군사령부가 설정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다만 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1969년 선포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중첩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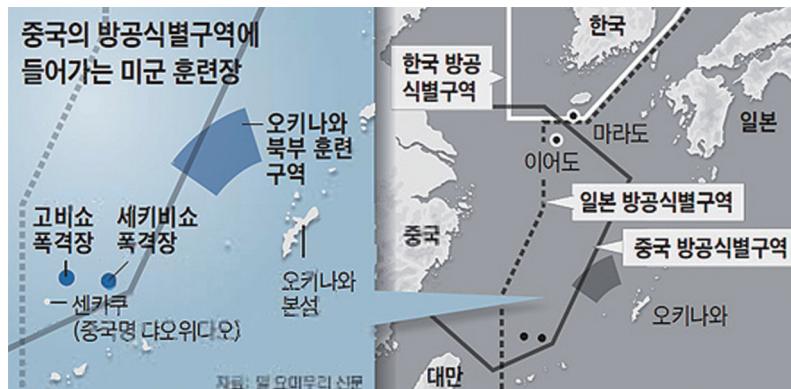
중국의 비합리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가장 강한 반대는 당연히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설정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주일(駐日) 미군이 사용하는 훈련장과 폭격장 등 3곳이 포함돼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미국의 훈련장은 동중국해 북

서부의 ‘오키나와 북부 훈련 구역’으로, 미군 전투기는 이곳에서 공중 훈련을 한다. 넓이 약 1만km²인 이 훈련장의 서쪽 끝 부분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다. 주일 미군이 함포 사격과 전투기의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훈련에 사용하는 ‘세키비쇼(赤尾礁) 폭격장’과 ‘고비쇼(黃尾礁) 폭격장’도 그 안에 들어갔다.



〈그림 1〉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자료 : 중앙일보)



〈그림 2〉 중국의 ADIZ내의 미군훈련장(자료 : 중앙일보)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 이후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이 각각 성명을 내고 중국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일본 간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해상 영유권 분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공중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11월 26일 오전 9시 쯤에 배치된 미군 B-52 폭격기 2대를 출격시켜 중국의 ADIZ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하여 중국의 선언을 무살했다. 미국방부는 “중국에 사전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주파수 등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비무장 상태로 1시간 이내로 머물며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우산(nuclear umbrella)으로 불리는 핵 폭격기의 출격은 중국 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력화 전략’이라고 국제 외교가는 해석하고 있다.

경엔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중국 군대는 (미군 전략폭격기의 ADIZ 비행의) 모든 과정을 감시했고 즉시 식별했으며 비행기의 종류를 판별해 냈다”고만 밝혔다.

일본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1월 23일이 공휴일(노동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요네무라 도시로(米村敏朗) 내각위기 관리감(부장관급) 등을 총리 공저로 불러 대응책을 협의했다. 또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중국대사관의 한즈창(韓志強) 공

사에게 “일본 고유영토인 센카쿠 영공이 포함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엄중 항의했다.

미·일의 반발에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중국의 영공 주권을 위해 항공 질서를 유지하려는 뜻”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한국은 국방부와 외교부가 11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徐京明) 무관(육군 소장)과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각각 불러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그은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문제 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해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중국의 C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해군은 26일 중국 당국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해상초계기(P-3C) 1대를 이어도 상공에 보내 초계비행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실시해온 매주 2회의 초계비행을 중국의 ADIZ 선포(23일)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외교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며 “중국이 ADIZ를 고수하면 초계비행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어도 상공 초계비행은 11월 28일 한중 국방차관급 전략대화를 앞두고 단행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전투기의 이어도 상공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은 중국이 ADIZ를 선포한 뒤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그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월 28일 회의 직후 “백승주 국방부차관이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중국 측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하지만 왕관중(王冠中)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한국 측의 조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1969년 일본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후 두어 차례 항의

를 했으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위협해서 독자적으로 1951년의 태평양미군사령부가 설정한 것을 수정 선포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모습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영토 관리에 대한 소홀함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낭폐>와 2001년의 <베이징 파행>에서 잘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 낭폐>란 1951년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가질 수 있는 영토를 확정해주는 국제회의에서 양유찬 주미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한표욱 일등서기관)가 미국의 대표인 리스크 미국 동아시아국무차관보에게 무모하게도 쓰시마를 한국에 영토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여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독도와 파랑도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리스크는 독도와 파랑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물었다. 이에 한국 대표는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해에 위치해 있으며, 대략 울릉도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대답했다. (Mr Han stated that these were two small islands lying in the Sea of Japan, be believed in the general vicinity of Ullungdo.)

위치 확인 물음에 “대략 그 근처에 어디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양성한 답을 받은 사람이 그런 무성의한 대답을 받고 알뜰살뜰이 스스로 나서 해법을 찾아 해결해 줄 리가 없을 것이다. 기각된 것이다. 한국의 대표가 전혀 영토 문제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고 임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은 영토문제에 관해서 조사한 내용을 최소한 일곱 권의 자료집으로 만들어 넘긴바 있다. 협상 때 일본과 한국 관계자들이 똑같이 눈이 뺄건 채 자리하는데 그 뺄건 이유는 한국 대표들은 밤 새 술을 마셨고, 일본 대표들은 밤 새 회담을 위한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한국 신문의 기사를 보기도 한다. 이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전하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느 신문, 어느 날짜에 난 기사냐며 십수년 전의 일에 대해 증거를 대라고 몰상식하게 육박지르거나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2001년 베이징 파행은 당시 한·중어업협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한국 협정 실무책임자(반기문 외통부차관, 노무현 해수부장관)들이 그림 3에서 보듯이 이어도(해역면적 6만km²)를 잠정조치수역, 즉 공해 수역으로 내몰아버린 것이다.

1969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항공기가 우리 영역 이어도 바다 상공을 지날 때마다 일본에 통보하는 굴욕을 겪고 있다. 우리 영역인 이어도 상공을 우리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 이제는 중국의



〈그림 3〉 한·중·일 경계선(베이징 파행)

한·중·일 경계선(공해)의 경계를 A와 B를 잇는 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어도가 위치한 △형 A,B,C에 해당하는 해역을 공해가 되도록 해버렸다.

허가까지도 받아야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관계자가 마라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중·일 3국 중 한국만이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영역에서 제외시켜놓는 현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기 나라 것이라 하면서 자기 것으로 선언하지 않는 현상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어느 누가 이어도 해역이 한국 것이라 하겠는가?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항의에 대해 대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이기 때문에 소통과 대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어린애를 다루듯 열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이래 중국과 14차례에 걸쳐 이어도 해역상의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진행 중이지만 중국은 아래저래 시간만 끌고 있고 한국 정부는 그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 밖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검토 중인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잠정수역 내 불법 조업 문제」, 「고구려와 발해사를 둘러싼 동북공정 문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풀릴 가능성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한국도 주변국 눈치보아 조용한 외교를 하려하지 말고 방공식별구역을 재설정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문제가 제기된 기회에 이어도 남단 쪽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현실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그림 4>의 우리 비행정보구역(FIR)에는 이어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1970년대 말부터 일본에 이어도 해역을 그들의 식별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일본은 JADIZ에서 이어도를 뺄 경우 대신 독도를 포함하겠다는 협박에 물리쳤다고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제주출신 김재윤 국회의원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왜 이어도를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에 정부 당국자는 그것이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영공 개념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라고 대답한 것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 한국군의 평시 해상 및 공중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합참의장이 설정하는 구역인 해군 작전인가 구역(AAO, Approved Areas of Operation)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은 변함이 없다라고 자위하고마는 예도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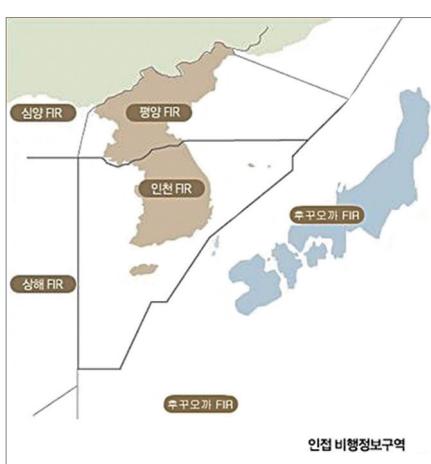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11월 26일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도 관할 수역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토를 달면서 이어도 해역 상공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할 것이다.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 기회에 일단 국제관례에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야한다. 인접국과의 협상도 일단 선포해 놓은 다음에라야 실효가 있는 것이다. 선포 이전에 협상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주변국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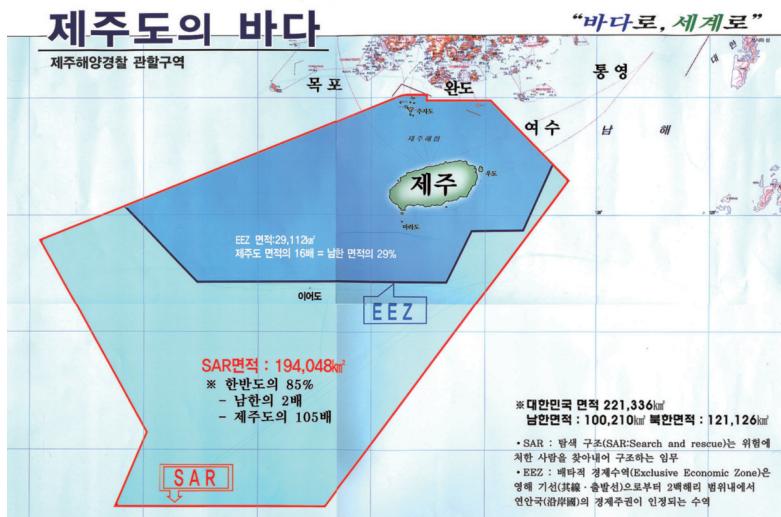
‘국제관례에 벗어나지 않게’란 식별구역의 범위를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에 규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선 원칙이나 FIR(비행정보구역), SAR협약선에 준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에 대해 한국 현 지도부총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여 이어도 상공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적 행동을 펼칠 수 있는 결단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제언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국이 새로 방공식별구역을 재설정 선포하는 것이 선결 사항이지만 추후 한·중·일 3국이 모여 방공식별구역은 물론 EEZ까지도 함께 논의를 하여 다자간 협상에 의한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협상 과정에 제시될 수 있는 해법은 해군 작전인가구역(AAO), 방공식별구역(ADIZ)과 비행정보구역(FIR)이나 EEZ(배타적 경제수역)등의 다른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경계선과 오버랩시키는 합리적 논의가 될 것이다. 해군 작전인가구역(AAO)은 외국 선박이 함부로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감시구역으로 한국의 AAO는 남쪽으로 북위 32도까지 뻗어 있어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 AAO 설정과 운영은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인 범위는 자국민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 한국과 인접국의 FIR

오늘날 EEZ가 준영해(準領海)가 되어가듯이 방공식별구역은 ‘준(準)영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역 설정 자체가 향후 특히 한·중 간 배타적 경제구역(EEZ) 획정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방공식별구역이 국제 관습법으로 완전 확립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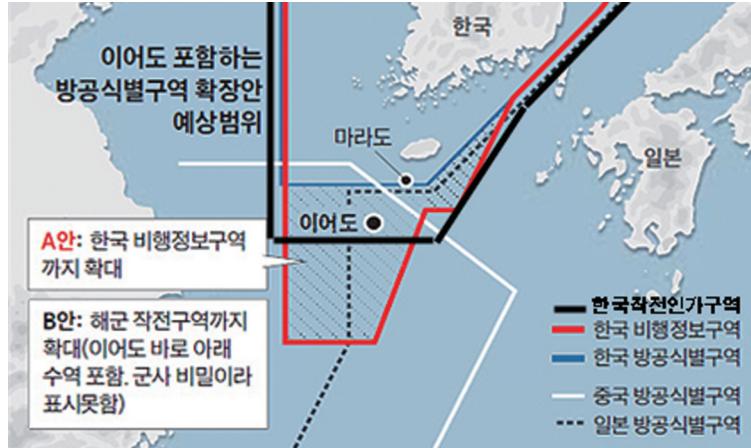


〈그림 5〉 제주해경의 SAR

있다.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중인 항공기에 각종 정보제공과 항공기 사고발생시 수색, 구조 제공에 대해 국가간에 분할되어 수행하게 되는 책임 공중구역이다. 이는 인접국간 협의를 바탕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와의 승인을 통해 설정된다. 국제기구로 하늘에 FIR이 있다면 바다에는 SAR(Search And Rescue)가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한국해양경찰은 1995년 10월 3일 유엔국제해사기구의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역에서의 해난구조활동이 국내선박은 물론 SAR협약 가입국 선박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이 넓은 하늘과 바다에 걸쳐 국적을 막론하고 안전한 비행과 항해 안내, 조난당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하늘과 바다에 대한 주권적 행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와 같이 중국이나 일본 그 어느 나라도 그들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인 이어도 해역 일대에서 어떠한 국제 공익적인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어도 바다를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둑어놓고 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를 패러디하면 “제



〈그림 6〉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안(자료 : 조선일보)

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중국과 일본이 먹고 있다”라 하겠다. 제주도의 마을 공동어장의 범위(경계) 설정은 각 마을의 바다 청소나 신원 미상의 떠밀려온 시신을 누가 갈무리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력 여하에 따라, 그리고 배려와 헌신의 내용에 따라 뜻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정의로운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재설정 선포하게 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그림 6〉에서 제시되는 두 개의 안 중 A안, 즉 한국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0세기 이후 방공식별구역을 비롯해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 접속 수역, 비행정보구역(FIR), 대륙붕 등 다양한 개념이 새롭게 출현해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외연(外延)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재언하지만 한국 외교사에서 다시는 이승만 정권 때의 〈샌프란시스코 낭패〉와 김대중 정권 때의 〈베이징 파행〉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분노할 줄 알고 공부하는, 자존할 줄 아는 담당 정부관료들이 많이 나오기를 빌어본다.

이어도 논단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영토분쟁의 분석적 이해와 과학적 대응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계설정방식과 이어도 관할 방향



영토분쟁의 분석적 이해와 과학적 대응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영유권 분쟁과 국력의 함수

국력의 변화에 따른 외교적 위상의 불일치는 국제관계에서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Singer and Small 1988). 국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던 지위에 있던 국가가 국력의 쇠퇴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졌던 외교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던 지위에 있던 국가가 국력의 상승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외교적 위상을 획득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된다. 국제관계에서 국력 또는 국가의 이익을 절대적 개념(absolute power)에서가 아니라 상대적 개념(relative power)에서 인식하는 현실주의자의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력이라는 자원은 유한한데 이를 경쟁적으로 축적해야 하는 국제관계의 본질과 국가가 상호관계를 지속하는 과정 자체가 상대방의 행위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켜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다 우월한 지위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위상도 한 국가가 가지는 국력의 일부이며 이와 동시에 국력이 투사되는 나타나는 국제정치의 역관계에 반영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수단이라는 특성이 국제관계에서 외교력에서 가장 단적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 그리고 군사적 경쟁관계와 같은 복잡한 역학관계를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력 특히 외교력의 상호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2000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국제관계를 논의 할 때 상투적으로 “동아시아의 약소국” 그리고 “주변 4강 사이에서”와 같은 수식어를 반복하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논의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질서를 주도하는 양극체제의 핵심세력이었고 특히 미국은 우리의 후견 국가임을 자타가 공인했다. 중국은 첨단 군사력을 포함하여 국가 규모면에서 그리고 일본은 경제력이라는 기준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주변국이었다. 동아시아의 기존질서로 인정되어 오던 4강 체제가 변화했다고 생각한 것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경제 규모면에서 중국의 일본 추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의 변화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핵심 변수로 부상한 것은 바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경쟁과 이에 따른 분쟁의 현재화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전은 강도와 빈도에 있어서 최근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2013년 초 출범한 아베정권의 대한 외교관계는 영토문제가 역사문제와 결합되면서 민족주의의 대결로 한일관계는 악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도발로 인해 한중관계는 상대적으로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서해에서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설정 그리고 이와 연계된 이어도 문제는 잠재되어 있지만 언제라도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한·일, 한·중, 그리고 중·일 사이에 나타난 각국의 입장의 충돌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언제라도 현재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새로운 위상과 영유권 분쟁

독도, 이어도,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설정과 같은 국가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해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향후 갈등의 격화가 예상된다는 전제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복잡하게 얹혀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일간 센카쿠문제 그리고 러·일간 쿠릴열도 문제에 있어서 실효적 지배

에 근거하여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국에 대해 영유권을 획득하려고 대항하는 도전국의 관계라는 점에서 중·일간의 문제에는 일본을 지지해야하고 러·일간의 문제에는 러시아를 지지해야하는 미묘한 상황이다. 한국은 독도문제에 있어서나 이어도 문제에 있어서나 현 시점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상국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도전국의 다양한 논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빠져있음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폐고 있다. 최근에는 총리 직속의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독도 영유권을 직접겨냥하고 있다. 중국도 서해안의 EEZ경제획정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간선 원칙을 무시하고 해안선 길이의 비례 또는 자연지형의 연장선과 같은 불합리한 근거를 내세워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과 관련된 독도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중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국에 반하여 한국을 지지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국제연합국사령관에게 귀속되며 이는 사실상 미군사령관의 권한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관련되는 영유권 분쟁은 당사국가 이외에 미국이 개입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영유권 분쟁의 민족주의적 대응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영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는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와 쉽게 결합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구의 기준으로 영토주권의 개념이 확립된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민족국가의 등장에 따라 형성되고 자연국경개념에 기초하여 동일한 민족구성원이 거주하는 영토에 대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성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서 영토와 민족의 결합은 유럽에 비해서 훨씬 단순적이며 확고한 내

부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왔다.

민족과 결합된 영유권 문제는 민족감정(national sentiment) 그리고 정치이념으로서 민족주의(nationalism)와 관련되어 있다. 민족감정은 자신이 소속한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이익을 수호하고, 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번영을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족주의는 민족감정에서 생성된 열망을 구체화시키려는 이념이나 운동을 의미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구체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익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대응은 민족감정과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일본의 자극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면서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전략에 밀려들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에 반해서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독도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도 문제와 서해의 배타적 경계수역 획정에 있어서 중국과 관계는 한국은 냉정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한편 중국이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관영언론에 나타난 이어도에 대한 보도행태는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공세적 내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은 영토주권에 수반하는 국익은 물론 외교적 위신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자극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라는 점에서 독도와 달리 영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미 2003년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각각 현상을 변경하려고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의 실효적 지배라는 현상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도전국인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동아시아에서 영토분쟁은 상당히 민족주의적 경향이 자리 잡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관영언론의 보도 행태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이며 시민단체의 활동도 정부와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2008년 까지 지속되는 중국언론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행태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중국 정부의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충석 2013). 중국과의 분쟁에서 다행인 것은 한국의 언론과 한국의 여론이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존하는 보도행태와 반응양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응은 법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어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UNCLOS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국제법적 대비, 다른 영토분쟁과 관련한 국제법 판례분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근원과 권원에 대한 증거 수집과 분석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어도와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한국해경에 대한 중국어선의 도발에 대해서도 한국의 여론은 비교적 차분한 대응을 하는 편이다. 중국이 이어도 인근행역에서 해양 측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찌엔싱의 이어도 관련 NGO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도 한국 여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여론의 관심에 밀려나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반대로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 한국은 격렬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영토 및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제기하는 발언은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의 언론과 여론에 망언으로 인식되어왔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다양한 주장을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발언이 결합되면서 한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왔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여론은 물론이고 때로는 정부도 상당히 격앙된 형태로 나타났다. 한일관계에 대한 경험적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관계에서 한국 일본에 대한 분쟁의 강도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분쟁의 강도보다 분석의 전체기간에 걸쳐서 약 1.5배 더 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망언은 일회성의 성명이나 발언으로 분쟁의 강도가 낮은 반면, 이에 자극받은 한국의 대응은 동시 다발적이며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사소환과 시위와 같은 강도가 높은 갈등행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빈도와 강도 모든 면에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진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유력인사가 영토와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망언을 하게 되면, 한국 정부에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유감표명으로 이어지고, 국회의원들의

반발성명,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일 시위가 일정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반응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망언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로 인식하는 한국인의 사고 틀 속에서 가해자가 과거의 침략행위와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무리한 정당화와 자기합리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한국은 일본의 망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중국의 반응이 보다 과격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바로 역사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영토 및 역사적 도발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이 공동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배경에도 역사적 피해자로서의 공통분모, 다시 말해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의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동아시아에서 영토문제는 역사문제와 결합하면서 쉽게 민족주의 전략에 편승하게 되고 이 과정에 국민감정의 대결로 비화된다.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세계각국의 영유권 분쟁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한 경험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영토분쟁이 민족주의적 요소와 결합될 때 영토분쟁이 장기화 및 고질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타협을 위한 해결책의 모색을 위한 경우 뿐 아니라 민족주의를 지나서 민족감정에 의존하는 대응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문제의 본질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끌어가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한다.

민족주의적 대응의 한계와 분석적 이해의 필요성

필자 자신이 과거 외국의 저명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정치에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서양의 학자의 경우에 독도를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전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독도문제에 대한 사실관계의 오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것이거나 아니며 단순한 착오로 넘기기에는 문제 가 심각하다.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데

이터는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로 알려져 있다 (Allee and Huth 2006; Huth and Allee 2003). 본 데이터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현대적 의미에서 민족국가가 형성된 1차 세계대전 이후 1995년 까지 75년의 기간에 걸쳐서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영유권 관련 분쟁에 관련한 사건발생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영토관계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국가, 현재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대국가, 그리고 분쟁에 대해서 발생하는 협상과 군사적 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문제는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한국을 도전국가로 그리고 일본을 상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영유권 분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일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원인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민족주의적 대응을 지나쳐 민족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험과학에 기초한 연구가 때로는 별로 신기할 것이 없는 진부한 상식의 재검정에 지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Huth(1996)과 Huth and Allee (2003)의 연구에 따르면 영토분쟁에 있어서 분쟁의 본질이 인종적이거나 종족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 전략적 또는 경제적 요인과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중에 민족적 정체성과 연계된 경우 분쟁의 강도가 훨씬 격렬해져서 타협의 가능성성이 적어진다고 결론내렸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영토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영토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민족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Walter 2003). 경험과학에 기초한 연구가 이처럼 거시적 연구에 맞추어져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최근 컴퓨터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세계차원에서 영토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통계자료, 다시 말해서 사건자료(event data)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건자료의 축적은 해당분쟁에 대한 유관국가의 대외정책 행위패턴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관련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시계열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유관국의 상호관계를 양자관계 수준은 물론 다자관계의 수준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자적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치변수는 한국에서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관심을 끄는 연구 질문이다: 일본의 국내경제의 악화,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의 도래,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정치 상황의 악화.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어도와 관련하여 관영언론에 빈번한 보도를 통해 한국을 자극하는 영유권 문제제기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국내정치변수도 한중관계와 영유권 분쟁을 연구하는 중국문제 전문가들에게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중국의 국내정치 불안의 일환으로 소수민족문제, 대만문제를 둘러싼 양안문제의 격화, 중국의 국내 경제문제, 남동해안지역 주민들의 불만.

이론적으로 다자적 차원에서 영토분쟁을 고찰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론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분쟁에 있어서 미국의 대응은 표면적으로 기계적 중립을 유지해왔고 이어도와 서해의 EEZ 경계선 획정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갈등에 있어서도 미국의 상대적 입장은 연구자는 물론 정책 전문가들에게도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이러한 연구주제에 대한 궁금증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사례분석은 사례선택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다자적 차원의 연구는 더 많은 연구주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 문제가 되는 독도와 이어도 이외에도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그리고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에 관해서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다면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는 영유권 분쟁이 독도문제나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특별한 연구의 대상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센카쿠 사례가 한-일 및 중-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특별한 연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양자및 다자주의에 입각한 실증적 분석과 대책의 마련은 사례분석을 통해서는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연구주제이며 반드시 시계열에 기초해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석적 이해를 통한 과학적 대응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던 지위에 있던 상태에서 국력의 상승을 통해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적어도 상대방의 뜻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바꿔야하는 상황은 막아야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영토문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과제이다. 중국이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일방적 조치를 보더라도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문제는 이제 전면에 부상하는 과제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약소국이 아니다. 영토에 대한 고유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약소국 이야기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영해와 영토보전을 위해서 외교적 대응만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제안은 사법적 해결책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전략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해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할 것 같은 전략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중국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계산아래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영토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대응은 전략적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주변국의 분쟁행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의 외교적 및 군사적 대응책이 과학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민족감정에 의지하는 일회성 및 이벤트성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2013년 현재 중견국 한국의 외교적 위상에 부응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응방안이다.

〈참고문헌〉

- 고충석. 2013.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과 대응 필요성: 중국의 언론보도 (2006~2008) 내용 분석.” *STRATEGY 21*, 통권 제31호.
- Allee, Todd L. and Paul K. Huth. 2006. “Legitimizing Dispute Settlement: International Legal Rulings as Domestic Political Cov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0, No. 2. pp. 219-234.
- Huth, Paul K. 1996. *Standing Your Ground: Territorial Disput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uth, Paul K., and Allee, Todd L. 2003. *The Democratic Peace and Territorial Conflic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ter, Barbara F. 2003. “Explaining the Intractability of Territori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No. 4. pp. 137-153.

이어도논단

영토분쟁의 분석적
이해와 과학적 대응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계설정방식과 이어도 관할 방향



우준모
선문대학교 교수

I. 서론

인간은 개인적 차원이든, 집단적 차원이든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닿는 범위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한다. 이것을 근대적 국가의 틀로 범주화한 것이 영토이다. 국민국가는 절대주권과 통치(governance)라는 정치권력을 영토에 투사하여 신성불가침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인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왔다. 그런데 오늘날의 영토 개념은 거주공간인 육지 외에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가장자리 선에서 수직으로 공중을 향해 대기권까지 설정하는 3차원적 공간을 말한다.

국가가 지닌 영토의 가치는 대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가능하다. 하나는 안보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기회의 측면이다. 안보적 측면이란 물리력을 공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가 자국영토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관할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제적 기회의 측면이란 영토와 영해, 영공 그 자체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모든 천연자원과 산품 그리고 교통로와 같은 경제적 자산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조세나 관세권 등 무형적 경제가치도 포함된다.

탈근대의 지구화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 국제사회의 한편에서는 상품과 자본 그리고 노동(인구)의 초국가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의 영토적 절대주의는 희석되어 경계를 구획하려는 집착과 분쟁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탈영토화 현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폐쇄적 지역주의와 극우적 국민국가주의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영토적 분리주의 등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탈근대 시대에 등장한 재영토화 현상이다. 인간은 여전히 국가와 영토의 구속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지정학적 탈근대성, 즉 탈영토화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시대별 국경에 대한 인식정도를 대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전근대적 사고 : 국경관념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국경 내에 거주하는 인민들 간에 엄격한 동질성이 요구되지 않았고 상당할 정도로 다원성을 지닌 상태였다. 외부세계에 대해 중앙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미약한 동심원적 의식구조를 갖고 있었다.

· 근대적 사고 : 국경 내에 거주하는 인민들 간의 동질성이 강화되면서 중앙권력을 중심으로 외부적 경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졌고 국가주의적 안보가 강조되었다. “우리”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특징을 지닌다.

· 탈근대적 사고 : 탈중앙화가 진행되어 국경이나 지역성에 대한 관념이 유연해지고 있다. 올림픽 상징문양에서 원주들 간에 경계가 중첩된 것과 유사한 양상으로 접경지대에 대한 공유의식이 보편화되어 간다.

탈근대의 지정학은 국경관념이 희석되고 국가주권의 개념이 유연화되면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자치의 요구가 증대하고 국제적으로는 초국경적 협력과 공동번영의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다. 필자는 탈근대적 현상이 가속화되어 현존하는 영토갈등을 극복할 새로운 세계정치지형이 안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마다 영토적 통합성과 국경안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접경국들과 접경지역에 대한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글은 탈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계설정 기조와 방향을 개괄하면서 탈근대적 영토·국경정책 사례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국경간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의 이어도 관할권 행사 방향을 숙고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II. 러시아의 경계설정 기조와 방향

1991년 말 거대 제국 소연방이 해체된 자리에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을 비롯하여 15개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등장했다. 이 신생국들은 러시아가 지정학적 경계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영토적 독립성과 통합성 보장여부가 결정될 상황이었다. 모든 면에서 러시아는 역내에서 절대 우위의 지위와 역량을 지녔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계설정 방식이 지역안보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의 경계설정 방식을 명확하게 성격규정하기는 어렵다. 혹자는 러시아의 영토정책을 팽창적이라고 규정하고 혹자는 평화와 공존을 우선시한다고 논증하기도 한다. 필자는 러시아가 체제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영토·국경문제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모든 영토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경’은 러시아어로 그라니짜(гра́ница)와 루베쉬(ру́беж)로 표현할 수 있다. 그라니짜는 나(我)와 남(他)을 구분하는 분명한 공간적, 지리적 경계를 의미하며 국경선(border line)을 일컫는다. 반면 루베쉬는 다소 추상적인 경계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지리적으로는 전통적인 변경지대(frontier zone)와 같이 국경선이나 구역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소연방 해체로 등장한 러시아와 그 접경국들 간의 경계는 아직까지 상당 부분에서 루베쉬와 같은 전근대적 변경지대의 양상을 하고 있다.

독립초기 러시아가 마주했던 국경은 세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연방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경선으로 대부분 국제법적으로 확고한 협정에 의해 체결된 국경이다. 여기에는 북한,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등과 같이 육지와 해양의 경계선을 모두 마주하는 나라들도 있고 몽골과 중국처럼 육지 경계선

만 마주하거나 미국, 터키, 스웨덴, 일본처럼 해양 경계선만 마주하는 국가들도 있다. 둘째는 국제법적으로 확고하게 국경선을 체결하지 못한 국경선이다. 밸트 해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의 국경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국경선이다. 이 역시 국제법을 통해 국경선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과의 국경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국경은 소연방이 존재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외부국경선과 소연방 구성공화국간의 내부 경계선을 그대로 물려받은 국경선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소연방에 비해 영토와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국경선은 후퇴한 상태로 독립을 맞이한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3종의 압박을 받았다. 첫째는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압박이다.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탈을 지향하면서 서구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후원과 보호를 강력히 기대했다. 둘째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과거 중·동부 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압박이다. 이 국가들은 '러시아 공포증' (Russo-Phobia)를 호소하면서 급속도로 친서구적 국가진로를 개척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는 과거 소연방과 적대적 대립을 추구했던 미국과 서구국가들로부터 투사되는 압박으로 이들 국가들은 소연방에 대한 대립과 고사전략을 러시아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이른바 냉전 시기의 봉쇄정책과 적대 이미지가 잔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세계의 공세적 압박에 러시아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자국의 영토적 통합성과 국가안보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평화와 우호선린의 원칙에 입각한 영토 및 국경관련 법률을 마련해 나갔다. 기본적으로 1993년 12월에 채택된 「러시아연방 헌법」은 제67조 1항에서 러시아의 영토를 연방구성주체들의 영토, 내해, 영해, 영공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어 2항에서 러시아연방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계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법적 권리 행사를 명시하였다.¹⁾ 이외에도 헌법은 여러 조항을 통해 영토의 개념과 신성불가침성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헌법제정에 앞서 1993년 4월 「러시아연방 국경에 관한 연방법률」(Закон РФ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이하, 국경법)을 제정하여 소연방 구성공화국들 간의 행정구분선을 국경으로 인정하였다.²⁾ 국경법 제1절 2조는 러시아가 유효한 조약들과 소연방의 법률 조항들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공화국 당시의 국경을 러시아 국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4조는 국경법이 연방헌법과 러시아의 국제조약, 연방법률 그리고 연방구성주체의 법령 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국경법이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된 다른 규범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범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1991년 12월, 소연방을 해체시키고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할 때 약속한 민스크 선언과 알마티 협약의 근간을 지키 것이다.³⁾

러시아는 1993년 4월 국경법을 마련한 이후에도 자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완성하고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영토와 국경갈등에서 협력을 중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갔다.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과의 경계를 존중하고 나아가 이들 국가의 외부국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러시아가 이들 국가와 공동으로 국경을 수호하는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1995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레짐(border regime, transparent borders)을 구축하여 국경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여 신생국들이 국경수비 역량을 갖출 때까지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1998년에는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과 ‘접경협력 주요원칙 협약’(Соглашение об основных принципах приграни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우즈베크

1) 러시아 의회는 1995년 10월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법률' (연방법률 No. 187-Φ 3)을, 1998년 12월에는 '러시아연방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 (연방법률 No. 191-Φ 3, 2001.8월과 2002.3 등 차례 개정됨)을 제정하여 러시아연방의 영토적 통합성과 주권을 공고화하였다.

2) 1982년 11월에 제정된 「소연방의 국경에 관한 법률」에는 소연방 구성공화국들 간의 경계나 공화국별 고유 영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소연방 해체로 등장한 신생국들 간에는 국경준수에 관한 헬싱키 협정이나 비엔나 협정의 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시아는 이들 신생국의 영토와 국경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민스크 협약 제5조는 소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한 국가들은 현존하는 국가간의 경계를 국경으로 인정하고 상호 복가죄와 국민의 이동 및 정보 전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계설정방식과 이어
도 관할 방향

키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크스탄 등이 서명하였다.

독립국가 건설과정에서 러시아가 정립한 지정학적 목표이자 영토·국경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영토·국경정책은 국가 주권과 영토에 대한 불가침과 영토적 통합성을 확립하고 연방 국경지역에서의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둘째, 국경정책은 접경국과의 우호·선린관계의 형성과 공동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모든 국경에 대한 국제법적인 기준과 안보를 강화한다. 셋째, 독립국 가연합을 러시아의 내부적 국경지대로 상정하고 그 바깥지역으로부터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안보를 확립한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독립초기부터 우호선린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미래지향적 국경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연방계승국들과 심각한 영토갈등이나 국경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러시아는 유럽통합과 세계화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초국경적 협력이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키는 첨경임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III. 러시아·카자흐스탄의 국경간 정책 사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공히 소연방에서 독립한 신생국이다. 그런데 신생 독립국이 국경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접경국과의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명확한 경계설정은 향후 접경국과 국경을 획정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둘째는 국경수비대를 배치하여 자국의 국경을 직접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국경수비대는 국가안보회의에 소속되어 있다. 국경수비대에 더하여 세관, 군대, 치안부대 그리고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처의 다양한 유관기관이 국경안보를 관할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경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국가의 정치적, 법적 주권의 수호와 직결되며 접경지역까지 명확하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주권을 방어하는 주요 기제이자 핵심적 요소이다.

광대한 영토와 긴 국경선을 지닌 카자흐스탄은 독립초기 국경선을 안정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소연방 시기에 만들어진

기준의 국경초소들은 주로 여권심사를 통해 불법이주나 외국인들의 밀입국 혹은 밀수 단속을 진행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 그리고 소연방의 외부 국경에 해당하던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만 소연방 군대가 상주하면서 국경안보를 지켜왔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독립 초기에 소연방 계승국가들과의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도 테러, 극단주의, 마약유통, 그리고 불법이민 등의 범죄활동이 증대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했다. 이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은 국경안보를 강화시켜 나갈 타개책으로 러시아와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국경은 7,500km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에 속한다. 또한 양국은 지정학적, 인종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중첩성이 높아 국경선 획정과 국경안보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양국은 독립국가건설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의 안보관리를 실행하고 상호 협력적인 국경간 정책을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의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카자흐스탄의 다른 외부국경을 굳건히 만드는데 주력했다.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지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밀수품과 불법이민을 단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은 접경지역에서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영토·국경정책은 국경간 정책(cross border policy) 사례에 해당한다. 국경간 정책이란 자국의 국경안보와 영토적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접경국과의 우호선린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협력 방안을 일컫는다. 예컨대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안보적 공동관리나 경제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이 국경간 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국경간 정책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국경간 협력 활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국경간 협력을 위한 정부 당국자간의 회담, ②국경간 협력을 위한 정부간 조정기구(제도) 설립, ③국경간 협력을 위한 동의서 체결, ④국경간 협력을 위한 국가간의 실무진 구성 및 경제적, 상업적, 과학적, 기술적 협력의 틀 운영 등이 그것이다.

국경간 정책은 지정학적 탈근대성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탈소비에트의 해방 공간에서 소연방 계승국들이 제각기 국민국가를 건설하면서 영토·국경갈등에

직면한 것은 정치적 근대화의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영토·국경문제에 직면하여 국경간 정책을 채택하여 탈근대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였다.

2005년 1월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최대의 도시 알마티(Almaty)를 방문하여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영토적 경계를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에게 있어서 러시아와의 영토적 경계를 설정하고 안보와 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독립국가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양국은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안보강화를 위한 엄격한 통제전략과 협력강화를 유연한 교류전략을 복합적으로 채택하였다. 통제전략은 마약유통, 밀수행위, 불법이민 그리고 영토회복주의 등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반면 교류전략은 국경간 정책의 제도화 노력으로 진행되었다. 공동 국경수비대 운영을 통한 경비절감과 양국간 공동안보와 신뢰구축 모색이 이에 해당한다.

교류전략의 이득은 국경안보에 한정되지 않고 접경지역에 산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 개발과 이용, 생태적 쟁점에 대한 공동대처, 소연방 시기에 구축한 산업 인프라의 공동이용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국경은 서역(西域)과 동역(東域),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교차하는 독특한 점이지대에 해당한다. 카자흐 지역은 고대부터 정치적, 상업적 교류가 행해지는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소연방 계승국 가운데 영토 넓이가 1, 2위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사이에 새로운 국경이 설정되면서 소모적인 갈등이나 분쟁없이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지정학적 탈근대성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IV. 맷음말

탈소비에트 체제전환의 초기단계에서 러시아는 접경국과의 영토갈등 국면을 평화와 우호선린 그리고 국제법적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러시아의 영토·국경정책의 근간은 연방

헌법과 국경법을 비롯한 많은 영토 및 국경 관련 법률과 규정들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책실제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크리미아 영유권 인정, 카자흐스탄과의 국경간 정책 및 공동 국경관리, 핀란드와의 국경지역 협력, 중국과의 수십 년에 걸친 국경협정 타결 등은 러시아의 평화와 우호선린을 우선시하는 영토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러시아는 제국(帝國)의 틀을 해체하면서 어떻게 역내에서 국력의 절대적 우위라는 기득권 대신 국제법의 원칙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소연방에서 러시아로 국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그에 대한 의미를 평가절하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가 천명한 영토·국경정책이 세계열강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독립국가 건설의 정당성과 역량이 미흡한 약소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오늘날 지구촌은 이미 영토에 대한 근대적 사고를 넘어서는 초국경, 초민족적 교류와 협력 양상이 일상화한 탈근대적 사고로 전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경은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국경이 자국을 외부세계와 단절시키는 장벽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자국을 외부세계와 연결시키는 교류지점으로 만들기도 한다. 국경이 장벽이 되면 자-타를 구분하는 분리의 기능이 강하게 되어 국경수비 대에 의해 삼엄한 통제를 받게 되고 국경지대가 전진기지화 된다. 그런데 접경 국간에 우호친선과 상호의존이 강화되면 국경의 분리 기능이 미약해지면서 접촉기능이 활발해진다. 국경이 외부세계와 연결시키는 교류지점으로써 개방적으로 활용될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 등 교통수단 그리고 화물, 상품, 동물 등 모든 것이 국경검문소나 국경통제 장치를 거쳐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영토의 가치는 물리적 크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영토의 넓이로 봤을 때 러시아와 비교하기 어려운 작은 나라이지만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세계적인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했다. 러시아 역시 광대한 영토와 국경을 유연한 정책을 통해 개방하고 세계를 향한 교류지점으로 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어도논단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계설정방식과 이어
도 관할 방향

러시아의 경계설정 방식과 러시아-카자흐스탄 간의 정책사례는 우리의 이어도 관할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이어도에는 우리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어도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맞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제주 강정마을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제주도 남단 해역과 상공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한중일 3국의 갈등양상을 탈근대적 사고에 입각한 교류와 협력전략으로 풀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영토적 집착은 분쟁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니 3국이 선린우호의 원칙 하에 호혜적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홍철. 1997. 『국경론』. 서울: 민음사.
- 우준모. 2005.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 유라시아주의의 확립과 실현.”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 임덕순. 1997. 『정치지리학 원리: 이론과 실제』. 제2판, 서울: 법문사.
- 정희석. 2002. “러시아 연방의 국경문제.”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 Kahler, Miles and Barbara F. Walter. 2006. *Territoriality and Conflict in an Era of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kitin, Alexander. 2008. “Russian Foreign Policy in the Fragmented Post-Soviet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n World Peace*. Vol. 25, no. 2(June).
- Olcott, Martha Brill. *Central Asia's New States: Independence, Foreign Policy, and Regional Security*.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6).
- Penrose, Jan. 2002. “Nations, States and Homelands: Territory and Territoriality in Nationalist Thought.” *Nation and Nationalism*. Vol. 8, no. 3 (July).
- Tsygankov, A. P. 2003. “Mastering Space in Eurasia: Russia's Geopolitical Thinking after the Soviet Break-up.”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6, no.1.
- Valuev, Vasiliy N. *Russian Border Policies and Border Regions*. (Copenhagen: Copenhagen Peace Research Institute, 2002).
- Василенко, М. А., М. С., Вершинин, др. 2001. *Политология: Словарь-справочник*. М.: Гардарики.
- Колосов, В. А. и Н. С. Л. Мироненко. 2001. *Геополитика и Политическая География*.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동 — 향 — 과 — 이 — 슈

TREND & ISSUE



● 중국의 해양 관련 동향(7~10월)

중국 해감 5001호 이어도 과학기지 순찰

강소(江蘇)의 가장 큰 해양공무감시선인 중국 해감(海監) 5001호가 해양 순시에 들어갔다.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이 해양감시선은 길이 79.9m, 넓이 10.6m, 최대 항속거리 20knot, 지속잠항속도 5000knot를 넘는 대형 감시선이다. 6월 19일 오후 해감 5001호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부분에 진입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해감 5001호가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에 도달했을 때 한국 해양경찰 3003호 선과 조우했다. “중국해양감시선, 여기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국 경찰의 질문에 해감 5001호는 “한국 해양경찰 3003,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감시선 5001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소속해역에서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으면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한국 해양경찰은 계속해서 해감 5001호의 최대 적재량 등 다른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하였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국가 해양국 개편

중국 정부는 7월 22일 해양 감시 활동 강화 등을 목적으로 관련 부서를 재편하고 감시선을 통합 운용하는 ‘중국해경국’을 신설했다. ‘중국해양국 주요 기구 및 인원 편제 규정’이 국무원 비준을 통과하였는데, 규정에서는 국가해양국 산하 베이하이(北海)분국, 둥하이(東海)분국, 난하이(南海)분국을 설치하고 관할 해역에서 해양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실행하며, 또한 중국 해양경찰 베이하이 분국, 둥하이분국, 난하이분국의 명의로 해상 권의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대외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3개의 해양 분국들은 연해에 위치한 성(자치구, 직할시)에 11개의 해양경찰 본부와 지부를 설치하고, 중국 해양경찰국은 해양경찰 편대를 직접 지휘하여 해상 권의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해양 감시는 국가해양국 ‘해감’(海監), 공안성 ‘해경’(海警), 어업을 감독하는 농림부 ‘어정’(漁政), 항행 안전을 담당하는 교통 운수성 ‘해순’(海巡), 세관 총서 밀수 단속선 ‘해관’(海關)이 각각 실시해 왔다. 이번 재편을 통해 해순을 제외한 네 조직의 선박이 ‘중국해경’으로 일원화 된다. 또한 11개의 ‘해경총대’에 1만 6,296명이 배치되었고, 소속선은 3,000척을 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파견된다.

10일자 중국신문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한일 해상 보안 기관은 준군사적인 힘이 있다”고 지적, “해경은 무기가 배치되어 있어 주변국이 중국 어민에게 힘을 갖고 법을 집행하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는 중국 공선의 영해 내 순찰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중국 해경이 중국 경찰권을 행사하고 일본 어선의 단속 등을 실시하면, 차원이 다른 중일 마찰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항의

일본의 2013년 『방위백서』의 내용 중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중국 활동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항의했다. 『방위 백서』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華春瑩 부 보도 국장은 9일 정례 회견에서 “중국의 해양 활동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르고 있어 비난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부 보도 국장은 “중국은 평화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 정책도 방어 적이다. 일관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영토 해양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중국 위협론을 펴뜨려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방위백서』가 지적한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에 대한 중국 해군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엄중하게 반박했으며 무책임한 비난은 그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방부의 耿雁生 대변인도 11일 밤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방위백서』에 대해 “중국 군사 위협론을 구실로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도발하고 있다. 중국 군대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일본 측에 항의했다. 담화는 『방위백서』가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라고 언급한 중국 해군의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와 영공 영해에 침범에 대해, 재차 “근거가 없다”고 부정했다. 또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고 지적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을 둘러싼 긴장에 대해, “중국 측이 현상을 파괴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역외 국가와 수시로 군사 훈련을 하고 지도자가 무책임한 언론을 발표하여 대전 때 침략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아시아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강한 우려와 경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일 관계 개선 노력 기대

중국 시진핑 정권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의 ‘보류’를 요구하고, 중·일 정상회담은 커녕 외교 장관 회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얻는 한편, 중국 자신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유지 및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경계하는 미국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언제까지나 일본과 접촉하지 않을 수는 없다”(중국 공산당 관계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영 신화사통신은 21일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의 경제계 및 국민의 대부분이 중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고 아베 총리가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사태 타개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이미 일본 참의원 선거 공시 직전에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翁正聲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일본 경제 단체 회원과 만나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변화 조짐이 나오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이어도 쟁탈을 위한 전초기지” 언급

중국은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향후 한국이 ‘쭈옌자오’(蘇岩礁)(중국명 ‘이어도’)를 쟁탈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청년보』(2013/08/04)에 따르면,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했다고 한다. 하나는 안전한 해상물류 수송로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두 가지 이유 이외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중국과 가까운 제주도 해군기지가 한중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이어도는 동해와 황해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에 이 해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이어도는 하나의 전초기지가 되고 누가 이어도를 통제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이어도에 설치한 해양과학기지는 단지 소형선박이 정박할 수 있고 헬리콥터가 이착륙하는 능력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술적인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완료되면 이 기지에 배치하는 ‘독도-이어도 함대’가 이 지역의 역량 평형을 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 보도에 따르면, 비록 한국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기지가 앞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상주하는 기지가 될 수 없다고 공언했지만, 상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단 기지가 완공되면 미국은 언제든지 한-미 공동방어조약에 의해 이 기지에 진주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행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케인 상원의원의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영토다” 발언에 거세게 반박

2008년에 미국 대통령후보였던 멕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8월 21일 일본을

방문하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영토이고, 중국의 해양 활동으로 위협 받는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외교부장관인 기시다 후미오와의 회담 후에 열린 기자 회견에서 땅을 땄다는 일본의 영토라고 여러 번 번복하면서 강조했다. 또 이 관점은 미국의 회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 중국에게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 공무선이 자주 땅을 땄다는 주변해역을 순항하는 것은 중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중국 언론은 멕케인의 이와 같은 발언이 미국 정부가 땅을 땄다는 주권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중립적인 입장과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이 문제와 지역 정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 의원이 무책임한 언론의 발표를 종료하도록 충고한다”는 중국 외교부 부보도국장의 담화를 전했다. 담화는 “땅을 땄다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어느 누가 기본적인 사실을 부정하려 하더라도 모두 헛수고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261년 전 고지도, 땅을 땄다는 중국령임을 입증

만주사변 82주년을 맞아 광동성 국제문화교류센터가 주최하는 고지도 전시회가 9월 18일 마카오 회의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80여 장의 땅을 땄다는 오에 관한 옛 지도와 사진 자료가 전시되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된 지도는 1752년에 제작한 항해도로, 261년 전에 땅을 땄다는 이미 중국영토에 속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羊城晚報』(2013/09/19)는 보도했다.

이들 희귀한 고지도들은 “세계 고지도 소장 제1인자”라고 불리는 홍콩의 수집가인 담조장(譚兆璋)이 20여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집한 것이다. 명청 시기의 「류구도」, 청나라 시대 건륭시기의 「침로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동양을 방문하는 항해대발현지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출판된 문헌도 등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된 지도는 프랑스 선교사가 1752년 그린 항해도이다. 지도에서 표시된 땅을 땄다는 민난화(閩南話)의 발음으로 ‘하오위수(Hao yu su)’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담조장은 “이 지도가 일

본이 주장하는 ‘1884년에 류큐 사람인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郎)가 발견했다’는 다투위다오보다 거의 한 세기 빠른 것이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 다투위다오 주권 수호 결심 확고

중국 외교부장관 자격으로 처음 미국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현지시간으로 9월 20일 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새로운 중·미관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왕이 부장은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캐리 미 국무장관,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 등과 회담을 가졌다. 왕이 부장은 대만문제, 한반도핵문제, 중일 관계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사무 연구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총괄담당 국장인 제프리 베이더 (Jeffrey A. Bader) 박사가 주재한 회합에 참가했다. 그는 중·일관계와 다투위다오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다우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중국 정부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the 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왕이 부장이 “중국은 회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의사가 있지만, 일본 측은 다투위다오의 주권분쟁이 존재하는 것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NHK 방송국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일본이 다투위다오 주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일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中 외교부, 日 외무성의 다투위다오 관련 동영상에 “도발중단 촉구”

일본 외무성이 10월 23일 인터넷을 통해 다투위다오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했고,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다투위다오 및 인근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일본이 어떠한 방법으로 아무리 불법적인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바뀔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 측에 따른 태도로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고 다오위다오 문제의 원만한 제어와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길 길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의 해양 관련 동향(7~10월)

아베 총리, 이시가키 해상 보안부 순시선 시찰

참의원 선거 유세를 위해 오키나와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17일 오전 이시가키 섬을 방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을 경비하는 이시가키 해상 보안부 순시선인 ‘이시가키’를 시찰했다. 아베 총리는 승무원들에게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의 소유권 취득(국유화) 이후 중국 공선의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접근 및 배회가 빈발하고 영해 경비를 둘러싼 환경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도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하게 지키겠다는 결의를 했다. 일본의 주권 견지를 위한 직무에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현직 총리의 이시가키섬 방문은 1972년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 이후 처음이다. 시내에서 가두연설 중에 총리는 “센카쿠는 확실히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 걸음도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의 사이키 차관 방중, 중국과의 의사소통 계속 확인

외무성의 사이키(齊木昭隆) 차관은 30일, 2일간의 방중을 마쳤다. 사이키 차관은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단에게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서로 양해했다”고 말했다.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귀국해 수상과 외무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보류하고 싶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사이키 씨가 아시아 담당 외무 차관과 만나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를 인정하고 ‘보류’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가 호소하고 있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향한 흐름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국영 신화사통신은 30일 논평에서 아베 총리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이유로

“‘흉금을 열어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의 본심과 성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일본『방위대강』중간보고,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 강화

일본 방위성은 26일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의 재검토를 위한 ‘방위력의 검토에 관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시위 활동과 도발을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높은 경계 감시 능력을 가진 무인 정찰기 도입 검토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과 민간 기업과의 제휴·협력 강화를 명기했다.

중국이 시위 행동을 반복하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을 염두에 두고, 도서 방어에 대해 “기동전 능력과 수륙 양용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기하고, 상륙 작전 등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자기 방위를 위해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의 유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정부는 향후 연말 새로운 방위대강의 정리를 위한 논의를 가속시킨다. 도서 방위는 “부대·장비의 배치, 통합 운송 및 수륙 양용 부대의 충실·강화”를 추진하는 구상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부대인 육상 자위대 서부방면 보통과 연대(나가사키 현 약 700명)의 확충과 수륙양용차 배치를 상정하고 있다.

무장 세력의 부속섬 점거에 자위대 출동, 법제간(法制懇) 제언

정부의 전문가회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는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의 재검토와 함께,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의 분쟁에서도 자위대가 충분한 무기 사용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법 정비를 제안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상정하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등 낙도(부속섬)에 무장 외국인이 상륙·점거하거나 타국 부대와의 돌발적인 충돌이 생기는 경우이다. 자위대법은 개별적 자위권

에 따라 자위대의 방위 출동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거나 무력 공격의 명백한 위협이 임박한 경우에만 발령 할 수 있다. 무력 공격에 대해서 정부 견해는 “외부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무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무장 외국인의 낙도 점거나 돌발적인 충돌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헌법 해석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색 지대’라고 되어 있으며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멕케인, 센카쿠 “중국이 일본의 기본권 침해”

아베 총리는 8월 미국 공화당의 멕케인 상원 의원과 수상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다. 총리는 멕케인이 속한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를 팜으로 이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의 삭제·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전 관련 예산의 적절한 조치와 자금 동결 해제에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멕케인 의원은 “팜 이전을 포함한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미 상원이 7월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도발 행위를 견제하는 결의를 채택 것에 대해 “미 의회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후 멕케인은 도쿄 도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설명을 받았다”고 밝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미일 동맹은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카쿠 문제에 대해 “일본의 영토인 점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문제의 본질은 (영토) 분쟁이 아니다. 중국이 일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공동 전선을 펼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내각부, 센카쿠 관련 첫 여론 조사

내각부는 8월 29일 센카쿠 열도에 관한 첫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서 센카쿠 열도의 존재를 91.1%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사실이나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50% 정도에 그쳤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중국 정부가 자주 영해를 침범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5.0%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74.5%에 달했다.

또한 센카쿠 열도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에 달했다. 센카쿠 열도에 관한 여론 조사는 처음이며,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중국의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한편, “중국과 대만의 주장은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지적된 후 1970년대에 갑자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51.0%에 그쳤다. “전쟁 전에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50.9%),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 가 존재하지 않는다”(48.0%) 등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여론 조사는 7월 전국 2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회수율 은 60.0%였다.

센카쿠 국유화 ‘평가한다’ 56%,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아사히 신문사가 9월 7, 8일 실시한 전국 정례 여론 조사(전화)에서 정부가 1년 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 한 것에 대해 물자, ‘평가’가 56%, ‘평가하지 않는다’가 24%였다. 비슷한 질문을 한 지난해 10월 조사의 57%, 23%와 비교해 거의 바뀌지 않았다. 국유화에 대한 평가는 남녀나 연령대 별로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평가’가 62%인데 반해, 여성은 51%로 비교적 낮다. 연령별로는 ‘평가’가 70세 이상에서 45%로 낮은 편이지만, 젊은 연령대일수록 높아져 30대에서는 66%에 달했다. 다만, 중일관계의 악화에 대해 4가지 선택 중에서, ‘문제’라는 답변이 ‘매우’ 32%, ‘어느 정도’ 50%로 나타나 합해서 82%였다. 지난해 10월 조사의 총 81%와 거의 같았다. 센카쿠 국유화를 ‘평가’ 한다는 정도 악화 는 30%가 ‘매우 문제’라고 보고 있다.

낙도 방위에 '수륙양용단' 3천명 규모로 신설

일본 정부는 9월 18일 센카쿠 열도 등 낙도 방위를 담당하는 3,000명 규모의 전담 부대 '수륙양용단' (가칭)을 2015년에 육상 자위대에 신설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낙도 방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침공 당한 낙도를 탈환하는 미 해병대와 같은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에 30명 정도의 '수륙양용준비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륙양용단은 이 준비대를 바탕으로 현재 주로 낙도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 방면 보통과연대 약 700 명도 편입시켜 창설한다. 제1공수단 등 정예 부대를 비호하는 방위대신 직속의 '중앙즉응집단'에 배치하고 전국 각지의 낙도에 동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

영공 침범 무인항공기 '격추 가능' 도 검토

일본 정부는 9월 18일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북방의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군이 무인 항공기를 비행함에 따라 국적 불명의 무인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를 상정한 대처 방침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자위대에 의한 격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9월 18일 기자 회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철저한 대응책을 생각 하겠다"고 말했다. 자위대는 외국 유인기가 영공에 접근하면 무선 등을 통해 영공에 들어가지 않도록 퇴각을 요구하지만, 무인 비행기의 경우에는 무선 경고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격추를 포함한 대처 방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기 사용 기준 및 세부 임무 내용을 정한 부대 행동 기준(ROE)에 반영시킨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오

역대 정부가 ‘위헌’이라고 해왔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해금을 향한 움직임이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총리 하에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총리의 사적 자문 기관의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 논의 재개(9월 17일)이다. 전쟁 포기와 전력불보유를 명기한 헌법 제9조의 정부 해석은 원래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외부에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력 행사(무력)는 합헌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 해석이다. 아베 총리는 내각법제국 장관에 전 내각 ‘안보법제간’에서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 출신의 고마쓰 이치로를 임명했습니다. ‘유리 세공’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정부 해석을 어떻게 재구축 하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길을 열어 논리적인 ‘해석’이 되는지, 법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이며 큰 논쟁이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센카쿠 긴급발진, 나하 F15 비행 60% 할증 가정

정부가 오키나와 진홍책의 중점사업으로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하 공항 제2활주로가 완성되면 항공 자위대, F15 전투기의 동 공항의 비행 횟수는 현재의 약 1.6배인 1만 4,800회 정도가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동 공항에서는 동중국해로 날아오는 중국군기에 대응하는 긴급 발진(스크램블)이 급증했다. 활주로 증설로 난세이 제도 방위 강화도 도모 된다. 국토교통성 오사카 항공국이 공고 · 열람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에 따르면, F15 비행 횟수는 연간 9,530회(2010년도 실적)이다. 이에 대해 제2활주로 완성 후 운용이 진행된 2030년에는 1만 4805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음 등의 영향을 예측했다.

센카쿠 영해 침입은 ‘회색지대’ 사태 ... 방위상

오노데라 방위상은 30일 오전 중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서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공선의 영해 침입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사시에도 평시에도 맞지 않는 ‘회색지대’의 사태라는 인식을 보인 후, 신설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 NSC)에서 대응을 협의할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회색지대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사례로 올 봄에 북한이 미사일의 목표로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요코스카(카나가와현)와 미사와(아오모리현)를 지목한 사실도 들었다. 정부 견해에서는 무력 공격 등 ‘유사시’에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회색지대의 사태는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어
도
리
포
트

IEODO REPORT

2014 이어도연구회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

전체사회 : 이병걸 교수(제주대)

개회사 고충석(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축사 박경철(국립해양조사원장)

김우남(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신동범(제주대학교 교무처장)

기조연설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이어도 문제 - 김부찬 교수(제주대 로스쿨)

Panel 1 해양갈등에 대한 각국의 시각

사회 : 최연홍 연구위원(이어도연구회)

“대만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

-리청위 박사(대만중앙연구원)

“남중국에 분쟁에 대한 베트남의 시각”

-르 꿔이 꿔이 국장(베트남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해양국)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 이상 또는 현실”

-양 주위 교수(중국 우한대 로스쿨)

“이어도는 비유인가?: 한·중관계에서 영유권 분쟁의 중요성과 미국의 역할”
-스콧 워렌 헤럴드 교수(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에드먼드 월시 외교대학)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갈등에 대한 한국의 관점”
-김현수 교수(인하대 로스쿨)

토론

- | | |
|--------------------|--------------------------|
| - 김희열 교수(제주대 독일학과) | 사회 : 이수훈 소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 - 이창열 박사(KMI) | - 강병철 연구실장(이어도연구회) |
| | - 김상기 박사(극동문제연구소) |

Panel 2 해양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모색

사회 : 김현수 교수(인하대 로스쿨)

“페루와 칠레의 해양분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박영길 박사(KMI 독도연구센터장)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해결책 제안”
Vu Cong Giao 교수(베트남 하노이 대학 로스쿨)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지형에 대한 주권분쟁의 최근 전개상황”
방호삼 교수(전남대 해양경찰학과)

“남중국해(9개 단선) 분쟁에 대한 중-필리핀 중재의 절차적 단계의 법적 문제”
Michael Sheng-Ti Gau 교수(대만 국립해양대학교)

“바렌츠해 : 러시아와 노르웨이 분쟁수역의 균등분할 사례”
최연홍 연구위원(이어도연구회)

토론

사회 :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 | | |
|--------------------|------------------|
| - 이용중 교수(동국대 법학과) | - 이창섭 이사(코리아타임스) |
| - 김보근 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 | |



발표문 요지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는 2013년 11월 7~8일 「아시아 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Challenges to Solve the Maritime Conflicts in Asian Region)이라는 주제로 제주오션스위프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도연구회가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제세미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립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과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등 동아시아 해양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만, 베트남, 중국, 미국의 해양갈등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전문가 및 이어도연구회 연구진들이 함께 제주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어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갈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대책을 모색했다. 여기서는 발표자들의 발표문 요지를 정리한다. <편집자 주>



기조연설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이어도문제”(김부찬 제주대 로스쿨 교수)의 요지는 앞의 ‘이어도 칼럼’에 실었음.



Cheng-yi Lin

대만중앙연구원
연구원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대만과 중국의 협력관계에 있어 양안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대만의 정당정치, 관료정치, 그리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동남아 국가와 외교관계개선 등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쳐왔다.

양안관계의 긴장

대만의 이등휘 총통은 1990년대 입법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조치를 주도했다

장개석 총통은 초기 남중국해의 용성 섬과 타이핑 섬에 대한 대만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필리핀 그리고 미국과 공동대처를 모색하였다. 공산주의의 위협에 있어서 당시 분쟁의 상대방이었던 동남아 국가와 협력을 추진했지만 우선은 대만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기초에 협력을 추구하였다.

냉전시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대만은 월남이나 필리핀 보다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하여 1974년 중국과 월남의 무력충돌이세도 대만해협을 지나는 인민해방군을 지원하지 않았다. 장개석은 본토수복이라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남중국해의 타이핑 섬은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

어 전략적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이등휘 총통 시절 대만의 대중국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어 1993년 최초로 공식적이 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열고 비록 그 해석은 각각이었지만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동의했다. 이를 기초로 대만의 남중국해에서 정책 목표는 (1) 남중국해 개발과 관리 강화, (2) 연안국가의 협력촉진, (3) 분쟁의 평화적 해결, (4) 해양환경의 보호로 설정하였다. 이등휘가 1999년 방미를 계기로 양안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지만 원유탐사와 학술교류와 같은 실무협력은 지속되었다.

1999년 7월 대만은 양안관계가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적인 반발과 군사적 대응으로 나왔다. 우연한 일치로 이와 같은 시기 대만은 타이핑(Taiping) 섬과 통사(Tungsha) 섬에 주둔하던 군대의 무장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발표를 하면서 난사군도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는데 군대는 적절하지 못하고 밀수, 밀항, 어업문제, 환경보호와 같은 부분은 경찰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섬의 방어업무가 국방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되었지만 강화된 중국의 군사활동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를 대만이 양안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특수관계로 설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였다. 중국은 대만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보다 호전적인 국가로 만들어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려는 것을 염려했다. 대만은 이러한 조치를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대만이 선도적으로 군대를 경찰로 대치함으로써 주변 관련국도 이에 따르게 되면 기장이 완화되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역설적으로 ASEAN국가들은 대만이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중국의 점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ASEAN국가들은 대만이 과도한 군사적 모험주의로 인해 중국을 자극해 군사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역대 대만의 지도자들은 양안관계에서 중국의 군사적 침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관련국들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는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타이핑에 활주로를 건설하는 계획은 오래 전에 제기되었지만 안보문제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천수이볜이 착수했다. 하지만 천수이볜도 안보전략의 우선순위는 남중국해가 아니라 양안관계에 있다고 했다. 양

안관계의 악화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국영석유회사가 2005년 남중국해에서 석유개발에 대해 3자협력에 서명하는 과정에 사실상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집배하는 대만을 배제하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분리 반대법”을 제정하였다.

민진당 천 총통은 2006년 재선에 성공하여 발표한 국방보고서에서 해상안보와 국익의 중요성 강조, 다른 민주국가와 해양협력을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자원 개발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의 담당기관을 내무부에서 국가안보위로 이관하였다.

천수이벤은 타이핑 섬에 활주로 건설과 더불어 통사 섬을 대만의 6번째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 2007년 전반부 공사를 완료한 활주로 건설은 인도적 지원과 해양 안전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권을 강화했다. 타이핑의 활주로 건설은 대만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난사 이니셔티브에 반하는 결정이었다.

천의 스패틀리 이니셔티브는 “(1) 남중국해 당사자 행위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에 명시된 영토와 관할권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원칙의 확인, (2) 자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생태보호 협력의 제안, (3) 국제 생태 및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연구활동 지원, 그리고 (4) 긴장완화를 위한 비정부 민간 연구소에 의한 활동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제안은 결국 대만이 외교적으로 활동이 제약된다는 약점으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남중국해의 어떤 활주로도 중국에 귀속된다고 선언함으로써 대만은 무시되고 중국으로부터 대만은 남중국해에서 강요된 공동방위를 형성하게 되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대만의 활주로 공사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대만은 이후 타이핑 섬에서 필리핀과는 인도적 지원과 같은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동 지역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양안관계의 악화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만관계의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 민진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양안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성이 있다. 민진당의 정강정책에 따르면 대만이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유관당자당사자를

포함하는 다자구도에서 공동개발과 갈등을 뒤로 미루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양안관계의 회복

2008년 마잉주 총통의 당선으로 1992 합의로 돌아가 양안관계가 회복되어 대화를 제도화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로서 남중국해의 협력도 새로운 전기를 맞아 중국과 대만의 공동방위를 제안하게 되었고 이는 양안관계의 신뢰구축의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대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담수가 나오는 타이핑 섬에서 유사시 중국에 대한 보급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협력을 상정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협력을 경제에서 출발하여 양안관계의 정치, 안보 그리고 통일로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본다.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양안의 주민들이 남중국해의 해역과 도서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책임을 공유한다는 언급을 했다.

대만측에서는 일부 퇴역장성들은 공동방위에 대해 찬성하지만 마잉주 정부의 지도부는 활주로 공동건설과 같은 부분에서 전략적인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일부는 남중국해 문제는 대만의 주권에 관한 것이므로 중국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마잉주 정부의 입장은 다음 4가지로 표현된다.

1. 남중국해 난사군도, 시사군도, 청사 군도, 통사 군도는 대만의 주권아래 있으며 다른 국가로부터 어떤 영유권 요구도 수락할 수 없다
2. 대만은 UN과 UN해양법 규약에 근거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일방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3. 대만 정부는 주권보호, 분쟁의 보류, 평화와 호혜성의 원칙을 지지하며 지하자원의 탐사에 주변국가와 협력한다
4.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분쟁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 안전, 발전을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마잉주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성 및 연성국력을 총동원하

여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왔다. 필리핀의 황안다오를 필리핀 영토로 편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한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법적 근원을 찾아 대응했다. 이와 별도로 마 총통은 통사 섬을 직접 방문하여 중국과 협상력 강화를 목표로 이 지역의 방위력 증강을 선언하였다. 이어 내무장관은 이 섬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주 경비대원들의 훈련 강화를 지시하여 실탄훈련을 수행했다. 2011년 여름부터는 대학생 연수를 두 차례 실시하여 젊은이들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안보의식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켰다.

양안관계의 협력도 강화되어 1993년 시작하여 2004년 중단된 연안 하이드로 카본 탐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2008년 합의했다. 이 협력사례는 앞으로 자원협력의 성공사례로 남게 될 것이며 이 밖에도 양안 해상교통협정, 범죄추방 및 사법공조 협정, 어선 업무에 관한 양안 협력 협정과 같은 실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의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만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2001년부터 공동 워크샵을 개시했으며 중국 외교부의 NISCS와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IIR을 각각 양쪽의 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중국의 대만과 협력은 ASEAN국가와 균형을 추진하는 현실주의적 고려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이다.

10회 공동워크샵에서 양국의 대표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관리협력위원회의 창립제안과 함께 남중국해 위기를 다루는 공동 군사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여 당국을 놀라게 하였다. 공동순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측에서는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사안이지만 대만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내부적 비판이 제기되고 중국의 의도를 의혹의 눈길로 보고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대만의 강경한 영유권 확보 조치와 주장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거나 환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건 국가 대 국가의 특수관계가 무엇이든 대만이 모든 외교관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대만은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 국익의 확대,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방어임무 수행에 핵심고리

가 된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양안관계를 고려할 때 민진당과 국민당의 차이가 극심하다. 민진당의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던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대만의 정치 경제적 독립성을 잠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안보에 대한 고려 없이 중국과의 협력만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양안관계의 신뢰구축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중국의 미사일 배치와 철수 거부는 중국이 여전히 대만 안보의 주요위협이라는 것이다.

대만이 DoC 채택과정에 배제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전문가들은 미얀마가 연안국가가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들어 대만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만은 4개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참석하지 않고 어떤 해결책도 타결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타이핑 섬에 활주로 추가건설에 대해 베트남의 항의하자 중국은 양안관계가 호전되는 시기에 대만의 강경대응을 응원하였다. 대만은 난사군도에서 중국보다 베트남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대만은 한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협력으로 ASEAN국가와 미국으로부터 소원해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만이 중국과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은 중립적인 입장은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2010년 이래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중국의 9개점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2012년 산사를 시로 승격하고 새로운 군사시설을 건설하는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중립적 입장은 철회했다. 미국은 베트남 및 필리핀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대만이 미국의 입장을 지원하면 중국으로 하여금 양안관계의 발전의 후퇴로 갈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다.



Yang Zewei

중국 우한대
로스쿨 교수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도를 최초로 발견하고 관리했다는 점에서 이 수역과 섬들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 1960년대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발견되자 동남아국가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수역과 섬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나서기도 했다. 현재는 7개 국가가 관련된 난사군도(스페틀리 군도)에 갈등이 집중해 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EEZ 관련 해양경계선 회정에 있어 중국의 U자형 경계선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주장하는 EEZ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나투나 군도 북동부의 대륙붕과 EEZ와 중복되어 분쟁지역으로 부상했다. 분쟁의 당사국이 많아질수록 타협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항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본다.

역외국가인 미국, 일본, 인도의 개입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화하고 따라서 해결을 분쟁을 복잡하게 한다. 미국은 냉전기간 동남아에서 중립과 불개입원칙을 유지해왔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2009년 7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이후 적극적 개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10년 7월 미국의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9회 아시아태평한 안보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이 이 지역의 항해의 자유와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한

다고 발표했다. 2010년 7월 클린턴 국무장관은 하노이에서 열린 ASEAN 지역포럼 외무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과 해양법에 근거한 자유로운 항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ASEAN회원국과 중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인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힐러리 장관은 영유권 문제에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 관련이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자유항해, 합법적 무역행위의 추구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청나라 시대부터 남중국해에 관심을 보여오다가 2차대전 패전 이후 냉전기간 거리를 유지하다가 최근 이 지역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안정이 아시아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ASEAN과 협력을 통해 이 지역에 영향력 침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국제범죄, 해적소탕, 마약밀매, 불법이민 등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면서 노다 총리는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 그리고 베트남의 평 쿡 국방장관을 만나 협력 강화와 동해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인도는 9·11 이후 “Look East” 정책을 통해 정책의 관심을 아라비아 해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2002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 2004년 ASEAN-India Partnership for Peace, Progress and Shared Prosperity, 그리고 2005년 ASEAN-India Free Trade Area를 통해 ASEAN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전통 안보영역에서 ASEAN과 협력을 명분으로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ASEAN국가는 남중국해의 분쟁을 국제화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역외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남중국해 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필리핀은 난사군도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카랑 만을 미태평양 함대에 임대하면서 중국을 봉쇄할 목적으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일본이 안보, 경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미·중의 균형자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평화로운 항해의 자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르면 남중국해는 2개 이상의 국가의 EEZ와 영해로 이루어진 수역이기 때문에 17조에 따라 모든 국가의 선박이 단순한 통행(innocent passage)의 권한을 가진다. 58조의 규정에 따라서도 모든 국가는 87조에 규정된 항해, 비행,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 가설, 그리고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해양에서 활동에 관한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해 항상 존중하는 정책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중국의 1998년 EEZ와 대륙붕에 대한 법률 11조에 명시되어 있다. 중국은 난사군도에서 영토주권의 확보를 중요시하지만 항해와 비행을 자유를 보장할 의미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사실 매년 7만대의 선박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자유항해에 반대하는 국가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과 ASEAN회원국은 2002년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에 서명함으로써 UN해양법 협약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했다. 이 선언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상호신뢰를 촉진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선박은 협약 21조와 58조에 명시된 바대로 평화로운 항해를 통해 영유국의 안보와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자유항해를 향유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해적행위의 만연, 테러리스트의 활동의 증가, 그리고 무장선박의 활동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해적활동의 중심이 말라카 해협에서 남중국해로 이동했으며 중국의 어선과 어부들이 해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Abu Sayyaf Group, Free Aceh Movement, 그리고 Jamaah Islamiya와 같은 테러단체가 활발하다. 그리고 관련국의 무장선박이 남중국해에 출현하여 어선과 어부를 대상으로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

남중국해에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양자 및 다자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어도는 비유인가?

한·중관계에서 영유권 분쟁의 중요성과 미국의 역할



스콧 워렌 헤럴드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에드먼드 월시 외교대학
부교수

한·중관계에서 이어도 영유권 분쟁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수중에 잠긴 암초라는 점에서 한·중관계에도 잠재되어 있는 문제로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이 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처럼 표면 위에 떠오른 현안이기도 하다.

분쟁에서 시작된 한·중관계

중국은 북한의 무력남침을 허락해주면서 피동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전에 개입하여 남한에 의한 통일을 방해했다.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영토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동북지방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이 과거문제를 덮어두고 1992년 한·중관계가 정상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의 외교적 갈등상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북한, 역사, 그리고 해양분쟁에서 부상한 이슈들

한·중관계의 갈등은 한국전에 참전한 중국의 역할이라는 연장선에서 북한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한민족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국

경협정을 부정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남한으로 입국시킬 것을 주장하고,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구매를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중간의 역사분쟁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 봉괴 시 북한 영토를 중국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역으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 시 동북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근거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염려한다. 대륙붕과 EEZ 확정과 관련한 해양주권에 대한 한·중간의 분쟁도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존재에 파생된 이견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은 북·중간의 국경협정을 부정하므로 백두산의 경계선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작은 섬에 대한 영유권, 그리고 해양 경계선 문제에 이견이 존재한다. 영토문제에 관해 남한은 북한을 지원하며 북한이 취약한 국력으로 인해 영토를 중국에 양보하는 것을 우려해 북한이 1963년 중국과 체결한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식민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에서 한국이 탈북자를 수용하기 싫어하는 것은 중국과의 문제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중간 이견의 또 다른 본질을 보여주는 데, 문제는 존재하지만 무역과 투자와 같은 협력현안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이거나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는 다분히 정서적으로 한국의 여론과 언론에 비쳐진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유우익 통일부 장관이 강제송환을 하지 말라고 중국에 요청하는 것은 조용히 처리하되 쟁점으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한국의 주장은 조·중관계의 전통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국 내 조선족을 근거로 한국의 영토적 확장을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탈북자의 남한 행을 묵인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남한은 적극적으로 탈북을 종용하지 않기로 약속

했다. 이는 북한에서 대량의 탈북자를 통해 한국인의 초국가적 공동체 출현을 방지하는 한편 북한의 내부 안정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에 대한 긴장

한중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학자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봉건적 관계는 합법적 조공관계로 유교적 사상에서 형제관계와 같다고 본다. 1992년 한·중 국교 정상화 과정에도 한국은 이를 우려했고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에 편입하려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공유된 역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

공산권 붕괴, 김일성 사망, 아사자 속출은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이라는 의미로 중국에게 다가왔고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한국의 자본의 유입과 동북3성 거주 조선족과 인적 교류의 확대는 초국가적 공동체의 출현으로 이 지역에서 민족분리주의를 우려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 이로서 중국은 변경지방을 역사적으로 중국에 결합된 것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3년 10월 동북공정을 시작하였다. 중국은 조선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한국정부에 항의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귀국한 조선족을 처벌하기도 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붕괴로 인한 통일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토적 지배욕을 염려하는 한편 중국의 관리들은 영유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된 한국의 구토수복운동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점에서 방어적인 것이며 학술적인 것으로 중국 국내의 안정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동북공정은 의도가 무엇이던 한국 여론의 한·중관계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고구려 역사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민요 아리랑, 전통악기 가야금,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 한국전통무예 씨름 그리고 다양한 의식과 전통 춤을 UNESCO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민족감정을 자극했다. 2007년 장춘의 동계아시안게임에서 5명의 메달 수상자는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는 풋말을 들어 올리는 이벤트를 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는 것은 북한 땅이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현재 강대국의 패권에 대한 전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달라이 라마의 방한금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 한국정부는 2004년 역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했다.

중국이 더욱 염려하는 부분은 한국의 국회의원 60명이 1909년 일본식민지 정부와 청 왕조가 체결한 간도협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제국주의가 대만을 합병한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간도 문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러한 영유권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는 열려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영토보전과 국익에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해양영역의 분쟁

한·중관계에 존재하는 해양분쟁은 4가지이다. (1) 서해의 배타적 경계수역, (2) 이어도로 알려진 수중암초에 대한 영유권, (3) 한·중 사이의 수역에서 어업권, (4) 영해에서 한국이 수행하는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규정시도.

서해에서 EEZ 경계는 200해리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겹치기 때문에 구획을 설정하는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한국은 등거리의 중앙선 원칙을 중국은 해안선 길이와 인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을 주정하고 있다. 1998년 이래 10여 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타협안을 찾지 못했다.

이어도는 EEZ가 겹치는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은 등거리와 역사적 연관성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와 인구 외에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선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3년부터 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중국외교부는 2008년 홈페이지에 이어도를 중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한국은 자국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어도 문제를 UNCLCS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제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측 수역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는 중국어부에 대한 한국 해양경찰의 대응은 양국의 긴장요인이다.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1998년 양국간에 체결

된 어업협정이 2001년 발효되었다.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중 어업분쟁의 빈도와 심도는 점점 격화되고 있다: 한국에 나포된 중국의 불법 어선이 2007년 79척에서 2010년 91척으로 증가한 반면 불법어업으로 체포된 어선은 2007년 27척에서 2011년 11월까지 294척으로 증가. 중국어선은 어선을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쇠막대, 칼, 죽창 등으로 무장하여 해경에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등 격화되고 있다.

2010년 12월 중국 어선이 해경함정에 충돌하다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당국은 체포된 중국어민 석방, 사망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어선의 변상을 요구하자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하다 나중에 어민을 석방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2011년에는 체포에 저항하던 중국어민에 대한 한국해경의 총격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영해에서 한국과 한국의 동맹국이 어떤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중은 불편한 관계에 있다.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 침몰로 한·미가 서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중국은 미국 항모 조지 워싱턴호의 훈련에 대해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자국의 영해에서 어떤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가를 다른 나라가 규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토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다.

한·중 영토 분쟁에서 미국의 역할

미국은 한국과 동맹국으로 영토, 영해, 영공에서 군사훈련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와 영토보전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 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한·중간에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동맹국의 지원을 위해 즉각 개입할 책임이 있다.

다행히 한·중의 영유권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군이 DMZ를 넘어 북으로 가거나 중국이 조·중 국경을 넘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다. 국경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은 거의 없다. 동맹국인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워 조·중 국경협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이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취할 가

능성은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주권을 내세워 처리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북송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치적 망명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해왔다. 고구려와 1909년 간도협약과 같은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것이다.

EEZ 경계획정, 이어도 문제, 그리고 어업협정과 같은 해양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규정에 기초한 국제기구를 통한 타협을 지지하는 한편 중국의 입장보다는 한국의 입장에 근접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문제는 한국이 자국의 영해에서 동맹국과 어떤 군사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결론

한국이 역사를 내세워 중국 내 조선족을 결합해 중국영토를 침식하는 일이나 북한의 붕괴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때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한·중 양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쟁을 가라 앉히고 조용히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해결책의 제안



Vu Cong Giao

베트남 하노이 대학
로스쿨 교수

남중국해에는 중국과 타이완의 남쪽, 베트남의 동쪽, 필리핀의 서쪽, 말레이시아의 북쪽에 위치하는 관계로 베트남에서는 동해, 필리핀에서는 서필리핀해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명칭에 대한 다자간 갈등의 양상으로 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법적(UNCLOS)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접근에 따르면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국은 UNCLOS의 배제를 피하기 위해 참여의무조항에 따라 형식적으로 참여했으나 몇 주 후 관할권 문제를 들어 중재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이후 중재위원회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문제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ASEAN국가도 중재위원회에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념적인 것은 ASEAN은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중요철학으로 삼고 있는데 필리핀의 중재신청으로 촉발된 남중국해의 긴장으로 2012년 프놈펜 ASEAN의 회의에서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필리핀이 독자행동을 통해 ASEAN의 전통을 깨다고 보는 것이다.

실리적인 이유는 필리핀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중재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참여를 거부하는 결정은 ITCLOS를 통한 분쟁해결이 취약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되었다. 중국이 IT-

CLOS에 참가하더라도 그 결정을 관철시킬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필리핀은 중재신청을 통해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의 지원을 얻어냈다. 자동 개입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미-필리핀 동맹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도 이와 유사한 동맹조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분쟁에 가지는 의미가 크다.

남중국해에서 다자적 성격을 가지는 영유권 분쟁은, 이 지역에 무수하게 분포하는 섬, 암초, 지형지물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적인 과장을 일으키고 있다. 필리핀은 스카브로우 사주에 중국의 인공구조물 건설을 비판하고 중국은 필리핀의 하이드로카본 탐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해결책을 모색하기 전에 우선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없으면 분쟁당사자 사이의 소모적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를 사실조사와 다양한 섬, 암초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EEZ 설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실조사가 궁극적인 해결로 귀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경제적 활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장기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해결책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예비단계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의 단기적 및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대응해야 한다: 소유에 관한 주권의 문제와 이용에 관한 경제적 권리의 문제. EEZ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소유하지 못하는 국가도 부존 지하자원을 이용하고 개발할 권리는 가지고 있다. EEZ가 겹치는 경우에는 해양경계선 획정에 대한 분쟁은 주권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규정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UNCLOS는 74조와 83조를 통해 최종 협의에 도달하기 전에 임시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주권에 관한 경계획정과 무관하게 어업구역 관리와 환경보호에 대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호혜와 협력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의 문제는 민족주의와 결합되면 문제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경제적이용권은 사업과 경제활동을 통한 상호 이익의 증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과 태협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용권에 대한 태협은 당사국뿐만 아

니라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TPP 회원국의 항행권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다. 중국은 이 지역의 EEZ에서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영토문제에 제기에 대해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일관되게 항해의 자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EEZ에 대한 집중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동일한 대응을 촉발해 무역통행과 군사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발전된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ASEAN의 다자적 행동규범(COC)의 구속력에 의한 해결이다. COC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발전하는 단계에 있으며 ASEAN과 중국이 2013년 9월부터 발효하는데 합의했지만 ASEAN이 중국의 의지에 반하여 이를 추진할 집행력이 없다. 다자주의적 행동규범을 통한 해결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대안은 중립적인 3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를 토대로 민족감정과 결합된 주권의 문제와 경제적 이익과 타협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베트남과 중국의 통친만 경계획정은 성공적인 사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 (9개 단선) 분쟁에 대한 중·비 중재의 절차적 단계의 법적 문제

이어도리포트



Michael
Sheng-Ti Gau
대만 국립해양대학교
교수

2013년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영토와 해양주권에 대하여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UNCLOS(협약)의 287조와 부칙 7조에 근거하여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이는 필리핀이 제출한 통고서(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 NSC)의 조에 나와 있는데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된다.

1. 남중국해에서 “9개 단선”에 기초한 중국의 주장은 UNCLOS와 모순되며 그 래서 효력이 없다.
2. Mischief Reef, McKennan Reef, Gaven Reef, Subi Reef는 만조시 수면아래 가라 앉으므로 협약 121조의 섬이나 암초로서 자격이 없다. 이들은 중국의 대륙붕 내에 있지 않고 Mischief Reef McKennan Reef는 필리핀 대륙붕 내에 있다. 중국의 점령과 건설행위는 불법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3. Scarborogh Shoal, Johnson Reef, Cuareron Reef, Fiery Cross Reef는 암초로 간주되지만 영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소유권이 있다. 중국이 불법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므로, 필리핀 함선의 수산생물자원 채취를 금지하는 중국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4. 필리핀은 12해리 영해권과 200해리 EEZ, 그리고 대륙붕에 대한 권한이 있다. 중국은 불법적으로 이 수역에서 수산생물 및 비생물자원을 채취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채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5. 중국은 필리핀이 EEZ내·외부에서 항행과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간섭해왔다. 중국은 이런 불법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절차의 참여를 거부했는데 UNCLOS에 포함된 강제분쟁해결절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재에 대해 서명 또는 구두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중재재판부는 심리 전에 사법권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과 필리핀은 명시적으로 298조에서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에 대해 부칙 7조를 포함해 15장 1절에 나타난 절차를 수용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이 수용여부의 문제는 사법관할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를 검토할 것이다. 298조 때문에 분쟁 관할권이 없는 만큼,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는 수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출석 불이행과 이에 따른 법정의 의무

출석 불이행 시, 재판소의 중국이 퀘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심리가 반드시 출석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도 자동적으로 관할권이 있고, 사건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재판부는 심사가 절차적 및 내용적 근거에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출석한 당사자에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은 명백한 관할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가 관할권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중재재판부의 관할권이 무한정은 아니다. 관할권은 (1)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에 제한된다, (2) 1절의 상환청구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 존재한다. (3) 관할권은 3절에 나타난 한계와 예외에 따른다. 재판부에 강제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위에서 설명한 (2)번과 (3)번의 조건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 분쟁의 요구조건

재판소가 고려해야 할 것은 (1) 주제가 제출된 분쟁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2) 협상의 기록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주제의 일부였는가, (3) 문제가 된 주제가 법에서 단일의 문제로 다루어졌는가.

분쟁은 법과 사실의 관점에 있어서 불일치, 두 당사자 사의의 법적 관점이나 이의의 갈등으로 규정한다.

1.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지역에 관한 요구의 첫 번째 모음

중국의 권한은 영해, 인접지역, EEZ, 그리고 대륙붕에 관한 것이고 필리핀의 요구는 중국의 소위 말하는 “9개 단선”은 UNCLOS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필리핀이 주장하듯이 중국은 진술서에서 “9개 단선”내의 모든 수역, 모든 해저와 모든 해양 지형물에 대해 주권이 미친다고 주장하지 않고 9개단선에 의해 둘러 쌓인 4개의 섬 지역(동사, 시사, 중상, 그리고 난사)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 수역문제 있어 중국의 주장은 UNCLOS의 적용에 따른 영해, EEZ, 그리고 대륙붕의 지역이다. 이로서 문제가 된 진술의 대상이 되는 난사군도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며 다른 3개 군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남중국해 수역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어떤 분쟁, 갈등 불일치도 없다. 양측은 남중국해의 수역은 UNCLOS에 의해 설정되었고 영해, EEZ, 대륙붕으로 구성된다. 필리핀이 주장하는 첫 번째 요구는 중국이 2009년과 2011년 진술서에서 사실상 주장한 내용에 대한 필리핀의 오해와 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남중국해 수역에 대한 중국의 요구는 소위 말하는 “9개 단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UNCLOS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쟁이 없다. 실질적인 분쟁은 재판부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은 난사, 종사군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관한 것이다.

2. 일부 사주(reefs)의 주권에 대한 두 번째 요구

Mischief Reef, McKennan Reef, Gaven Reef, Subi Reef을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인근수역을 설정하여 필리핀과 다른 국가를 불법적으로 배제하려고 한다고 필리핀은 주장한다. 필리핀은 Mischief Reef, McKennan Reef은 필리핀 대륙붕의 일부인 반면 간조 시 드러나는 이를 사주는 어느 것도 중국의 대륙붕에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이들 4개 사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만을 분리하려고 하지만 산사군도의 일부로 중국이 주장하는 이들 사주 근처에 무수하게 많은 지형지물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대륙붕과 EEZ의 기준이 되기 충분한 크기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필리핀,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들 국가의 점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4개 사주가 중국 대륙붕의 일부인가에 대한 질문은 중국이 이들 섬에서 영토주권을 향유하는가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는 결론지울 수 없다. 이로서 이 사안도 중재재판부의 강제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4개 사주가 중국의 대륙붕에 그리고 중국의 영토주권 아래 있는 다른 섬들에 의해 발생한 중국의 EEZ내에 있다면, 이들 4개 사주가 섬이냐, 암초냐, 간조 시 돌출물이냐를 따지는 것이나 이 사주들이 스스로 해양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부적절한 것이다. 영토주권의 문제와 그에 기초한 수역경계선의 문제는 2006년 중국의 선언에 따라서 중재재판소의 강제사안에서 제외되어 있다.

3. 일본 사주의 암초 지위에 관한 3번째 요구

중국이 12해리 영해 밖에 있는 Scarborough Shoal, Johnson Reef, Cuareron Reef, Fiery Cross Reef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Scarborough Shoal, Johnson Reef 인근 수역에서 필리핀 선박의 생물자원 채취를 불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필리핀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난사군도에 위치하는 이들 암초에 근거해서 영유권이나 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들 사주 이상까지 확대되는 EEZ와 대륙붕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들 지형지물에 대한 섬의 지위를 유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필리핀의 진술과 주장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것으로 해양자원의 채취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남중국해 해양수역에 대한 필리핀의 주장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에 대한 4 번째 요구

UNCLOS에 따른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EEZ에 있어 중국이 불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생물 및 비생물 자원의 이용에 있어 필리핀을 배제한다는 필리

핀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필리핀과 중국의 수역의 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중국이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수역 경계설정에 대한 실질적 분쟁은 난사와 종사군도에 대한 영토주권 분쟁의 결과이다. 필리핀의 주장은 200해리 EEZ와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연안국의 지위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초 위에 있는데 이는 지리적 및 법적 상황에 대한 완전한 그릇된 설정이다.

필리핀 EEZ와 대륙붕에서 중국이 불법적 활동에 대한 주장은 영토주권과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양국의 분쟁을 전제조건으로 결정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불법적으로 필리핀의 해역 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주장을 판결할 수 없다.

5. 항해권에 대한 5번째 주장

필리핀은 주장하는 간섭이 일어난 장소, 간섭의 형태, 그리고 중국의 간섭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특정하지 않았다. 필리핀의 이런 주장은 중국이 연안국가가 아니라는 전제에 근거해있다. 이 문제는 다시 말하건 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해양수역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결정할 수 없다. 해양 수역의 문제는 섬들에 대한 영토주권의 문제에 달려있다. 이 주제는 재판소의 관할권에서 제외된다.

필리핀이 제시한 문제 중 1~4번의 문제에는 양자 사이에 분쟁이 없다. 나머지 문제에서 필리핀의 주장은 분쟁의 본질을 나타나게 할 사안들을 회피하려는 방향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문제를 잘못 규정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제시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분쟁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은 1970년대 필리핀이 UN헌장과 국제법을 어기고 난사군도의 일부 섬과 사주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시작되었다. 수 차례에 걸친 입장표명에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부정하고 있는데 분쟁의 본질을 3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필리핀이 Kalayaan Island Group(KIG)라고 하는 난사군도의 일부에 대한 영토분쟁이다. 중국은 난사군도를 단일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은 KIG를 단일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해 주권을 주장한다.

둘째, 문제가 된 섬이 EEZ와 대륙붕과 같은 해양 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쟁이다. 중국은 난사군도를 하나의 단위로 당연히 기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필리핀은 KIG의 유관한 지형지물에 근처나 인접한 수역에 대해서 주권과 관할권의 행사에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해양경계설정에 분쟁이 있다. 중국은 난사군도 주변에 200해리 EEZ 대륙붕 해양주권 설정에 있어 필리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반면 필리핀은 경계선 분쟁에 침묵으로 중복의 문제를 가리려고 한다.

협정의 1장과 2장아래서 분쟁의 정체성

UNCLOS 286조는 의뢰인에 의해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만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진다. 당사자는 협상과 평화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에 관해서 신속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과 2011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된 설명에 나타나 있듯이 양국의 실제 분쟁은 영토와 해양경계에 관한 것이다. 이들 분쟁은 재판소에 제출된 분쟁과 상당히 다르다. 재판소에 제출된 분쟁과 협상을 진행한 분쟁이 동일하다는 것을 재판소에서 확인하고 필리핀이 입증해야 한다. 연안국가의 영해 밖에 위치하는 간조 시 돌출물에 대한 주권획득의 문제에 관한 협상이 있었는지 필리핀은 입증해야 한다.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의 요구조건

UNCLOS 부칙 2조에는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필리핀이 주장하듯이 양자는 15장에 의한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해결구도에 대한 진행동의를 한 바 있지만 제출된 분쟁이 UNCLOS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이 시각이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관할권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실제 분쟁은 남중국해의 해상지형과 섬에 대한 영토주권과 섬 지형과 필리핀 다도해에 의해 형성된 중복된 해양수역의 경계선 획정에 관한 것이다. 이들 실제 분쟁이 전체 분쟁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재판부에 제출될 수 없다. 제출된 분쟁이 영토주권과 해양경계선 획정문제에 대한 기초 위에 결정될 수 없는 만큼, 이들 문제는 중국의 2006년 선언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에서 배제되었다.

UNCLOS 298조 하의 강제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분쟁

분쟁의 본질은 영토주권과 해양경계선 획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결정 없이 재판부에 제출된 분쟁이 결정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제출된 분쟁보다 핵심 분쟁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분쟁에 있어서 해양경계설정에 관해 15조, 74조, 83조의 해설과 적용, 역사적 만과 권원에 대한 분쟁, 그리고 군사활동과 법 집행 활동에 대한 분쟁을 청취할 관할권이 없다.

비록 남중국에서 중국의 권리가 중국의 주권아래 있는 섬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소위, "9개 단선"에 근거한 권리의 주장이라는 필리핀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해양에 관한 중국의 권리 요구는 중국의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역사적 수역에 대한 주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권원에 대한 분쟁은 재판부의 관할권에서 배제된다.

결론

필리핀 주장의 결함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1, 2, 그리고 8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없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일반적이거나 가정적인 상황에서 상황인식이 틀린 주장이 제기되었다.

2. 재판소에 제출된 분쟁과 실제분쟁이 일치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협상과 다른 평화로운 수단에 따라 해결하고자 했던 분쟁과 실제 분쟁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1장에 따른 당사자에 의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조건을 충족되지 않고 강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진행은 종결된다.
4. 재판부에 제출된 남중국해 분쟁은 UNCLOS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국제법의 자배에 관한 것이다.
5. 해양경계선 획정과 역사적 권리에 대한 분쟁은 재판소의 관할권에서 배제된다.
6. 재판부에 제출된 인위적 분쟁과 실제분쟁은 불리할 수 없고 제출된 분쟁은 실제분쟁을 다루지 않고 결정될 수 없다.



최연홍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30년간 해양 경계선 설정에 관한 분쟁의 대상이었던 바렌츠 해(The Barents Sea)는 의 일부로 170억 배럴의 원유와 5~6조 입방 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바다이다. 1974년부터 양국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시각차이와 타협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40년간 갈등을 지속하다가 2010년 9월 15일 양국이 협상안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분쟁이 해소되었다.

1960년대부터 노르웨이가 제시한 중앙선 원칙을 소련이 거부하고 해안선 연장선 원칙을 주장함으로써 타협이 도출되지 못했다. 2010년에 와서 양국이 분쟁수역을 대등한 크기로 분할하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의 돌파구가 열렸다. 본 조약은 2013년 7월 양국의 의회가 비준함으로써 공시적으로 발효되었다. 협상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에도 해양경계선 분쟁과 별도로 양국은 어업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했고 협상 타결로 해양 유전개발과 환경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해양분쟁 해결 사례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유사한 분쟁관계에 있는 보프터 해(The Beaufort Sea)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분쟁수역인 베링 해(The Bering Sea)에 대한 직접적 자극이 되고 있다.

러시아가 제안한 자오선 원칙이 단순하지만 노르웨이가 제시한 중앙선의 원칙이 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유럽국가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납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원칙이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분쟁수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영유권 갈등에 있어서는 태고부터 근접원칙과 등거리원칙이 가장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상식적인 원칙이라는 점은 유엔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1940년부터 1993년까지 134건의 양자간 경계협정에 103건(89%)이 등거리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있어 한국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해양법과 해양법재판소의 결정도 분쟁수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어떤 명확한 법적 근거는 물론 용어에 있어서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EEZ 설정에 200해리 원칙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리적 및 지형학적 요인들은 200해리보다 면 거리에서만 유효하다. UNCLOS가 거리만을 근거로 원칙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은 EEZ의 수평 범위가 대륙붕 200해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위의 원칙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강해 준다. 따라서 연안 지방의 거리가 400해리가 넘지 않는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연장, 자연연장선 원칙, 인구크기, 그리고 해안선길이의 원칙은 근거가 취약하다.

중국은 한국이 1995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시작하자 이에 항의하고 건설이 완료된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침묵하다가 이어도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어도가 한국의 EEZ이내에 있고 중국의 어떤 지점과의 거리보다 마라도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원을 확고히 하는 방안으로 해양법 121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의 거주나 경제적 생활을 영유할 수 없는 암초는 인공적 또는 조작된 인간 정주지가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는 육지나 섬에 귀속되어야 한다.

“과학적 논거가 곧 해양경쟁력”

지난 7일 제주에서는 특별한 의미의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지역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을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열린 것.

박경철 국립해양조사원장과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 해양 관련 권위자들과 해양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총집결했다.

특이한 점은 아시아 해양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의 지식인들도 함께했다는 데 있다. 르 뤄이뤼이 베트남 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해양국장, 장즈이 중국 우한대 로스쿨 교수, 렌칭위 대만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동아시아 해양갈등을 두고 가장 민감한 경계를 달리고 있는 국가의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인 것이다.

이들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중국을 둘러싼 해양갈등의 현실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의미를 지닌 학술의 장인 셈이다.

〈제주의소리〉는 이번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포럼과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어도연구회의 고충석 이사장을 직접 만났다. 이어도라는 암초에 한국 순수 기술로 과학기지가 세워진 지 10년, 그리고 관련 의제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세번째 학술 세미나가 열린 7일 이 중심에 서 있는 고 이사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동아시아 해양 갈등과 관련해 이어도과학기지가 이 부근이 한국 수역임을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논거가 되다고 말하면서 이어도기지가 앞으로 동아시아 바다 일대를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다 올해로 딱 10년이 됐다. 지난 10년, 이어도 연구회가 보기엔 어떤 시간들이었나

"최근에 들어서 해양갈등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어도기지를 동중국해에 평화의 도구로 좀 앞으로 써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거기서 수온, 어족자원의 변화, 태풍관련 정보 등 생산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일본, 중국, 우리나라 공동으로 활용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어도기지가 동중국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본다.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 경계획정에 있어서 이어도기지가 하나의 큰 압력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을 둘러싼 해양갈등도 심화됐지만 해양과학기지가 10주년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논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했다"

- 10주년이라면 자못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10년간의 세월, 이어도연구회에서 보기엔 어떤 시간들이었나

"사실 지난 10년은 중국의 경제적 기지개가 활짝 펴지 못할 때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내정에 관심을 두고 외치에 관심을 둘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가 해양과학기지를 만든 거다.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활용이 생각만큼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해양과학기지를 잘 활용해서 여기 동중국해를 확실한 평화의 바다로 구축하는데 확실한 지렛대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려면 이어도기지를 통해 일본과 중국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한국이 가

교 역할을 해야한다. 무조건 ‘만나자’ 하는 것보다 해양과학기지를 활용 해서 우리 동중국해에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도록 할 거냐, 그러한 명분으로 과학기지를 잘 선용해야 한다”

- 이어도기지와 관련된 화두는 단연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아직도 확실한 경계가 수립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분쟁이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 만든 셈이다. 앞으로 분쟁이 생길 때 한국입장에서는 기득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주장을 펼치지는 데 이어도 과학기지가 중요한 구실이 될 수 있고, 명분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어도 주변해역이 우리나라 면적 남한 면적의 60%나 된다. 여기에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다. 유엔해양법의 여러 원칙이나 기조를 존중해서 우리는 중간선으로 그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그들이 인구도 많고 해안선 길이도 길고 이어도 해역이 중국 대륙붕 선상에 있다고 말한다.

오늘 이 세미나에도 중국 학자를 불러들었다. 앞으로 많이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하고, 과학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어도 관할 해역은 중간선 원칙을 존중해라, 우리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는 것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분쟁을 막을 수 있는거라고 본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런 세미나도 의미가 있는 거다”

- 가장 흥미로운 점이 이번 세미나에 중국, 대만, 필리핀 학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나라는 남중국해를 두고 가장 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가?

“중국이 바다를 접한 나라가 14개국인데, 이 국가들과 다 해양 분쟁을 겪고 있다. 이게 다 중국 해양패권주의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이 나라들,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학자들이 자기 나라 주장을 하는 거다. 중국 학자를 부른 건 ‘너희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는 차원이다. 남중국해가 이어도

보다 더 해양갈등의 중심에 있다.

불과 몇년 전 난사군도를 둘러싸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갔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베트남, 우리나라, 필리핀 지식인들을 초청해 중국의 패권주의가 옳지 않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미도 있다”

-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을 때 그래도 좀 이어도연구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인가

“지난 해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이 첨예화 된적이 있다. 이 때 이어도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다. 이어도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다. 당시 중국의 부당함을 알리는 스무 번이 넘는 인터뷰를 했다. 이어도를 둘러싸서 중국과 첨예한 논쟁이 있을 때 논거가 중요하다. 해양 갈등을 해결하려면 ‘당신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 쪽에서 당신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 논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어도연구회가 논거를 주장하고 펼치는데 소박하나마 펼치는 데 기여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 열 돌을 맞은 이어도기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이젠 이어도과학기지를 학자들이 많이 활용할거다. 이어도기지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국제 학술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양분쟁이 있을 때 이어도 주변해역이 한국의 바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축적해 나갈 것이다. 이어도가 그만큼 대한민국에선 중요한 곳이다. 이어도의 상징적 가치와 존재가치를 전국민에게 알리려고 교사와 대학생, 전문직종 종사자들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 아직도 이어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어도의 가치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준다면

“이어도가 제주도 구비문학 속에는 제주사람들의 하나의 이상향으로 그려지고 있다. 살아서는 갈 수 없고 죽어서는 만복을 누리는 영원한 고향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이어도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의 실질적인 이어도가 눈 앞에 나타났다고 본다.

우리나라 유조선의 100%가 그 이어도 해역을 지난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항로란 말이다. 저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중요 항로이기도 하다. 이어도 주변 해역에 엄청난 광물자원 등이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또 풍부한 어족자원이 서식하고 있다.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해역이다. 그래서 중국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국민적 차원의 운동이나 학술활동은 단기간에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 이어도와 제주도는 뗄 수 없는 것 같다.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어도는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부터 먼저 이어도를 지키는 운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또 이어도에 관한 연구가 제주에서부터 먼저 발현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보다 제주사람이 이어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준영 기자

『제주의소리』, 2013년 11월 8일자



이어도 역사/문화 에세이

한반도와 해양세력(II)

한반도와 해양세력(II)



부 영 주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전 제주일보 편집국장

1. ‘정낭’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해양왕국

지난번에는 ‘땅에서 솟아난 사람들’(삼성혈 地中湧出)과 바다를 건너온 여인들(혼인지 三公主 渡來) 이야기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다.

그 지중용출과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과 혼인이 제주도에서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규슈, 오끼나와, 대만,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고대 동아시아 해상세력의 거점이었음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은 사람들이었음을 생각해 보았다.

자,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정낭’이라고 부르는 제주의 대문이 중국 절강성 지역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산간지역, 스리랑카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낭이라고 부르는 제주의 대문과 이곳들의 대문은 모양은 물론 심지어 기호학적 의미까지도 완전히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어떻게 우리나라 제주의 문화가 중국 절강성과 베트남을 넘어 5,000km가 넘게 떨어진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인가?

힌트는 바로 이 지역들의 공통점. 이곳들은 역시 모두 과거에 활발한 무역 활동을 펼쳤던 고대 해상세력의 거점이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역사 기록에는 거의 그 실체가 나타나있지 않지만 10세기경까지 탐라는 하나의 독립국가 형태로 존재했다. 여러 중국과 일본 기록에도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맺었던 기록들이 있다. 우리측 사료인 동문선(東文選)에는 고려시대 제주사람 고유가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시험 부문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과(賓貢科)였다. 고려시대까지 탐라는 한반도 쪽에서 볼 때 외국이었다는 얘기다.

제주도에서 상당한 양의 중국의 고대 화폐가 발굴됐다. 1928년 8월에 제주시 건입동 산지항 방파제 축조 공사장에서 동검(銅劍), 석부(石斧) 등과 함께 고대 중국의 화폐들이 출토됐다. 이 화폐들은 화천(貨泉) 11매, 오수전(五銖錢) 4매, 대천오십(大泉五十) 2매, 화포(貨布) 1매 등이다.

화천은 지름이 약 2.3cm이며 네모난 구멍의 테두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貨泉’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찍힌 것도 있다. 오수전은 지름이 약 2.5cm로 뒷면에 무늬가 없다. 대천오십은 지름이 약 2.7cm이고 화포는 길이 5.8cm, 너비 2.3cm이다.

이 화폐들은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실제 중국에서 유통된 것으로 이 시기에 벌써 탐라와 중국과 교역이 있었음을 보여준다.¹⁾

이외에도 제주도에는 탐라시대 해양 지리적 잇점을 이용해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했던 흔적이 무수히 많다. 제주시 해안 일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용담동 제사유적지에서는 날씨가 좋은 때는 한반도 남해안 탐진(耽津)지역의 섬들이 보인다. 이 용담동 유적지에서는 금동제 허리띠 장식을 비롯해 중국에서 아주 귀중한 월주산 청자 그릇, 또 한반도에서 온 고급 질그릇 등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용담동에서는 철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발굴됐는데, 이 무덤주인의 허리 부분에서 2개의 철장검과 1개의 철 단검이 있었고, 발 아래에는 도끼와 각종 철제 무기들이 놓여있었다. 또 목에는 유리구슬이 발견됐다. 이 유리구슬은 철제 무기와 함께 무덤의 주인이 당시 상당히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한다. 더욱이 철제 장검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

1) 이 화폐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오수전이다. 오수전은 이 시기에 중국은 물론이고 한반도, 일본 열도 오끼나와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제교역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이곳 대평리는 옛 지명이 '당포'로서 중국과 교역을 했던 포구라고 전해진다.

다. 철이 생산되지 않는 제주도에서 당시 1m가 넘는 양쪽 날을 가진 이 장검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단서는 함께 발견된 철제 도끼에 있다. 부채꼴 모양의 정교한 이 철제 손도끼는 한반도 북부여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주도는 이미 기원전에도 현재의 중국 북부 만주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기만(京畿灣)을 통과해서 남부를 거쳐서 일본열도(日本列島)로 이어지는 그런 해상로상의 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서남부에 위치한 안덕면 대평리에 가면 흥미로운 사실과 접할 수 있다. 지금도 기상이 악화되면 수시적으로 중국배가 이 마을 포구 근처에 정박한다. 이 대평리의 옛 이름은 당나라와 교역했던 포구라해서 당포(唐浦)이다. 또 표선리에도 당포라고 불리는 포구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탐라가 동아시아 중앙해양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점으로 자연스럽게 남방의 문화와 북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다른 나라들과 활발한 교역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 한국 청해진과 중국 양저우(楊州) 명주(明州) 사이의 항로로 익히 알려진 사단로(斜斷路 6~7세기)가 개척되기 이전 기원전에서 1~3세기경에도 이미 만주지역과 연결되고, 중국과 탐라

(耽羅)를 오가는 무역선들의 항해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²⁾

그런데 조공을 바쳤던 탐라국이 어느 시기부터인가 조공을 끊어버렸고, 그 러자 처음 교섭을 한 때로부터 20여년 후에 동성왕이 군사를 몰고 지금의 광주에 해당하는 무진주(武珍州 현재 광주)까지 내려가자, 탐라에서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이다.³⁾

해양문화가 가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이동성과 가변성이다. 국제관계를 그 당시에 시의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해양세력들의 특징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탐라가 이 시기 백제에 완전히 복속된 것은 아니라 이를테면 신라와 가야와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열도와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고구려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많다.⁴⁾

위서(魏書)에 보게 되면 이 때 탐라와 백제에 대해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고구려 문자명왕(文咨明王) 13년(504년), 고구려는 예실불(芮悉弗)이라는 사신을 보내서 위나라에 보내 일종의 변명을 한다. 조공물을 바치지 못하는 변명인데 하나는 부여에서 나는 황금이고 또 하나는 섭라(涉羅=탐라)에서 나는 가(珂)라는 보물에 관한 얘기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황금은 오직 부여에서만 나는데 부여가 물길(勿吉=女眞)에게 그만 쫓겨났고, '가'는 오직 섭라에서 생산되는데 섭라는 백제에 합병되었다는 얘기다.

섭라의 특산품이라고 소개된 가(珂)라는 것은 전복 진주를 말한다. 그러니 까 그 동안에는 탐라의 전복 진주가 해상 교류를 통해서 고구려와 거래되었는데 탐라가 백제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거래가 끊겨서 고구려는 더

2) 탐라(耽羅)가 우리 문헌 사료에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5세기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476년 백제 문주왕 2년 여름 4월, 탐라국 사자가 와서 방물을 바치므로 왕은 크게 기뻐하여 그 사신을 은솔(恩率)로 임명하였다. 우리 사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주도에 관련된 기록이다. 여러 주장이 있으나 어쨌든 이때를 전후해서 백제가 제주도에 살던 세력과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전의 제주도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3)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20년(498)기록이다. 그런데 이 기록에 나오는 탐라는 제주도가 아니라 강진과 해남에 근거를 두고 있던 별도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4) 이청규 영남대교수는 탐라와 백제는 대국과 소국의 관계이지 소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국사기 어디에도 백제의 속국이라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 확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못 가져왔다, 이런 얘기다.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고구려는 당시 탐라와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랬을 경우 이것은 고구려의 사신이 제주도에 왔거나 아니면 제주도의 사신이 고구려에 갔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탐라와 고구려 사이에서 활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시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볼 때 제주도가 자신의 독립성을 보존하기 하기 위해서 면 거리에 있는 고구려와 나름대로 우호관계를 맺을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백제 동성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탐라에 대한 영향권을 강화시키려는 군사적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고구려는 다시 탐라를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백제 역시 탐라를 자기 영향권 내에 넣으려고 했을 것이다.

물론 탐라에도 고구려 계통과 백제 계통 등 여러 갈래의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⁵⁾

그런 이유 때문에 백제의 동성왕이 군사를 이끌고 무진주까지 공갈시위를 했고, 탐라에서는 부랴부랴 사신을 보내 정치적인 항복을 해왔다, 이런 얘기다. 고. 양. 부 3씨족의 나라이 탐라는 이때 백제에 예속된다. 그 후, 백제 위덕왕(威德王) 36년, 서기로는 586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수(隋)나라의 한 전선(戰船)이 진나라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탐모라국으로 표류하여 이르렀다가 그 배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백제왕은 이를 도와 매우 후하게 대접하고, 아울러 사신을 보내 진나라를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그러자 수나라 고조(高祖)는 이에 대해 감사하다는 조서를 내린다.

5)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탐라국은 북방으로부터 민족 이동기에 북방지역에서 권력투쟁에 패배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남방으로 계속 이동해 오면서 소국을 만들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고대 소국이라면서 고. 양. 부 3성씨는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백제의 시조 비류, 온조와 비슷한 경우로 보았다. 그 증거로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라고 하는 삼성신화의 세 신인의 명칭 '을나'는 북방 맥족이 사용하던 용어로 부여, 고구려 여진의 왕, 족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2. 탐라 백제, 百家의 濟海시대를 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사에서 해양왕국 백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그냥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하나하나 밝혀지는 해양사를 통해 백제, 그리고 탐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정신의 지평을 넓히고 활발한 개척정신과 해양민족의 면모를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백제는 고대 동아시아 제국들과 바닷길을 통한 끊임없는 교류와 소통을 했던 ‘해양제국’ 이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백가제해(百家濟海)’에서 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백가제해(百家濟海)를 주몽의 후손이 “백가(百家)가 바다(海)를 건너왔다(濟).”라고 해석을 하여 고구려에서 바다를 건너와 나라를 세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100개의 해양세력 부족들이 연합해 해양은 제패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백제는 그 국호안에 해양국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백제가 존속하는 내내 동아시아 바다 뱃길을 따라 해외영토를 개척한 나라였다고 한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

“백가(百家)가 제수(濟水, 강 이름)와 해(海, 황하 또는 산동성 동남쪽의 東海 지명)에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여 백가제해(百家濟海)라고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백제는 래이(萊夷)였고 마한(馬韓)의 종족이며 래이와 마한은 지금의 산동성과 산서성 하북성 인근에 걸쳐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백제왕에게 봉해졌던 동청주자사(東青州刺史)라는 직위가 가능하며 백제의 중국 요서 경략과 대방군에 관한 설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백제 ‘온조’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⁶⁾ 백제의 시조를 다른 이로 기록한 중국 사서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우리 측 사서인 삼국

6) 김용운 단국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의 고대국가명이 모두 이두 표시지만 가라어의 이름(이두)였다. 그러나 유독 백제만은 처음부터 한자이다. 그 유래는 十에서 百濟로 성장했다거나(삼국사기), 또는 ‘백가제해’(隋書) 등 여러 설이 있는데, 사실은 ‘온조’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온’은 가라어의 ‘백’이며 ‘온조-백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비류와 온조가 출본에서 내려와서 백제를 세운 것으로 설정하고 상상력을 펼쳐보도록 하자.

비류, 온조가 소서노와 함께 첫 출발한 지역은 출본부여다. 출본부여의 위치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남만주 일대인 건 틀림없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경기만 지역으로 진입하는 길은 육로길과 바닷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볼 때 육로길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라나면 이미 압록강이남부터 현재의 평양지역 그리고 경기만 지역까지는 강력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로를 따라 내려왔을 것이다.

그들이 해로를 통해 이동해 왔다면 아마도 압록강 하구를 출발해서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연근해 항로를 따라 내려왔을 것이다. 평안도 윈편의 서한만을 지난 다음, 황해도의 장산곶을 돌아서 경기만을 통해 한강 하류 쪽으로 들어와 상륙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기원전 18년 당시에 압록강 하구에서 경기만 까지, 그것도 대규모 주민들이 바닷길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일찍이 현재의 발해만 그 다음에 요동만, 압록강 하구 경기만을 거쳐서 탐라를 거쳐 일본열도까지 가는 항로가 있었다. 특히 한 4,5천 년 전에는 경기만과 산동반도 경기만과 압록강 하구, 경기만과 요동만은 이미 항로가 개설돼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고조선의 마지막왕인 ‘준’은 바다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런 사실은 당시 항로가 개설이 돼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교역이라든가 심지어는 정치적 집단의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⁷⁾

우리가 백제 건국과정을 삼국사기로 소개했던 것처럼 비류는 지금의 인천

7) 삼국지위서동이전 한(韓)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조선의 준왕(準王)은 위만을 믿고 사랑하여 박사에 임명하고 백 리의 땅을 봉해주며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으나 위만이 변심하여 준을 공격하자 준은 근신과 궁인들을 데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경유하여 한(韓)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 여기서 고조선의 준왕이 신하들과 궁인들을 데리고 건너왔다는 한(韓)의 지역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체로 당시 금마(金馬)라고 불리던,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준왕은 요동에서 한반도의 익산에 이르는 먼 거리를 신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했다는 얘기가 된다. 고조선 시기에 이미 그런 장거리 항해를 했을 바에, 비류와 온조가 기원전 18년 무렵에 출본에서 경기만까지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에 해당하는 미추홀에, 그리고 온조는 서울지역의 하남위례성에 본거지를 정하고 각각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마한에는 50개가 넘는 소국들이 여기저기 분포돼 있었다. 초기의 비류세력과 온조세력 역시 그런 소국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⁸⁾

어쨌든 초기에 인천과 서울지역으로 서로 갈라져서 조그만 나루국가로 출발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로 합치면서 나라 이름도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고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돌입하게 된다.

온조왕 43년 가을 8월에 왕은 아산의 언덕에서 닷새 동안 사냥하였다. 삼국사기 온조왕대의 기록으로 올라 있는 내용 모두가 실제로 온조왕 때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백제의 왕이, 변방의 바닷가인 충청도 아산까지 내려가서 닷새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다.

지금도 아산지역은 중국과 교역에 중요한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산은 현재 평택과 충청도를 사이에 둔 만(灣)이다. 아산만 바깥으로 나가면 덕적군도라는 군도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덕적군도는 이를테면 경기만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전라도로 갈 때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중국의 산동반도와 경기만을 연결할 때 꼭 거칠 수밖에 없는 곳이 덕적군도다. 뿐만 아니라 덕적군도는 단순한 몇 개의 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⁹⁾

8) 동국대 윤명철 교수는 이 소국들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비슷한 형태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비류와 온조가 세운 것은 일종의 초기에는 도시국가형태였다. 비류는 바닷가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일테면 해양폴리스 해양도시국가 성격이 있었다. 그리고 온조가 세운 백제는 한강을 거스르는 한강 하구에 있었기 때문에 강 하구에 건설하는 하항(河港) 도시국가라고 볼 수가 있다. 서양사 또는 지중해의 예를 놓고 보면,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하항 도시국가에 해당이 되고, 아테네라든가 미케네(Mycenae)같은 경우는 바닷가와 좀 떨어져 있지만 역시 바닷가 항구를 활용한 해양도시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사서에는 마한에 54개 소국들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하천의 나루터, 즉 하항(河港)을 본거지로 삼거나, 혹은 바닷가의 나루터인 해항(海港)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일종의 도시 국가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소국들을 ‘나루국가’라고 칭하고 있다.

9) 훗날 백제의 멸망을 불러온 당나라 소정방의 13만 대군이 백제를 향해서 진격해오다가 신라의 수군과 만났던 곳이 바로 덕적도였다. 그리고 덕적도가 포함된 덕적군도를 향해서 나가는 뱃길의 출발지가 바로 아산만이었다.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일찌감치 아산지역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경기만 전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산지역을 병합했던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가 싸웠던 대부분의 전쟁이 바로 이 경기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만은 충청남도 태안반도와 황해도 옹진반도 사이에 있다. 만의 입구는 서쪽으로 여려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가 528km에 달한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만(灣) 안에 남양만, 아산만, 해주만 등의 부속 만들이 있으며 강화도 영종도 영흥도 용호도 덕적군도 등의 크고 작은 섬들이 130여 개나 있다. 한강을 비롯하여 예성강 임진강 등 큰 하천이 흘러들며 이들 부근에는 김포평야 연백평야 등이 전개되어 있다. 예로부터 해상교통과 무역이 발달했던 지리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백제가 초기에 경기만의 부속만인 아산만을 장악한 것은, 대륙진출의 거점인 덕적군도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백제가 해양활동에 관심이 지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은 또 있다. 고이왕(古爾王)3년 10월에 왕이 서해의 대도(大島)로 사냥을 나갔는데 왕이 손수 사슴 40마리를 쏘아 맞혔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이 기록을 두고 여기 등장하는 ‘서해의 큰 섬’이 인천 앞의 영종도라는 설, 그리고 남양반도 바깥에 있는 덕적도라는 설이 있기도 하나, 대체로 강화도일 가능성이 크다. 고이왕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바다를 건너 하필 섬으로 사냥을 갔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곳이 ‘한강하구와 경기만의 핵심지역’이라는 해양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백제는 중국대륙과 실제로 바다를 건너 오가면서 교류를 했을까? 실제로 중국 측 사서인 진서(晉書)를 보면, 3세기 말경에 백제 고이왕과 책계왕(責稽王)이 진나라, 즉 서진에 몇 차례 사신을 보내서 토산물을 교환한 것으로 돼 있고, 봉촌토성과 풍납토성 발굴 결과 그 시기에 서진으로부터 들여온 유물들이 출토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서진(西晉)의 왕조가 멸망하고 중국대륙에서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과 동진(東晉)의 시대가 열리면서 치열한 세력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특히 근초고왕(近肖古王) 이후에 현재 황해를 건너 서 중국 측과 교섭을 했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한족의 서진(西晉)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서진이라는 다시 오호십육국시대가 되면서 남쪽으로 도망가서 현재의 남경지방에다 수도를 둔 동진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동진(東晉) 수도가 남경이라 할지라도 활동범위는 산동반도(山東半島) 지역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근

초고왕 때 서진과 그 뒤를 이어 국제관계를 맺어야지만 고구려와의 경쟁에서 나름대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역의 여러 가지 이점을 찾을 수가 있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경쟁은 우선 경기만을 통한 국제항로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어진다.

서기 371년 겨울 근초고왕은 날쌘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킴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게 된다. 근초고왕 이전에는 주로 경기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북쪽의 대방과 연합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고구려와 경쟁을 벌이고 남쪽으로는 마한의 기타소국들과 경쟁을 벌이는 수준이었는데 근초고왕 시대가 되면서 말 그대로 경기만의 북부지역을 놓고 남진하는 고구려의 고국원왕 세력과 격돌을 벌이고 그 격돌과정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면서 경기만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여기서 경기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즉 경기만을 통해서 황해북부에서부터 한반도 남부, 제주도를 거쳐 일본열도로 이어지는 국제항로의 길목을 장악했다는 의미가 있다.

백제는 뛰어난 정복 군주인 근초고왕을 만나서 드디어 고구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경기만을 확실하게 장악함으로써 중국대륙으로 거침없이 진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백제의 중국 遼西 경략설

이 무렵을 전후해서 해양왕국 백제가 중국 요서(遼西)지방의 일정 영역을 정복하여 다스렸다는, 한국사 최대의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인 ‘백제의 요서 경략설’이 나온다.

구당서(舊唐書) 백제전(百濟傳)에는 백제의 강역에 대하여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월주(越州)에 이른다.”고 설명하여 양자강 연안 옛 오월(吳越)의 영토가 백제의 국토였음을 밝히고 있다. 주서(周書)와 북사(北史) 백제전에도 진대(晉代)에 백제가 양자강 좌우 오월(吳越)의 땅을 통치하여 송(宋), 제(齊), 양(梁) 시대까지 약 250년간 계속 지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삼국사기 최

치원열전에는 백제가 전성기 때에 백만의 강병을 양성하여 남쪽으로 오(吳), 월(越), 북쪽으로 유(幽), 연(燕), 제(齊), 노(魯) 지역을 장악했다고 한다. 거기 에다 양서(梁書)의 백제전에는 요서(遼西), 진평(晉平) 등 화북지방에 백제군(百濟郡)이 설치되어 수(隨)가 중원대륙을 통일할 때까지 백제의 영역으로 다스려졌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 두 백제군(百濟郡)은 유성(柳城)과 북평(北平) 사이라고 통전(通典) 백제전(百濟傳)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에 의하면 246년에 위(魏)의 유주 자사(幽州刺史) 관구검(管丘儉)이 낙랑태수(樂浪太守)와 대방태수(帶方太守)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하여 하자 고이왕이 좌장(左將) 진충(眞忠)을 파견하여 요동지방에서 낙랑군(樂浪郡) 일부를 점령하도록 하고, 분서왕(汾西王)은 낙랑서현(樂浪西縣)을 차지했으며, 채계왕은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대방을 돋기 위해 지원군을 보냈다. 비류왕(比流王)은 요서(遼西)와 진평(晉平) 두 군(郡)을 차지하였고, 근초고왕(近肖古王)과 근구수왕(近仇首王)대에는 본격적으로 요서(遼西), 진평(晉平)을 비롯해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등지를 공략하여 넓은 영토를 장만하였다.

동성왕(東城王)은 남제(南齊)와 외교관계를 맺어 중원대륙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힘썼으며 488년에 북위(北魏)가 군사를 일으켜 중원대륙의 백제군(百濟郡)을 침범하자 저근(姐瑾), 양무(楊茂) 등의 장수들과 더불어 군대를 이끌고 친정, 북위의 침략군을 격퇴시켰다.

이에 북위(北魏)의 황제 고조는 489년 8월 남제(南齊)의 국왕 세조에게 특사인 형산(邢產)과 후영소(候靈紹)를 보내 화평관계를 맺고 남제와 백제간의 동맹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세조가 친위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마침내 하북성 지구의 백제군(百濟郡)을 무너뜨리기 위해 490년 수십만 대군을 동원하여 백제를 향한 재공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동성왕(東城王)은 사법명(沙法名), 찬수류(贊首流), 해례곤(解禮昆), 목간나(木干那) 네명의 장수들에게 병력을 안겨 응전토록 하니 북위의 10만 기병은 백제군과의 일전에서 완패, 거의 전멸당하고 말았다.

이때 전공을 세운 사법명(沙法名)을 포함한 장수 4명에게는 각각 매라왕(邁羅王), 벽중왕(辟中王), 불중후(弗中候), 면중후(面中候) 등으로 봉했다는 남

제서(南齊書) 백제전(百濟傳)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중원대륙에 백제의 식민지가 오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백제도 중원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왕이나 제후를 봉하여 대륙 식민지를 분할, 통치하는 봉건제를 실시했던 거대왕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한강변에서 포구를 중심으로 소국으로 출발했던 백제는, 한강하구와 경기만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해양강국으로 발전한 것이다.¹¹⁾ 그러나 서해바다를 장악해서 백제가 고구려에 우위를 지키던 상황은 광개토대왕의 질풍같은

10) 이 때의 중원대륙의 식민지를 백제의 담으로 설명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11) 백제의 해외진출 문제는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러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신체호나 정인보 등의 민족 사학자들에 의해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선조들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역사의 실례로써 고구려의 중원진출 문제와 함께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민족주의자들의 견해는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저항을 받았고 심지어 현재 우리나라의 학자들조차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이가 많다. 그 부정설과 긍정설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설

아직까지 요서 진출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는 일본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사료의 요서점유 시기인 진(晉)나라 말기는 모용씨의 후연이 북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시기였고, 당시 백제의 상황 또한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항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백제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던 남조계 사서의 기록은 오기 또는 오전으로 보고 근본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학자 중심의 이러한 주장은 광개토왕릉 비문을 근거로 4C말 ~ 5C의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구려와 왜의 대결구도로 보려는 일본학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측 기록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2. 긍정설

고구려가 요동을 침략하여 점령하자 백제 역시 요서를 침략하여 점령했는데, 백제가 점령한 지역은 진평군, 진평현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정사인 송서(宋書)에 이렇게 기록돼 있을 뿐 아니라 남제서와 양서 그리고 통전 등에도 백제의 요서진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와 백제가 쟁폐전을 단순히 육지 국경선에서의 충돌로 보기도 하지만, 해양질서라든가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원거리로 이동해서 제3의 지역에서 서로 전투를 벌인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배후를 압박하기 위해서 거점을 확보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시 요하를 넘어가서 서쪽지역에 백제가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면서 고구려의 배후를 압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백제의 요서진출설의 당위성이 있다.

백제가 중국대륙의 요서로 진출했다면 당연히 바닷길로 갔을 터인데, 백제 본국에서 까마득히 먼 요서의 해안지방까지 가서, 그 곳의 일정지역을 장악하여 다스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해양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있는 고구려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오히려 직접 요동 지방 또는 요서지방에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백제로 봐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수월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장기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요서, 진평 이래서 양군을 설치하고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지배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면 당시 고구려도 이미 요동을 넘어가는 전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5호16국 시대라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강력한 정치세력들이 준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남침에 의해 일거에 역전이 돼 버린다. 21대 개로왕이 즉위하면서 서서히 국력을 회복하고 있었으나 고구려에 해상권을 빼앗긴 탓으로 중국과의 사신왕래마저 여의치 않았다. 이 당시 중국은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 있었고 요동지방은 북방종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탐라, 그리고 일본열도의 왜국은 중국지역과 교섭하려면 모두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백제나 신라, 가야, 탐라, 왜 등은 고구려의 방해 때문에 북조 국가와는 교섭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4. 백제와 탐라의 일본열도 교류

다음으로 백제의 일본 열도 분국(分國) 통치설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백제가 해상강국으로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것은 근초고왕(近肖古王) 때로서 그는 담대한 정복군주(征服君主)다운 기질을 발휘하여 왜지(倭地)를 비롯한 해외의 전략적 요충지를 개척, 경락했는데, 왜지(倭地)에서 가야국(伽倻國)의 분국(分國)인 암마토[大和] 정권이 신공왕후(神功王后) 사후 봉고되어 분열상태에 있을 때인 366년에 태자인 귀수(貴首)가 왜(倭) 후왕(侯王)으로서 일본 열도를 직할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우리측 연구자들은 당시 일본 열도가 백제의 분국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등에는 근초고왕이 천희대신(天熙大神), 송고대왕(棟古大王), 천대언(天帶彦)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의자왕(義慈王)의 아들 부여용(夫餘勇)이 천지왕(天智王)으로 등극한 이후 일본(日本)으로 국호를 고칠 때까지 약 300여년간 백제가 왜지(倭地)를 통치, 경영한 것이고, 백제 멸망을 계기로 백제 출신의 왜인들은 국호를 일본으로 고쳐 왜국 경영을 계속했다는 것이다.¹²⁾

12) 최재석(崔在錫)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도 이와 관련해 일본서기(日本書紀)와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의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일본 국왕은 백제 계열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백제에 의한 왜(倭) 침략 통치는 근초고왕에 이어 근구수왕(近仇首王), 침류왕(沈流王), 진사왕(辰斯王) 대까지 약 26년간 존속했는데, 아신왕(阿辛王) 때에는 왜지(倭地)에 비류의 후손인 아라가야의 국왕 아라사 등(阿羅斯等)의 아들 응신왕(應神王)이 암마토 정권을 세워 백제로부터 분립하여 5대왕 87년간 계속된다. 응신조(應神朝)의 왕권은 그 동생 진(珍) 왕가로 교체되었다. 응신왕이 즉위하기 전후의 백제와 일본의 사정은 만주 집안현에 있는 영락기공비(榮樂紀功碑)의 신묘년조(辛卯年條) 기사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응신왕은 아신왕이 즉위하는데 협력하였다.

일본서기에는 백제 침류왕이 죽고 난 뒤 태자인 아화(阿花)가 연소하므로 진사왕이 대신 즉위하자 기각숙이(紀角宿邇) 등이 백제로 가서 그 무례함을 꾸짖었고 백제국이 진사왕을 죽이고 사죄했으며 기각숙이 등은 아화를 국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 진사왕조(辰斯王條)를 보면 국왕이 신묘년 전년에는 구원(狗原)에서 사냥을 하였고, 신묘년에는 국서대도(國西大島)에서 친히 사냥을 하였으며, 다음해에는 구원(狗原)에 사냥 행궁했다고 하므로 아신왕과 응신왕의 연합군에게 패사(敗死)한 것으로 보여 앞의 기사와 일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아신왕이 백제 국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아신왕(阿辛王)에 앞서 근구수왕(近仇首王)의 명을 받고 장남 무내숙미(武內宿彌)가 서기 369년 지배권의 상징인 형칠지도(兄七支刀)를 가지고 왜(倭)의 후왕(侯王)에 부임하여 응신왕(應神王)과 함께 가야지역에서 백제에 전단(戰端)을 벌이자 근구수왕은 둘째아들 비류왕(比流王; 서기에는 天律彥根命)을 보내 이를 제압했으며 침류왕(沈流王)은 371년 제칠지도(弟七支刀)를 가지고 왜의 후왕에 부임했다. 75cm인 형칠지도는 지금 일본의 천리시(天理市) 석상신궁(石上神宮)에 보관되어 있는데 일제가 글자를 조작하여 한반도 침략의



칠지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곡나산(谷那山) 백련철(百練鐵)로 만든 이 칠지도(七支刀)는 고대 한일관계사(韓日關係史)를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유물이다.¹³⁾

옹신왕(應神王) 계열인 백제의 동성왕(東城王)은 삼근왕(三斤王)과 대화(大和) 무왕(武王)의 뒤를 이어 백제와 왜(倭)의 통합왕국인 아스카시대[飛鳥時代]를 열어 온조(溫祚) 계열인 무령왕(武寧王)에게 이어주고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82년간 왜지(倭地)를 통치하고 경영했다.

무령왕은 왜지(倭地)에다 백제의 동조(東朝)를 두고 경영했고 각라도(各羅島)라는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마(斯麻)라 했는데, 이는 1971년 공주에서 발굴된 무령왕릉(武寧王陵) 석관(石棺)에서 입증되었다. 무령왕의 딸 수백향(手白香)이 왜국의 계체왕(繼體王)에게 시집을 가서 흠험왕(欽明王)을 낳으니 계체왕(繼體王)으로부터 승준왕(崇峻王)까지 5대 120년간 무령왕의 사위와 외손이 왕위에 올랐다.¹⁴⁾

이와 같은 백제와 왜국의 직접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일본 국왕인 아키히토왕(明仁王)이다. 그는 2001년 12월 23일 일본 국회에서 “속일본기(續日本紀)에 의하면 간무왕(桓武王)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의 자손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본인은 일본 왕실이 전통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느끼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고대 일본의 군주였던 간무왕(桓武王)이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고 확인하였다.

간무왕(桓武王)의 생모는 화을계(和乙繼) 부인으로서 광인왕(光仁王)의 왕비인 고야신립(高野新笠)인바 그녀의 묘소는 일본 교토시 외곽 이세코우산라쿠사이 주택단지 위에 있는 오에릉[大技陵]이라고 한다. 간무왕의 묘소는 가시와라릉[柏原陵]인바, 간무왕은 서기 794년에 천도하여 교토에다 혜이안궁을 짓고, 왕궁 북쪽에 백제 성왕(聖王)을 주신(主神)으로 모신 히라노신사

13) 임승국(林承國) 전 명지대학교 교수는 칠지도의 명문 가운데 태화(泰和) 4년을 고이왕(古爾王) 재위 4년으로 보고, 고이왕이 야마토[大和] 정권을 무너뜨리고 왜왕과 종친들에게 발전을 기원하여 히시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역사학자인 손영종(孫英宗)은 칠지도(七支刀) 명문(名文) 가운데 태화 4년은 진지왕(眞智王) 재위 4년인 서기 408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4) 소진철(蘇鎭轍) 원광대학교 교수는 '스다하치망거울[人物書像鏡]'과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 지석(誌石)을 연구한 다음 스다하치망거울은 무령왕이 신임장(信任狀)으로 왜왕(倭王)인 계체왕에게 하사하여 승인한 것으로 왜왕은 백제의 제후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탐진강 해안.

탐진의 옛터인 전남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에서는 해마다 정남진 물축제가 7월에 열린다.

[平野神社]를 세웠다.

또 무왕(武王)의 딸인 보황녀(寶皇女)는 서명왕(舒明王)에게 시집갔다가 서명왕이 죽자 황극여왕(皇極女王), 제명여왕(齊明女王)으로 두차례 등극하여 11년간 왜왕으로 재위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와 성씨록(姓氏錄)에 의하면 서명왕은 나라현[奈良縣] 백제사(百濟寺) 옆에 백제궁(百濟宮)을 짓고 죽은 다음에 백제대빈(百濟大賓)을 만들었으며, 그의 조부 민달왕(敏達王)은 백제대정(百濟大井)을 만들었고 백제계 일본 국왕이라는 것이다. 또 백제에는 분국(分國)으로서 일본 왕실을 관리하는 일궁부(日宮部)가 있었는데, 이는 왜왕이 백제를 섬기기 위하여 보낸 제관이 상주하는 곳으로 무령왕(武寧王)의 딸 수백향(手白香)을 왜왕에게 시집 보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해양왕국 백제의 해양교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열도와의 해상교류에 관해 살펴보자. 백제의 가장 동쪽 지역이면서 일본열도로 출항하기 좋은 곳은 현재의 섬진강 하구일대라고 보여진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초기에는 가야와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열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한반도 서남해안 지방을 완벽하게 장악한다면 군이 그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금강하구에서 직접 출

항하거나 아니면 서남해안 지방, 일테면 탐진(耽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출항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일본열도의 서북부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다. 동성왕이 탐라를 복속시킨 것은 이런 이유이다.¹⁵⁾

일단 웅진이나 사비 같은 수도에서 출발하는 사신선의 경우 금강하구에서부터 배를 타고 서해로 나갔다가 다시 남해바다로 들어가서 일본 열도로 항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반도의 서남해안까지 육로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열도로 항한다면 훨씬 더 수월한 항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전라남도 해안에서 배를 탔다면 이런 항로를 통해 왜국으로 향했을 것이다.

해류를 활용해 출발한 다음에 현재 왼쪽으로는 서남해안에 있는 산맥들을 보고 오른쪽은 추자도라든가 제주도를 보면서 죽 항해를 하다가 멀리서 대마도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게 되면 일본열도에 도착할 수가 있다. 일본열도의 큐슈 서북부 지역에 도착을 한다. 그 다음에 보다 제주도와 가까운 지역에서 출항하면은 해류와 바람을 이용해서 그다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본열도의 서부지역 즉 현재의 나가사키 바깥쪽에 있는 유명해(有明海) 쪽으로, 아리아케 쪽으로 도착 할 수가 있다.¹⁶⁾

백제인들은 배를 타고 그 만(灣)을 통해 드나들었다는 증거가 바로 후나야마 고분 발굴 결과 입중이 되었다. 약 백여 년 전에 아소산을 항해 가는 길목에 있는 다마나(玉名) 마을에서 발굴된 그 고분에서는 청동거울과 금동관, 금동제관모, 카르 금동제 신발, 그리고 말재갈, 갑옷, 토기 등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금동제 관모는 전라북도 익산의 입점리에서 발굴

15) 영산강과 섬진강 사이에 있는 강이 탐진강이다. 탐진현은 신라 경덕왕16년(757)에 동음(同音)현이 개칭한 이름이다. 본디 ‘동음’은 도무, 두무, 두름, 즉 ‘원산(圓山)’을 의미한다. ‘탐라’도 그런 뜻을 지니고 있고, 한라산 역시 ‘큰두름산’(頭無岳)이라하는데 같은 뜻이다. 이런 점에서 탐진이 바로 탐라 지역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16) 8.15 해방 이후에 제주도나 남해안에서 몰래 떠난 밀항선들이 가장 많이 도착하는 곳이 바로 有明海 근처였다. 그래서 밀항자들을 수용하던 오무라 수용소가 그 만에 있었다. 백제와 탐라에서 해류를 타고 자연스럽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규슈 북서부 지역과 서북부 지역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명해라고 불리는 거대한 湾이 있는데 그 만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내부로 자연스럽게 진입이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홀러드는 강 중의 하나가 ‘기꾸치가와’(菊池川)인데, 유명해에서부터 국지천의 하구를 통해서 죽 올라가게 되면 일본규수의 중부의 한가운데까지 갈 수가 있다. 큐슈 아소(阿蘇)까지도 갈 수가 있다.

된 것과 모양은 물론 심지어 뒤꼭지에 달린 방울 장식까지도 똑 같은 것이었다.

청동 신발 역시 무녕왕릉과 나주의 복암리 고분에서 나온 것과 판막이였다.

초기에 한강변에서 포구를 중심으로 소국으로 출발했던 백제는, 한강하구와 경기만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중국으로 일본 열도로 진출한 해양강국으로 발전했다.

5. 노와 키, 뜬과 나침반을 처음 사용한 사람들

백제의 박사였던 왕인(王仁)은 일본 천황의 초빙으로 서기 285년 폐배를 만들어 도자기와 철공 기술자를 태우고 천자문 1권, 논어 10권을 가지고 건너가 천황 태자의 사부로 일본에 살면서 도자기 등 백제문화를 전달했다고 전해진다.¹⁷⁾

당시 왕인박사가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갔던 폐배인 ‘티우’는 고종에 의하면 직경 30cm의 삼나무 11개를 엮어 만든 길이 약 7m에 너비 약 4m, 높이 1.5m에 역시 나무로 엮은 평상을 위에 설치하고, 너비 3m에 높이가 3.3m인 황포돛 1개를 달아 노를 쳐어 가는 옛목배였다. 왕인박사는 이 배를 타고 전남 영암 대불항 근처에서 출발하여 완도-보길도-고흥 앞바다를 지나 대마도 남단을 거쳐 일본 큐슈 연안으로 들어가 후쿠오카 남쪽 가라쓰 항에 상륙했을 것으로 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¹⁸⁾

백제가 일찍부터 바다교통을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항해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왕인 박사가 3세기말에 폐배를 이용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엔닌 일기에는 ‘백제의 해민(海民)들은 지리지식으로 방향과 거리를 계산해 항해하는 지리항법,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

17) 왕인(王仁)은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古事記와 日本書紀, 그리고 繢日本紀에만 적혀져 전해 내려 오는 백제의 학자이다. 일본에 가서 한자와 유교를 전했다. 그러나 진정 실재했던 인물인지, 가공의 존재인지 논란이 적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단생지로 불리는 전남 영암을 중심으로 연구와 현장사업이 활발하다.

18) 지난 2001년 봄, 영암지역에서 고대 항해 연구팀은 왕인 박사의 폐배를 재현시켜 백제시대에 건너갔던 해로를 따라 7일만에 일본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백제는 당시 3국 중 제일 먼저 일본·중국과 해로교통을 개척했고 뜬을 사용한 해양선 제작기술과 조류·바람을 이용하는 항해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을 잡는 관측성항해법, 흐린 날 지남부침(指南浮針)이라는 나침반을 이용하는 항해법으로 바다를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사기 동서양고(東西洋考) 중 범례조를 보면, 나침반은 원래 중국에서 발명되었으나 이를 선박항해용으로 사용한 것은 백제의 해민(海民)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인들은 나침반을 이용하는 '침경항복'이라는 새로운 항해술을 개발해 이용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을 잡는 '곤신침(坤申針)'과 거리를 계산하는 '갱', 수심을 재는 '탁'이라는 항법이라고 중국고사기인 무비지(武備志) 중 정화항해도(鄭和航海圖)는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해민들은 노와 키 그리고 둑 달린 바닷길 전용 해양선을 1세기 중엽부터 만들어 탔던 듯하다. 백제의 해양선은 중국의 배와 달랐다. 우선 노와 키가 다르다. 중국의 배는 노를 당기는 반동으로 물을 밀어 가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해 배 양쪽에 많은 노공(櫓工)이 필요했다. 마치 로마시대 갤리선과 비슷한 해양선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노는 도 또는 줍이라 하여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한 비능률적인 도선이었다. 반면 백제의 노는 끝을 스크루형으로 회전시켜 물을 저어 가는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노선이어서 사람의 힘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배의 방향을 잡는 키 역시 달랐다. 백제의 것은 배의 뒤꽁무니에 고정시켜 좌우로 회전하는 전용키였지만 중국의 키는 노인 도를 사용하거나 배 한쪽의 도들을 쉬게 하여 방향을 틀었다. 이처럼 백제의 배는 바다를 건너기에 알맞은 순수 해양선이지만 중국의 배는 주로 양자강 같은 중국대륙 내 여러 큰 강에서 사용하는 도강선이라, 속도가 느리고 무거워 바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백제의 해양선을 따라 잡지 못했다.¹⁹⁾

19) 백제의 해양선이 중국의 도선보다 훌륭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이 중국의 〈삼국지〉에 있다. 오 나라 손 권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인 서기 219년 조조에 쫓긴 유비는 제갈량이 세운 중국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갖는다는 천하삼분정책에 따라 촉나라로 들어가 왕이 되었고, 이때 관운장은 촉나라 입구인 장강(양자강) 연안에 군사를 배치하고 봉수를 세워 수비를 철저히 했다. 그자 오 나라 손권의 부하 장수였던 여몽이 병사를 숨긴 배를 '백의로 하여금 노를 젓게 하여(使白衣搖櫓)' 촉나라 양자강변 수비진으로 재빨리 접근, 척후병들을 제거하고 방심하던 관운장을 생포했다. 여기서 백의는 백제인을, 노를 젓게 한다는 뜻의 요노(搖櫓)는 백제의 배를 젓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대목에서 여몽이 백제의 해양선을 이용한 이유가 중국의 배보다 빨랐기 때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백제의 해양선은 스크루형뿐만 아니라 방향을 잡는 키까지 사용했다. 그 증거는 중국의 고사기인 설문해자(서기 100년), 삼국지(219)에 나온 전쟁 기록, 북송 때(982)에 저술된 태평어람 중 주부 편 즙조, 유희가 쓴 〈석명〉 중 석선, 6세기경에 쓰인 고야 왕의 〈옥편〉 등에 나타나 있다. 특히 삼국지의 전쟁기록을 보면 스크루형 노를 젓는 기술에서 백제인이 중국인보다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는 초기부터 바다로 진출한 만큼 이에 따른 조선기술도 아울러 발전했다. 우리 사기(史記)에는 없지만, 중국사기에 그 증거가 남아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강에서 사용하는 반동형 노가 아니라 힘이 덜 들게 휘둘러 젓는 스크루형 노를 초기부터 사용하여 황해 바다의 흑조해류를 해쳐 나갈 수 있는 해양선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조선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은 일본 고대 문헌인 효덕기(孝德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효덕기에는 백제의 조선공들이 만든 크고 튼튼한 배를 특별히 ‘백제 배’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 배에 뜻이 달리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초로 추정된다. 7세기 중반에 와서는 해양선뿐만 아니라 강에서 사용하는 도강선에도 달 만큼 뜻이 일반화된 듯하다. 백제본기 중 의자왕 편을 보면 의자왕 20년(660) 6월에 부여의 왕홍사 승려들이 마치 배의 뜻과 같은 것이 금강의 물을 따라 절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뜻을 묘사한 기록인 셈이다.

이런 조선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백제인들은 동아시아 남방지역으로도 발길이 이어졌다. 뱃길이 가는 데로 어디까지든 갔던 것이다. 본국이 멸망하자 백제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흑치상지(黑齒常之)는 원래 부여씨였지만 남방 지역의 왕(담로)으로 봉해지면서 흑치로 그 성씨를 바꾼 것이다.

또한 554년 부남(캄보디아)의 노예를 일본에 선물을 주고, 565년 탑등(북인도 지방 양탄자) 선물, 641년 곤륜(인도차이나 일대) 관련 기록이 나오는 등 남방 지역에서도 백제인의 해상활동은 눈부시다.

역사가 전설과 신화의 파편으로 흩어져 찾기 어렵다 해도 생각을 키우고 진실을 파헤쳐 가노라면 역사와 만난다.

이 어 도
소 식

IEODO NEWS

도내외 교사들, '이어도' 찾다 7월31~8월4일, 이어도 교원직무연수 제주서 개최



이어도연구회와 한겨레교육문화센터가 주최하는 '해양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이어도해양아카데미-교사직무연수과정'이 지난 7월31일~8월4일 4박5일간 제주대학교 및 이어도 일원에서 열렸다. 연수에는 제주도내외 초중고 교사 40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원연수는 이어도연구회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직무연수 기관으로 인가된 후 처음으로 개최

된 행사다. 이어도 및 해양관련 이론교육과 더불어 교사들이 최초로 이어도 해역을 탐방하는 시간도 가졌다.

직무연수 참가자들은 7월31일~8월3일까지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이어도 및 해양관련 이론교육을 받았다. 이어 8월3~4일 양일간 제주대 실습선 아라호를 타고 이어도를 방문, 해양영토주권 이론과 현장교육을 받았다.

자세한 행사일정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사일정 및 내용

- 일시 : 2013. 7. 31(수)~8. 4(일) (4박5일)
- 장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및 이어도 해역
- 세부일정

●제 1일(7/31)

10:00~10:30	개강식
10:30~12:30	동북아시아의 해양정책과 이어도 고충석(이어도연구회 이사장)
13:30~15:30	동북아 해양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 권문상(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15:30~17:30	해양영토의 실효지배와 해양지질의 중요성 박찬홍(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 제 2일(8/1)

- 10:30~12:30 제주해민문화의 원류와 이어도토피아
송성대(이어도연구회 상임연구위원)
- 13:30~15:30 이어도과학기지의 역할과 미래
심재설(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장)
- 15:30~17:30 동북아 해양패권경쟁의 현실과 한반도
강태호(한겨레신문 기자)

● 제 3일(8/2)

- 10:30~12:30 해양과학의 현실과 미래
김춘선(인천항만공사 사장)
- 13:30~15:30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 15:30~17:30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강봉룡(목포대학교 교수)

이어도소식

● 제 4일(8/3)

10:30~12:30	제주도 조간대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 최광식(제주대 교수)
12:30~13:30	점심
13:30~15:30	제주 해양역사와 이어도의 존재론적 가치 김동전(제주대 교수)
15:30~16:30	제주항 이동
16:30~17:00	아라호 탑승
17:00~19:00	강의 1. 아라호 및 이어도해역 소개 이창현(아라호 선장)
19:00~20:00	저녁식사
20:00~22:00	강의2. 북서태평양으로서의 제주 남방해역과 이어도해양영토 주강현(제주대 석좌교수)
22:00~23:00	친교의 시간 및 취침

● 제 5일(8/4)

07:00~10:00	아침식사 및 이어도해역 탐방
10:00~12:00	강의 3. 지척민빈(地瘠民貧)의 제주섬이 낳은 이어도토피아 송성대(이어도연구회 상임연구위원)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강의 4. 제주의 땅과 해안마을 이야기 김태일(제주대 교수)
15:00~17:00	휴식 및 수료증 수여
17:00~	도착 및 해산

아주 특별한 섬, 아주 특별한 여행…2013 이어도아카데미



이어도연구회와 한겨레교육문화센터는 지난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2013 이어도해양아카데미-미래해양전문가 리더십 과정'을 열었다.

국내외 대학(원)생 및 일반인 등 2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아주 특별한 섬,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가 메인 강사로 나선 이 행사는 제주도내 주요 해양문화 및 유적 등을 탐방하며 해양문화와 이어도 수호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

자세한 행사일정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사일정 및 내용

● 7월14일(일)

(강의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 안내 문경미 제주도문화관광해설사)

10:00 제주도 도착

10:00 ~12:00 제주동카를 답사(제주시에서 구좌까지)

제주바다의 사라진 마을(화북 곤을동)

젊은이들의 바다(월정리 해변의 요란한 풍경)

바다의 신들(세화리 갯것이 할망당과 물통)

역사가 숨쉬는 바다(하도리 별방진성)

생태환경적인 돌그물(하도리 갯담 - 물때 조건에 따름)

해녀박물관

이어도소식

	куро시오 해류와 문주란, 황근자생지(토끼섬과 주변)
12:00~13:00	점심
14:00~18:00	제주동카름 답사(구좌에서 남원까지) 영등하르방당(시흥리) 철새가 도래하는 바다 풍경 (종달리 주변) 성산봉이 잘 보이는 식산봉 주변 바닷길걷기(오조리) 성산봉이 잘 보이는 광치기 해변 바다곁의 바다목장(신천리) 표선해변과 당캐 세명주할망당 단애가 아름다운 큰엉(남원리) 바닷가의 동백자생지(위미리)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조배머들코지(위미리포구) 검은 모래가 아름다운 포구(공천포)
17:30~18:00	남조로로 귀환
18:30~19:30	석식
19:30~20:00	숙소도착
20:00~21:00	이어도 및 해양주권 의식 확대를 위한 참석자 간담회 (사회 :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 7월 15일(월)

09:30~12:00	제주서카름 답사(애월에서 한경까지) 아름다운 바닷길 걷기(한담포구길, 곽지과물까지) 비양도를 바라보며(금릉해수욕장과 전통어법 원담) 김대건 표착지(용수 해안) 도대불의 현주소(차귀도와 자구내포구) * 차량강의(차량을 바꾸어 타면서 갈때와 돌아올때를 이용한 교대강의, 각 30분씩)
	지정특강1/ 북서태평양 일원으로서의 제주도와 남방해역 - 주강현(제주대석좌교수, 해양수산부 총괄정책자문위원)
	지정특강2/ 이어도해역의 수산자원과 한중어업의 과제 - 정만화(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12:00~13:00	점심
13:00~17:00	제주서카름 답사(대정에서 한경까지) 태평양을 겨냥하던 비행장(알뜨르) 만의 풍경(사계리 바다)

	바다전쟁, 일본군 전적지(송악산지) 산방산과 바다를 지키던 산방연대
17:00~18:00	제주시내로 이동
18:00~19: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19:30	아라호 탑승
19:30~21:30	이어도의 밤 1부- “바다와 우리의 미래”(좌장 :주강현)
(각 10분 스피치)	1. 고충석(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이어도연구회 사업설명과 선상 강의발표 강평” 2. 양치권(영산강홍어 대표) “우리나라 수산먹거리에 관하여 - 홍어의 경우” 3. 이창현(아라호 선장) “이어도 해역 수산자원과 아라호 소개” 4. 이준백(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장) “제주해양과 이어도의 가치” 5. 최광식(제주대 해양과학대학 교수) “제주 수산업의 중요성” 6. 김동전(제주대 사학과 교수) “제주도 해양문화 역사” 7. 박천남(성곡미술관큐레이터) “바다와 미술에 관하여” 8. 정유라(경희대무용과) “바다와 무용 - 굴업도의 경우” 9. 최원석(경상대교수) “바다에 관한 한국인의 생각에 관하여 ”
21:30~23:00	이어도의 밤 2부 - “친교의 시간, 바다의 향연”
23:00	취침

● 7월16일(화)

08:00~09:00	아침식사
09:00~09:30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로 이동
09:30~12:30	이어도 강의 * 09:30~10:30 인문학으로 본 이어도(송성대) * 10:30~11:30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강의(이병길) * 11:30~12:30 이어도의 해양법적 쟁점(김영구)
12:30~13:30	점심
13:30~17:30	* 오후 답사 프로그램 * 평가회 및 결산집담회 * 수료식(수료증 수여)
17:30~18:00	제주공항 이동
18:00	제주공항 해산 및 출발

제주시의정동우회, '이어도'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제주시의정동우회(회장 장순호)는 지난 11월15일 '이어도'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시의정동우회는 제7차 세미나 '제주도민의 정체성으로서 이어도의 가치 재발견'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김상오 제주시장,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 제주도의회 박규현·강경찬·고정식 의원, 서귀포 의정동우회 현동빈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장순호 제주시의정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어도는 제주민의 이상향이었으며, 지금도 우리의 설화와 노래 속에 살아 있다"면서 "과거 제주인의 설화, 역사에 나타나는 '이어도' 향수를 논의하며 미래 이어도 가치를 새롭게 발굴할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부영주 전 제주일보 편집국장(제주언론인클럽 이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서는 송성대 이어도연구회 상임연구위원이 '한·중간 이어도해역 관할권 경계획정에 대한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이병걸 제주대 교수,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정치외교학 박사, 충남대 국방연구소연구교수), 강경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 한림화 제주작가회의 전 회장, 제주시의정동우회 장순호 회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한림화 작가는 토론에서 "해상활동에 적극적인 제주 섬사람에게 이어도는 풍요로운 '바다 밭'이며 동아 지중해상의 중요한 해로의 가늠 점으로 인지되어 왔다"며 "이어도는 태풍이 제주도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등 확고한 지리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의 해양생활권역으로 볼 때 그 곳이 단지 심상적 시각 뿐 아니라 실생

활권역으로 각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작가는 “제주해양 문화는 이어도와 맥이 닿아 있고 이어도는 제주해양문화의 ‘뿌리깊은 나무’ 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재한 장순호 회장은 향후 이어도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 가칭(사)이어도문화사업회를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가칭(사)이어도문화사업회는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지원 △이어도 종합홍보관 및 제2의 해양관측소를 설치 지원 △‘이어도’에 관한 역사문화예술관광과학 사업추진 지원 △이어도 및 이어도 전시관 관련 홈페이지 개설 △이어도 바로 알리기 전 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국토 최남단 이어도 표기 국가 전도 바꾸기 운동 전개 △이어도 인문학적 가치(민요, 구전, 민간소설 등) 조명 세미나 개최 △이어도 사랑 가족 마라톤 대회 주최 및 이어도 전국웅변대회 개최 △전 세계 대상 이어도 홍보 △청소년들의 이어도 종합해양 과학기지 방문 활동 지원 △1984년 민간최초 이어도 수중탐사성공 13인 기념관 설치 및 국가유공 훈장 추천 추진 △이어도오페라, 영화제작, 연극단, 무용단 창립 등 문화 전반의 사업 및 홍보를 하게 된다.

장순호 회장은 “가칭(사)이어도문화사업회를 창립하는 것은 ‘이어도’를 우리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한 것”이라며 “첫 걸음은 그 누구보다 우리 제주도민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고충석 이사장, 세계해양포럼 참석

고충석 이사장이 지난 9월 열린 제7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에 참석하여 해양전문가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충석 이사장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변화의 파도를 넘어 기회의 바다로 -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해양 질서’라는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세계해양포럼에 참석했다.

개최된 가운데 제주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이 참석, 해양전문가들과 ‘신해양질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포럼은 해양 분야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정부기관과 해양 관련 기업 등에서 3000여 명이 참가했다.

포럼에서는 ▲동북아 해양 경제의 잠재력, ▲신 해양산업을 통한 창조 경제 실현, ▲해양과학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메가트렌드(Megatrend)’의 저자인 나이스빗 부부(John Naisbitt and Doris Naisbitt)가 기조연설자로 나와 ‘오션 메가트렌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도연구회,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수료식 및 '이어도의 밤' 개최



(사)이어도연구회와 제주씨그랜트센터(센터장 이병걸)이 주최/주관하는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수료식 및 이어도의 밤' 행사가 지난 8월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이어도연구회 임직원 및 이어도 관련 단체 관계자, 2013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수강생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고충석 이사장은 축사에서 "21세기의 성장동력은 바다에서 찾아야한다"면서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이 우리바다를 지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도는 수중 4.6m 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대단하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응집된 국민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의지를 쌓는 일은 벽돌 하나씩 놓는 일과도 같다"고 밝히며 참석자들에게 이어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했다.

행사는 2013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수료생에 대한 수료증 전달에 이어 이어도 주제 시 낭송과 이어도 노래 경연대회가 마련됐다.

시 낭송에서는 첫 번째로 양금희 시인의 시 '이어도가 보일 때는' 을 이어도문학회 양금희 회장이 낭송했다. 두 번째는 문충성 시인의 시 '이어도'를 제주시사랑회 손희정 낭송가가 낭송했다. 세 번째는 김순이 시인의 시 '이여도'를 김장명 제주시사랑회 낭송가가 읊었다.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수강생 참여한 마라도 탐방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수강생들과 이어도 협력 단체 회원이 최남단 마라도 탐방에 나섰다.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일환으로 마련된 마라도 탐방행사는 지난 8월 17일 열렸다. 행사에는 이어도아카데미 수강생들과 이어도연구회 협력 단체인 이어도아카데미 원우회, 이어도여성지킴이, 이어도청년지킴이, 이어도문화회 등의 회원 등이 참여했다.

제주도민 대상 2013 이어도해양아카데미 개최



'해양주권 고취를 위한 2013 이어도 해양아카데미'가 지난 7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 등지에서 열렸다.

(사)이어도연구회가 주최하고 제주씨그랜트사업단이 주관한 이 행사는 총 9개 주제에 대한 강좌가 열렸다. 행사에는 제주도민 8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행사내용과 일정은 아래와 같다.

● 행사일정 및 강사진

- | | |
|----------|---|
| 1주(7.05) | 해양경제정책과 제주
김성진(전 해양수산부 장관) |
| 2주(7.12) | 동북아 국가 정세와 이어도
강근형(제주대교수/사회과학대학 학장) |
| 3주(7.19) |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역할과 유인화 정책의 이해
이병걸(제주씨그랜트센터장, 제주대 교수) |
| 4주(7.26) | 현장탐방 : 올레길 해양문화 기행 |
| 5주(8.02) | 이어도 해양법적 쟁점
김영구(려해연구소 소장) |
| 6주(8.09) | 국가해양정책과 이어도
이재균(전 국회의원, 전 국토해양부 차관) |
| 7주(8.17) | 현장탐방 : 마라도 해양문화 기행 |
| 8주(8.30) | 아카데미 수료 및 이어도의 밤
현장강의 |

이어도청년지킴이 '제주청년, 바다를 만나다' 제2차 세미나

이어도청년지킴이(회장 이성재)는 제2차 세미나 '제주청년, 바다를 만나다'를 지난 10월4일 개최했다.

'이어도를 통해 바라본 해양의 중요성과 제주해양문화 계승을 위한 대학생의 활동 방안을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제주벤처마루 10F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송성대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의 기조강연 '이어도와 제주청년의 역할'로 시작됐다. 이어 '이어도와 제주해양문화, 대학생의 활동 방안'에 대해 이어도청년지킴이 이성재 회장이 주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정치학박사)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과 김지수,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고장원,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 고강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강수영 관장, 제주인뉴스 양금희 편집국

장, 이어도연구회 이정원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성재 회장은 “이어도를 중심으로 해양의 중요성을 습득하고 제주해양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은 제주인으로서의 책무”라며 “이어도청년지킴이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과 학습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제대로 찾고, 해양시대를 대비할 인적자원과 더불어 제주발전의 젊은 목소리를 담아내는 새로운 물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물질 해양 유입 정보 공개해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어도연구회는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에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도연구회를 비롯해 (사)갯벌·연안보전포럼,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한국도선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바다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환경단체 모임’은 지난 9월4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물질의 해양유입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임은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방사능 해양오염에 적극 대처해 인근 국가의 수산을 섭취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영향 해역의 수산물을 그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 해양오염 대처를 위한 국제·국내 공동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도 상공은 韓 영공…일방적 방공구역 인정 못해”

이어도포럼 등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유감 성명

중국이 지난 11월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것과 관련, 이어도포럼을 비롯한 5개 단체들이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도포럼(대표 김세원·고충석·박용안),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신영근), 이어도청년지킴이(회장 이성재), 이어도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홍영철), 이어도문학회(회장 양금희)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선포가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 대하여 엄중한 유감의 입장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타국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오려면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난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도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방공식별구역은 분명히 조정돼야 한다”며 “향후 정부가 일본과 협의를 거쳐 이 곳을 우리 상공식별구역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이어도에 대한 국가·국민적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어도의 가치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 전문〉

‘바다’에 이어 이번엔 ‘하늘’이다. 중국이 선언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어도 해역이 다시 한번 긴장의 격랑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 23일 동중국해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한국 및 일본의 기존 방공식별구역을 크게 침범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새로 선포하면서 주변국가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현재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폭 20km, 길이 115km 가량 겹쳐 있다. 우리가 사실상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는 물론 오키나와 서쪽 등 더 넓은 부분이 겹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무엇인가? 한 국가가 영공(領空) 외곽에 임의로 설정하는 공중구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타국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오려면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시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진입 허가 없이 방공식별구역에 외국 군용 항공기가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 전투기가 발진한다. 실제로 중국의 발표 직후인 23일 오후 중국군 정보수집기 2대가 센카쿠 열도 북방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등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보이고 있다. 정부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徐京明) 무관(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하였다. 외교부도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불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

포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다.

분명한 것은 이번 선포가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당연히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번에 선포한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우리가 진입할 때 사전 통보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군사적인 위협을 해온다면 우리는 주권을 침범한 엄중한 사태로 인식하여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어도를 사랑하는 단체들은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 대하여 엄중한 유감의 입장을 보내는 바이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한 모든 국가와 해양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강대국을 자처하지만, 현재 보여주는 행동은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관용과 포용력은 온데간데 없다. 중화주의적인 우월감과 제국주의적 속성인 영토점령 야욕, 얄팍한 상인정신만을 앞세우며 세계를 불안정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이어도해역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발언과 행동이 이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중국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 해역”이라 주장하며, 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적인 순찰을 하겠다고 밝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재차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기회삼아 이어도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는 배타적경제수역획정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한·중·일이 배타적경제수역상공으로 각국의 식별구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마무리이다. 이어도 해역의 경계획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결과로 이번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이는 전적으로 중국이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한 탓이 크다.

한·중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해 방공식별구역 종합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방공식별구역과 더불어 이어도 해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상공식별구역을 조정하는 데도 우리의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우리나라

의 항공식별구역(KADIZ)은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소련 전투기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포되었다. 당시에는 이어도의 개념이 없던 때라 이어도 상공이 편입되지 못하였다.

이후 이어도 상공은 1969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여러차례 일본에 대해 재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어도의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이 또한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거쳐 이어도 상공을 우리 상공식별구역에 편입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태에 대하여 국민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어도에 대한 국가·국민적 관심을 높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어도는 제주인의 이상형이자, 우리 해양주권의 최전선이다. 일상에서부터 이어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과 연구, 홍보활동 등이 이뤄져야 이어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어도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국가·국민적 차원에서 이어도의 가치를 고취시키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중국은 베타적경제수역 확장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과 중국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을 안정화하는 강대국으로서 통큰 면모를 하루 빨리 보여주길 바란다.

더불어 중국은 우리의 관할권인 이어도 상공이 우리의 상공식별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강대국으로서 과감한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도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편적 인식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3년 11월 26일

이어도포럼(대표 김세원·고충석·박용안)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신영근)

이어도청년지킴이(회장 이성재)

이어도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홍영철)

이어도문화회(회장 양금희)

이어도청년지킴이 “이어도는 제주청년들이 지키겠다” ‘이어도의 조례’ 제정 등 촉구



중국이 지난 11월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 이어도청년지킴이 회원 및 제주 지역 청년 407명이 12월 2일 “이어도는 제주 청년들부터 앞장서서 지키겠다”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도청년지킴이는 성명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선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도청년지킴이는 “중국은 지난달 23일 이어도 해역의 상공이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새로 선포해 한반도를 충격에 빠뜨렸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한동안 잠잠하던 이어도 해역이 다시 한번 긴장의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우리 제주 인의 영원한 이상향, 이어도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인다는 점에서 이어도와 제주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더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도를 지키는데 우리 제주도민들부터 단합해 나서야 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이어도를 지킬 수 있고 해양주권 의식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계류 중인 이어도의 날 조례를 이번 정례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앞으로 해양 주권, 영공 주권, 영공 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어도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만큼 이어도 수역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 전문〉

이어도는 제주 청년들부터 앞장서서 지키겠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3일 이어도 해역의 상공이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새로 선포해 한반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정국은 급격히 혼란에 빠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및 미국 정부까지 나서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고는 며칠이 지났다. 각 국에서 제기된 각종 비판을 수용하여 중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통큰 결단을 내릴 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일말의 바람조차 무너진 상황이 만들어졌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재조정 요구를 공식 거절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랐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동아시아 정국은 더욱 혼란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강대국간 대결에 따른 갈등의 크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에 동아시아 해역을 더욱 불안으로 몰아넣은 중국의 이번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한동안 잠잠하던 이어도 해역이 다시 한번 긴장의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우리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 이어도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인다는 점에서, 이어도와 제주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더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도는 제주사람들에게 피안의 섬, 이상향이다. 거친 바다와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은 불행이 없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이어도를 꿈꾸며 살았다. 그런 이어도는 지난 2003년 이어도 해역에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면서 해양주권의 최전선으로 발돋움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어도 해역이 포함된 동중국해는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90% 이상이 지나는 남방항로의 핵심이다.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인 가치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이다. 이런 중요성을 반영하듯 한국과 중국은 이어도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지금까지 14차례 협상을 통해 해양경계획정을 논의했지만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나섰다. 바다의 경계가 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하늘의 경계를 긋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분명한 외교적 결례이자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중국은 그동안 공공연히 이어도 해역을 그들의 바다라고 주장하며 호시탐탐 이어도를 노려왔다. 그러면서 군함과 정찰기 등을 정기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보내 동아시아의 불안 정국을 조성하였다.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이어도 침범은 군함이 2011년 13회에서 지난해 41회, 을 들어 최근까지 31회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방공식별구역까지 새로 선포하면서 중국은 바야흐로 이어도를 자기 관할권으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해양분쟁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일본 또한 직접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해역을 포함함으로써 이어도 해역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식별구역(KADIZ)은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소련 전투기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포되었다. 당시에는 이어도의 개념이 없던 때라 이어도 상공이 편입되지 못하였다.

이후 이어도 상공은 1969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여러차례 일본에 대해 재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어도의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방공식별구역 재조정 뿐만 아니라 이어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이어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지켜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우리 청년부터 힘을 모아 제주인의 정체성이자, 한국인의 자존심인 이어도를 지키는데 적극 앞장설 것임을 거듭 다짐한다.

이에 이어도청년지킴이는 정부 그리고 제주도,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우리는 이러한 방공식별구역의 선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2. 이어도를 지키는데 우리 제주도민들부터 단합해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이 이어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양주권 의식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현재 도의회에서 계류중인 이어도의 날 조례를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4. 정부는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앞으로 해양 주권, 영공 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이어도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만큼 이어도 수역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3년 12월 2일

이어도청년지킴이 이성재 회장 외 회원 일동

이어도청년아카데미 개최



'해양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2013 이어도청년아카데미' 가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3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 등에서 열렸다.

제주도내 대학생 및 해양경찰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총 3주동안 7강에 대한 강좌가 열렸다.

해양정책 및 이어도기지, 해양법, 제주해양역사, 해수관상어 양식 현황 등을 주제로 한 이번 강좌는 이론강의와 함께 한국해수관상어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세부일정과 강좌주제는 아래와 같다.

- | | |
|-----------|---|
| 1강(10/30) | 21세기 해양시대 청년의 역할
고충석(이어도연구회 이사장) |
| 2강(11/01) | 이어도의 해양법적 쟁점
김부찬(제주대 교수) |
| 3강(11/13) | 이어도 문화와 제주인의 정체성
송성대(이어도연구회 상임연구위원) |
| 4강(11/15) | 21세기 제주에서 바라본 제주 해양역사
김동전(제주대교수/제주대 박물관장) |
| 5강(11/20) | 이어도 과학기지의 역할
이병걸(제주대 교수) |
| 6강(11/22) | 제주 해양산업 바라보기- 해수관상어 양식산업의 현황과 전망
노섬(한국해수관상어센터장/전 제주대 교수) |
| 7강(11/23) | 결산 및 현장탐방
- 한국해수관상어센터(예정) |

이어도아카데미 원우회·이어도를 사랑하는 모임, 제주시 일원에서 이어도 홍보



이어도아카데미원우회(회장 신영근)와 이어도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이사모, 회장 흥영철)은 제주시 일원에서 이어도를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어도아카데미 원우회는 지난 11월22일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어도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사모는 다음날인 23일 제주시청 일원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가량 이어도 홍보 유인물을 나눠주는 홍보 행사를 가졌다.

이에앞서 이사모는 지난 8월9일 제주공항과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지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어도 포럼

이어도 탐사기

이어도를 지키는 일

이어도 탐사기



장순호

제주시의정동우회장
이어도탐사 부대장
전 한국 해양소년단
제주연맹 부회장

이어도 탐사를 시작하다

1984년 4월 6일 (동년 4월 9일까지) 한국 해양소년단 제주연맹에서 주관, 주최가 되어 우리나라 민간단체 최초로 시행한 이어도 탐사는 ‘이어도’에 대한민국 깃발과 해양소년단 제주연맹깃발을 부표에 띄워 ‘대한민국의 영토 이어도’임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탐사는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끝내 성공해 최초로 “이어도”를 확인 명명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다.

탐사 준비는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어도’ 섬이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유토피아’적인 섬을 찾아보자는 뜻을 함께하여 해양 전문 교수들 및 해양에 관계하는 각계 지인들을 찾아 모임을 갖게 되었으며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 해양소년단 제주연맹은 초대 중점사업으로 정하여 본부연맹에 의사 타진하고 협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격려의 답신을 받았다. 당시, 2만톤급 선장인 한재철 항해담당 팀장은 해양 해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각 나라 해도를 구하여 ‘소코트라록’ (Socotra Rock)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구하였다.

당시 이곳은 영국해도에는 ‘소코트라 록’으로 일본해도에는 ‘파랑여’, 우리나라 해도에는 ‘파랑도’라고 표시되었지만 그곳에 직접적으로 수중탐사에 성공하였다는 기록이 보고 된 바는 없었다. 그래서 탐사를 위하여 연맹장 최웅



이어도 탐사를 위해 1983년 8월 필리핀 바탕카스 바다에서 수중훈련중인 이어도탐사대

길 박사와 임원들을 비롯하여 제주대학 해양학 전문 교수들, 해양 연구에 경험 있는 분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서적,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등을 탐독 분석했다.

특히 “1953년 오산에서 출발, 오끼나와로 가던 군 수송기가 갑자기 파도가 소용돌이치는 주변에 지도에도 없는 ‘붉은 섬’을 발견하고 그 지점을 표시한 후 돌아오는 길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 이야기 등을 수집하여 이어도 탐사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실제로 이어도에서 매년 4월 초에서 5월 사이 조류를 맞춰 안전하게 5년 이상 조업을 하였다는 정보를 알았다. 그 배는 강원도 선적 20톤급인 ‘여진호’였다. 선주이자 선장은 박춘길(당시42세)씨였다. 인천항으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수소문 끝에 연락이 되었다. 1982년 9월 15일 그를 만나 ‘이어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듣고 협의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여진호 선장을 제주에 초청 하여 그곳에의 상황을 확인 하는등 탐사일정을 협의했다. 탐사 준비 2년 후인 1984년 4월 6일경에 우리 임원과 전문

'스쿠버다이버' 등으로 20여명이 탐사대를 조직하여 한림 항을 함께 출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또한, 그 근처에 식인상어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안전준비물로 철책보호캡슐 2기를 제작하였으며, 주말마다 육상연습과 해저 스쿠버다이빙(잠수)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제주근해 깊은 바다 30~40m에서 수중심해잠수연습을 강행하여 최종적으로 수중탐사대원 6명이 확정되었다. 최종수중탐사대원은 최웅길, 장순호, 정상철, 고동진, 김종환, 한재철이었다.

1984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탐사일지

필자는 1984년 4월 6일 출발 전 모든 장비준비와 탐사선 장비점검을 시작으로 탐사대원들과 일정을 협의하고 행동지침을 확립했다.

4월 7일 오전 7시 30분에 여진호(20톤급)를 선두로 수중탐사선(탐사전문 스쿠버호 5톤급) 2척이 '이어도'를 향하여 닻을 올려 출발했다. 그날의 기후는 며칠 전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 바람이 불고 먼 바다백과로 파고가 높았다. 탐사선들은 한림항을 벗어나면서 안전항해와 탐사성공을 기원하는 돼지머리를 선상에 올려 '바당제'를 올렸다.

동경 $125^{\circ} 10' .58$, 북위 $32^{\circ} 07' .32$ 를 향해서 중국 상해방향 공해선상으로 별만을 쳐다 보면서 밤샘 항해를 하였다. 1984년 4월 8일 오전 8시경 갑자기 흙으로 덮인 뿌연 주황색으로 바뀐 바다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직감적으로 이어도가 '바로 여기다'라고 느꼈다. 이어도에 도착시간은 아침 9~10시 사이다. 너무 감격스런 순간으로 서로 환희의 얼굴만 쳐다 봤다. 그런 중에도 보이지 않은 바다속의 무한한 공포감이 들었다. 또한 이어도 근해에는 주변국 어선들이 여러척이 어로작업을 하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중국 상해 쪽 양자강에서 내려온 뿌연 진흙탕 물과 그곳에 뿌연 플랭크톤이 섬을 덮어서, 이어도는 황금고급어류 어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1984년 4월 8일 11시경 여진 호와 스쿠버호는 동서남북을 횡단하면서 어군 탐지기로 수심측정과 수면 밀 섬 들을 그리고 있었다. 분석결과 지형은 남쪽이 급경사인 부채꼴 모양으로 제일 높은 암초는 수면아래 5m정도이고 그 외는 수



탐사부대장 장순호가 해양훈련 중 아들 장희석, 희조 형제와 함께 이어도탐사선 스쿠바호에서

면아래 10~20m의 봉우리들 100여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이 올라온 수중 최고봉에 일단 닻을 내리고, 로프 줄을 함께 내렸다. 잠수준비, 탐사준비로 식인상어를 막기위한 철책 상어막이 캡을 내리고 수중작업을 시작 하였다.

수중 탐사대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중탐사에 나섰다. 먼저 전문 다이버인 고동진, 김종환 팀장이 장비를 챙겨 선발대로 잠수를 시작했다. 바다 속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받고 오후 12시 30분경 대원들은 2차 최웅길 대장과 한재철 팀장이 잠수 탐사 하고, 3차 마지막으로 장순호 부대장과 정상철 교수가 고무보트에서 내린 로프 줄을 따라 탐사를 하였다.

당시에는 한국일보 기자도 취재차 탐사에 참여하였다. 한국일보 사진부 권주훈 기자는 고무보트에 내린 닷줄을 타고 이어도 수중에 내려갔으나 흙탕물로 시야가 막혀 수중촬영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2시까지 큰 어려움 없이 탐사대원들은 수중탐사를 마치고 조류를 피하여 서둘러 탐사선으로 복귀했다. 약 3시간에 걸쳐진 수중탐사였다. 수중촬영은 쉽지 않았다. 바다의 수중이 흐려서인지 아니면 프랭크톤으로 부옇게 덮

혀서인지 너무 흐렸다.

수중 작업은 불편 없이 진행 되었다. 그곳에서 생물 채취와 하얀 산호초 석면을 손으로 만지면서 다시한번 우리영토 ‘이어도’를 확인하였다. 당시 이어도 발견 및 탐사기를 한국일보에도 대서특필하여 보도하였다.

4월 8일 오후 5시경 달을 올려 회항 준비를 하였다. 출발하는데 먼 바다에서 하얀 백파가 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조금씩 멀어져 가는 이어도에는 하얀 거품이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였다. 바다 밑 조류속도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후 6시경 그렇게 좋았던 맑은 날씨가 어느새 ‘이어도’를 떠나는 순간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어도’가 우리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높은 파도와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 때 문뜩 한 생각이 스쳐갔다. ‘이어도를 본 사람은 살아가지 못한다.’ 괜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머리를 스쳐갔다.

‘탐사전문스쿠버’ 호가 난파 당하다

4월 9일 새벽2시경 엄청난 큰 파도에 휩싸여 큰 사건이 났다. 망망대해 높은 파도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가 타고 있던 전문탐사선 ‘스쿠버’ 호의 배 밑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오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벽 2시 10분 순식간에 기관실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대원들을 급히 깨우고 여진호 선장에게 ‘스쿠버’ 호를 급히 구조해 달라는 무선 연락을 했다. 폭우 속에서의 그 상황은 너무나 절박한 운명의 순간들이었다.

급히 뱃줄을 여진호에 맸다. 맨손으로 여진호를 끌어 당겨서 3~4m 사이로 프줄에 의지하여 여진호에 매달려 차분하게 탐사선을 탈출을 해야만 했다. 해상에는 심한파도와 세찬 바람뿐이다. 악착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만 뿐이었다. 무사히 여진호배로 건너왔다. 모든 대원들이 사고없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여 살아서 천만 다행이었다.

여진호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불빛바다 밑으로 서서히 침몰하는 탐사선 ‘스쿠버’ 호를 보면서. 모든 대원들은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결국에 8명의 탐사

대원들은 귀중한 탐사자료와 개인 소장물건들, 장비들 그리고 ‘탐사전문 배 스쿠버’ 호를 통째로 이어도 바다에 바치고, 목숨만 가지고 살아 돌아 왔다.

당시 피해손실은 전문 탐사스쿠바호와 고가인 대형수중카메라, 수중탐사대원들의 고가인 수중장비 등 약 5억원 이상이다. 당시 본 연맹에서는 국가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4월 9일 새벽 6시가 되었다. 한입에 잡아 삼킬 듯 무섭게 휘돌아쳤던 그 파도와 바람은 언제 그리했나는 듯 너무 평온했다. 드디어 4월 9일 오후 3시경 멀리서 제주도 한라산이 보이고, 한림항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이어도를 떠난 지 22시간 만에 한림 항에 도착한 것이다. 서로 부둥켜 “이제 살았다” 하고 외쳤던 그 환호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들려온다.

후일담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가족들은 우리가 해난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분향 준비를 했다고 한다. 귀항 도중 여진호의 무전시설 고장으로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전혀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13명의 대원들은 결국 ‘소코트라록’ 을 ‘이어도’라고 명명하고 당당히 목숨을 담보로한 수중탐사성공을 자축했다. 우리가 돌아오는 그 날인 4월 9일 중국방송에서는 한국 민간단체에서 ‘이어도’ 탐사를 하고 돌아갔던 사실을 발표하며 아주 불만스러운 투의 방송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30년 전 당시를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순간이었다. 우리 목숨은 이어도가 구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탐사 이후

대한민국 이어도 최초 수중탐사역사가 성공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역사적·국가적으로 재조명 되어야 한다.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대원들이 그 많은 시간과 어렵게 자금을 만들어서 자력으로 오로지 ‘이어도’를 수중탐사를 성공한 것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투철한 애국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당시 탐사대장인 최웅길 박사는 지금 작고했다. 당시 수중탐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최웅길 대장을 비롯해 목숨을 함께한 13명의 대원들, 그리고 이어도 길을 안내해주고 회항도중에 긴급구조를 해준 여진호 박춘길 선장님과 선



1984년 이어도탐사대장 故최웅길, PADI DIRECTOR 주광현, 부대장 장순호는 탐사에 앞서 치밀한 점검과 교육을 시행했다.

원들에 대해 이 탐사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특히 함께 목숨을 걸고 이어도까지 탐사에 동행 취재를 한 한국일보 한기봉, 권주훈 기자의 노고도 잊지 못한다. 최초로 '이어도' 탐사를 성공한 13명의 대원들에게 '이어도' 탐사성공기록을 국가공인기록으로 받는 그 날까지 필자는 계속 끊임없이 홍보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어도를 지키는 일

이어도포럼



신영근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원우회 회장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어도하면 무슨 말인지 선뜻 알 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필자 또한 제주도 토박이지만 이어도는 그저 전설 속의 꿈꾸는 이상향이었고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먼 존재였다. 우연하게 지인의 소개로 ‘이어도연구회’가 주최하는 이어도해양아카데미연수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각종 관련 행사의 참여를 통해서 이어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이어도는 “전설의 섬, 이어도를 아시나요?” 노랫 가사를 연상할 정도의 더 이상 환상의 섬이 아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해양영토이고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 해양 및 기상 예보, 어장 예보, 지구환경 문제, 해상교통 안전, 연안재해 방지와 기후변화 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함으로써 우리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 구원의 섬인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바다는 신천지 개척의 대상이 됨으로써 각 나라가 해양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어도와 그 주변수역은 천연자원의 보고이며 태평양의 교두보이자 해양영토를 개척해 나가는 시발지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를 우리의 해양영토로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 관할권으로 주장하는 데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km이고, 중국 ‘서산다오’에서는 28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가장 보편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선 원칙에 따르면 이어도는 한국의 관할권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의 해안선이 훨씬 길고 인구비례 등의 형평을 고려 중국에게 더 많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할당해야 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항공기와 어선, 군함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이어도 주변 해역에서 긴장 상황을 연출함은 물론, 지난 11월 23일에는 중국의 방공(防空)식별 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킴에 따라 바다에 이어 공중에서까지 이어도에 대한 도전의 파고를 더 한층 높여가고 있다.

이제 이어도 문제는 해양 정책에 대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의 해양 정책에 맞설 대응책을 하루빨리 내놓아 국제사회에서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

올해 8.15 경축사에서 박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는 고려시대 학자 이암의 말을 인용해 “영혼(역사)에 상처를 주고 신체(영토)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국가 차원의 강력한 독도 수호의지를 파력한 바 있다. 이는 곧 이어도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임을 천명하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 못지않게 이어도를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이어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어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달망을 구축하고, 현재 ‘이어도 연구회’가 진행하는 ‘이어도해양아카데미’ 등과 함께 학생, 공무원, 민간단체, 사업체, 직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어도 카페의 당위성을 알림으로써 홍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이어도의 날’ 지정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어도의 날’은 대한민국이 이어도의 고유한 주권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 국민이 이어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도의 날’ 지정 문제가 중국의 심각한 대치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 권리의 보장 받지 못 한다”라는 국제법적 금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침묵과 중국의 야욕의 주장이 되풀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이어도의 영유권 문제는 자칫 제2의 독도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 염려 된다. 한국 땅 ‘독도’가 아니라 일본 땅 ‘다케시마’로 주장하는 그날이 오지 않길 사전 대비해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이어도 저널

leodo Journal

Vol. 05 (2013)

발행일 2013년 12월 20일

발행인 고충석

편집인 부영주

발행처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2-2 진흥빌딩 4층

전 화 064-712-8110

디자인 · 인쇄 온누리디앤피 064-722-0086
